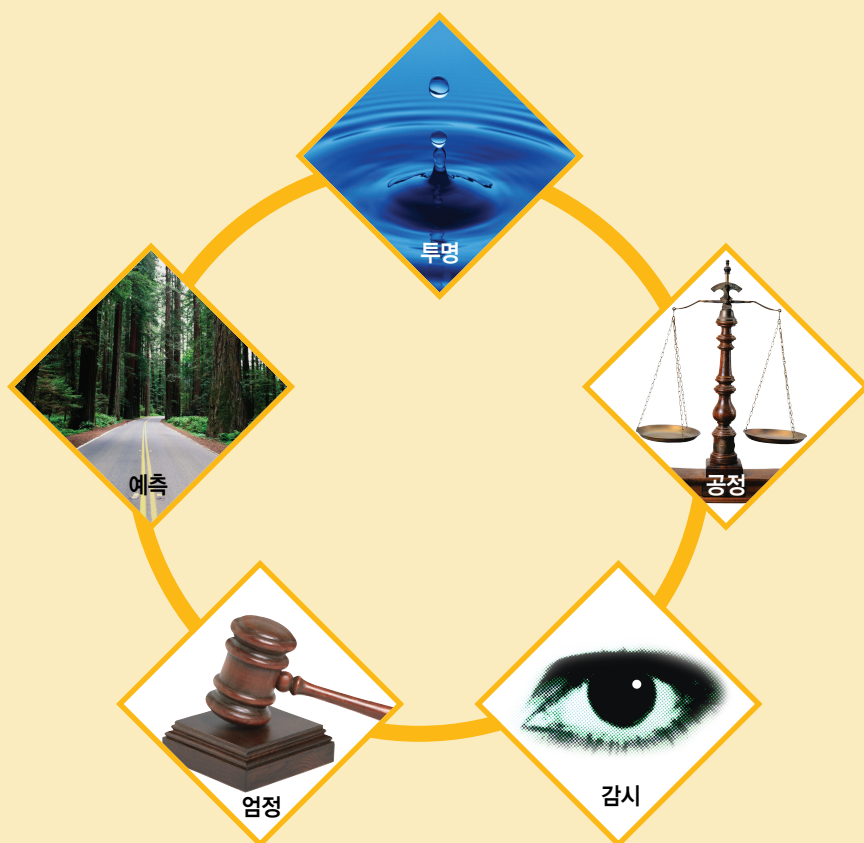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0100-000056-01

CLEAN
WAVE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렴운동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집



국가청렴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발 간 사



우리가 지향하는 청렴한 사회는 정부내 모든 기관들의
합심협력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반부패 청렴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등 사후대책과 함께 제도·시스템 개혁 등
사전 예방적 노력, 그리고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및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점차 은밀화·지능화 되고 있는 구조적·고질적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 1월 출범 이후 지난 5년여 기간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패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총 60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2007년 제도개선 사례집

그러나 제도개선이 산발적·단편적으로 발표되어 관계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들이 제도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제도개선 사례를 분야별로 분류, 알기 쉽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례집에서는 청렴위에서 직접 권고한 제도개선 사례와 함께 부패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개선토록 통보한 과제, 그리고 각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개선과제 등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시대적 당면과제인 부패없는 청렴한 국가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자료가 되며 아울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이종백

제1장 부패방지과 제도개선

제1절 제도개선 이해하기

- 1. 제도개선의 중요성 9
- 2. 제도개선 법천 과정 13
- 3. 제도개선 추진방식 14
- 4. 제도개선의 범위 및 법적근거 17

제2절 제도개선의 원칙과 기준

- 1. 과제선정의 원칙 18
- 2.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기준 19

제3절 제도개선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 1. 제도개선 추진체계 23
- 2. 제도개선 추진절차 25
 - 가. 제도개선 과제 선정 26
 - 나.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26
 - 다. 제도개선(안) 마련 27
 - 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28
 - 마.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28
- 3. 제도개선 사후관리 29
 - 가. 제도개선 이행점검·관리 29
 - 나.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평가 30

Contents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례

제1절 정치·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1.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36
2. 정치자금 제도개선방안 42
3. 지방선거 정치자금 제도개선 47
4.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51
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1) 57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2) 61
7. 청소대행계약 관련 제도개선 66
8. 병역특례 제도개선 69
9. 법원경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73

제2절 재정·경제·산업분야 제도개선

1.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82
2.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 87
3.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권고 91
4.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개선 95
5.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00
6. 보험계약 체결과정 리베이트 근절방안 105
7.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110
8.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113
9.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17
10.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 . 121

제3절 교육분야 제도개선

1. 교원인사 제도개선 125
2.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 127
3.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131
4. 교육분야 제도개선 135
5.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 . . 139
6.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45
7.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150
8. 초·중등 교원인사 관련 비리소지 제거 제도개선 154

제4절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1.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 제도개선	159
2. 턴키공사 입찰 제도개선	165
3.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개선	171
4. 하천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175
5. 건축 분야 제도개선	179
6. 부당 수익계약 제도개선	183
7.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187
8.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191
9.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97
10. 건설공사 수익계약 제도개선	203
11. 공사·계약 분야 제도개선 방안	207
12.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6

제5절 사회·문화분야 제도개선

1. 관광(단)지 지정·개발 제도개선	221
2.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24
3. 농지전용 제도개선	229
4. 농지조성비 부담환급 제도개선	234
5. 산지전용 제도개선	237
6.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242
7.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246
8. 감척어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253
9.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56

제6절 다수기관 관련분야 제도개선

1.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265
2.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269
3. 위생분야 제도개선	273
4. 대외신인도분야 제도개선	280
5.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295
6.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299
7. 대학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303
8. 출입국관리분야 제도개선	308

Contents

9.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314
10. 계약·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방안	318
11.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322
12.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327

제3장 추진중인 제도개선 과제

제1절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분야

1. 공공택지개발 분야	333
2. 공동주택 분야 제도개선	333

제2절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1. 퇴직공직자 취업관련 제도개선	335
2. 로비활동 법제화 관련 제도개선	335
3.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336

제3절 정부업무 민간위탁분야

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분야 제도개선	337
2. 부동산 감정평가분야 제도개선	337

제4절 기타 분야

1.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투명성 제고 방안	339
2.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339

부록

1. 청렴위 권고과제 추진현황	343
2. 기관별 자율과제 추진현황	360
3. 제도개선 통보과제 추진현황	416



제1장 부패방지과 제도개선

- 제1절 제도개선 이해하기
- 제2절 제도개선의 원칙과 기준
- 제3절 제도개선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부패행위는 처벌만으로 근절될 수 없는 독버섯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결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 방지 노력들은 정권초기에 사정작업과 국민 교화적 활동으로 연결되어 개별 부패 적발과 형사처벌 등 사후처벌을 주된 수단으로 수많은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처벌되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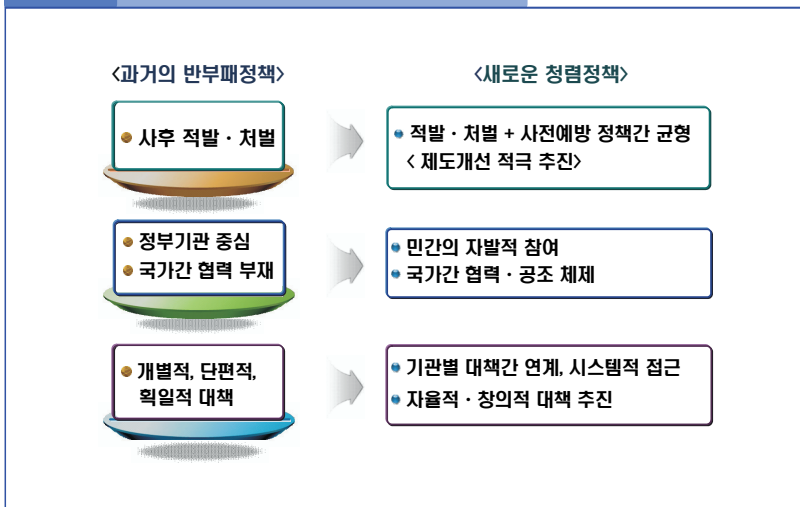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패문제는 국민의 교육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부패에 대한 시각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범죄의식없이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던 많은 행위들이 부패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단편적이고 과시적인 사후처벌 위주의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정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도개선, 청렴국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다

부패문제는 처벌과 개인의 인성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견제장치가 없는 한 부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넘보지 못하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의 그물을 엮어서 누구나 부정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그 해답이다.

그림1 패러다임으로서의 청렴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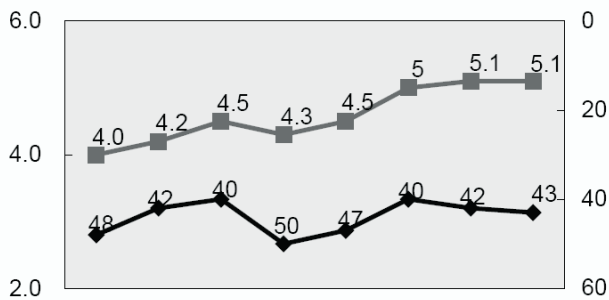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 1월 출범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제도 등에 내재되어 있거나 일상의 행정기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부패현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각급 기관도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CPI)가 2003년 4.3점(146개국중 47위)에서 2007년 5.1점(180개국중 43위)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

※ 국가청렴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국가별 청렴 수준 지표(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그림2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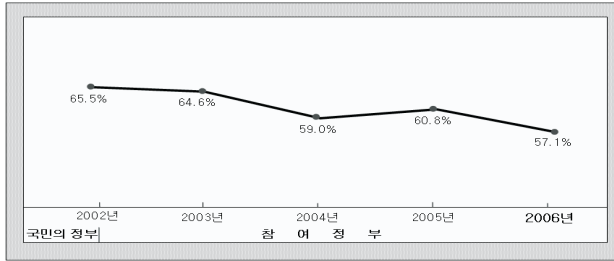


	'00	'01	'02	'03	'04	'05	'06	'07
점수	4.0	4.2	4.5	4.3	4.5	5.0	5.1	5.1
순위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백분율	53.3	46.1	39.2	37.6	32.2	25.2	25.8	23.9

또한 국가청렴위원회가 매년 주기적으로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 분야별(건설, 세무, 교육 등 10개 분야) 부패수준을 설문 측정하는 국민의 부패인식도도 제도 혁신 등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 ※ 국민 부패인식도 :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정도
- ※ 국민 42.1%가 참여정부 이후 부정부패가 개선되었다고 응답(조선일보,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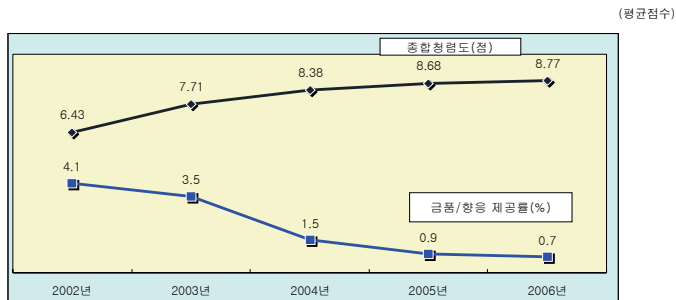
그림3 국민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또한 국가청렴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인식을 전화 설문으로 측정(10점 만점)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품·향응 제공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공공기관 청렴도 : 민원인이 평가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
- ※ 공공기관 청렴도 변화 : 6.43점('02) → 8.77점('06)
- ※ 금품·향응 제공율 변화 : 4.1%('02) → 0.7%('06)

그림4 청렴도·금품제공을 변화추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은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여 왔다.

첫째 **제도개선 추진기반을 구축한 시스템 도입기**이다.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라 민원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던 제도개선이 부패방지 영역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에 따른 반발과 권고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 및 처벌의 병행이 없는 단순한 제도개선으로 관계기관의 심리적 저항 등 수많은 어려움에 당면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 단계**이다. 이 단계는 2004년부터 2005년에 해당하는 단계로 초기 단계의 제도개선에서 나아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제도개선이 실제 행정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단계이다. 2004년 1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청렴위원장,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정기관장을 위원으로 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국가중요사항에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토록 하여 제도개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과제와 상시 제도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패 발생시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 단계는 2006년 이후의 **시스템 안정화 및 질적 고도화 단계**이다. 이 시기는 국민참여를 통한 제도개선과 공공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민간분야로 확대하고 청렴물결 확산을 위한 클린웨이브 운동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불문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모든 생활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제도개선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5 제도개선 시스템 단계별 로드맵



이러한 노력이 내실있게 추진된다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명실공히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추진방식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되는 분야나 부패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중 정치·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3~5개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심도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부패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시성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기동성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노력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중점 제도개선 분야

연도	주요분야
20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등 5대 분야
2005년	• 인사, 교육, 법조, 기업금융지원, 민간뇌물거래방지 등 5대분야
2006년	• 지역개발, 국가정책자금지원, 공직유관단체 구조적 유착비리 등 3대 분야
2007년	•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정부업무 민간위탁감독 등 3대 분야

2002년 1월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까지 정치·행정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60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표2>



제고개선 권고 현황('02.~'07.10)

분 야	소관부처(외청, 산하기관 포함)	권고
정치·행정	- 국와선관위대법원 등 헌법기관 - 행정부(지자체 포함), 외교부, 인사위, 여성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건
재정·경제·산업	- 재경부(국세관세청금감위), 예산처,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공청위 등	10건
교 육	- 교육부(사도교육청)	8건
건설건축	- 건교부	12건
사회문화노동	- 노동부, 농림부, 해수부, 정통부, 환경부, 문화부, 복지부 등	9건
기 타	- 다수 부처기관 관련 사항	12건
계		60건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

고질적·구조적 분야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각급 기관은 자율적인 반부패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유발요인을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기관별 책임하에 추진하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부패연관성, 관행성, 고질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신규과제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신규과제 및 기존 추진중인 과제는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하여 조기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각급 기관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제도개선 추진 계획 및 실적을 토대로 기관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각급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06.12월말 현재 1,531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1,112개 개선을 완료하였다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언론보도사건, 감사자료, 신고사건, 부패통계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제도개선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하고 각급기관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07.6월말 현재 132개 과제를 발굴, 소관기관 책임하에 제도개선 추진중

제도개선은 우리 일상생활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각종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내재되어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행정 운영절차, 인적 측면, 조직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행태적인 측면도 제도개선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국민의 일상생활의 대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항은 가급적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부패를 유발할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개선은 「부패방지법」에서 부여된 부패방지 수단의 일환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과제선정의 원칙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제선정은 제도개선의 출발점인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겠으나 부패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관점에서 중점대상(target) 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합리적인 기준이나 투명한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예산의 낭비유출이 심한 분야

둘째,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자의 권한을 국민의 복지 및 국가발전을 위해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개인의 전유물, 특권처럼 사용되고 있는 분야

셋째, 행정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지지 않고 특혜, 독점이 작용하는 분야

넷째, 공공복리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는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분야

이와 같은 중점대상(target) 분야 중에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선정은 문제의 심각성, 시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분석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 부패신고사건, 청렴도 측정, 국민인식도 조사,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시로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현상의 모니터링 및 분석
-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정보기관이 수사조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보한 과제
- 각급 기관의 공직자로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건의(매년 정기적 제안 접수)
-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2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기준

개별과제별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법령·지침 등 제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고객(client)인 국민과의 관계, 공무원의 행태, 윤리문화 개선 등 종합적·입체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의사결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곰팡이는 적당한 습도와 햇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번식하는 것처럼 부패도 은밀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에서 발생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개시스템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법령·지침 등의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관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충분히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결정이 누구에 의해 행해졌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 단계별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 행정의 예측가능성·일관성 제고

행정처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유사한 사항(민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수시로 다르게 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부정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부패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행정의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문제점 여부를 검토한다.

※ 민원인·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게임룰(rule) 정립

정부의 권능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되거나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게 될 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가용한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부패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여기회를 최대한 개방하고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독과점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국민·고객에 의한 감시체계 확립

불법행위 또는 부정부패는 내부 감찰부서나 외부 사정기관에 의한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패는 외부 기관에서 적발이 어렵고 내부적발의 경우에도 자기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유야무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 당사자 또는 국민에 의한 감시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행정행위마다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을 통하여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역할 및 감시기능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부패는 부패행위로 기대되는 수익이 기대위험비용보다 크다고 생각될 때 유혹을 느끼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낮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을 때 부패유발 심리는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행정분야마다 확인·점검 또는 내외부 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형사벌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면, 신분적인 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1

제도개선 추진체계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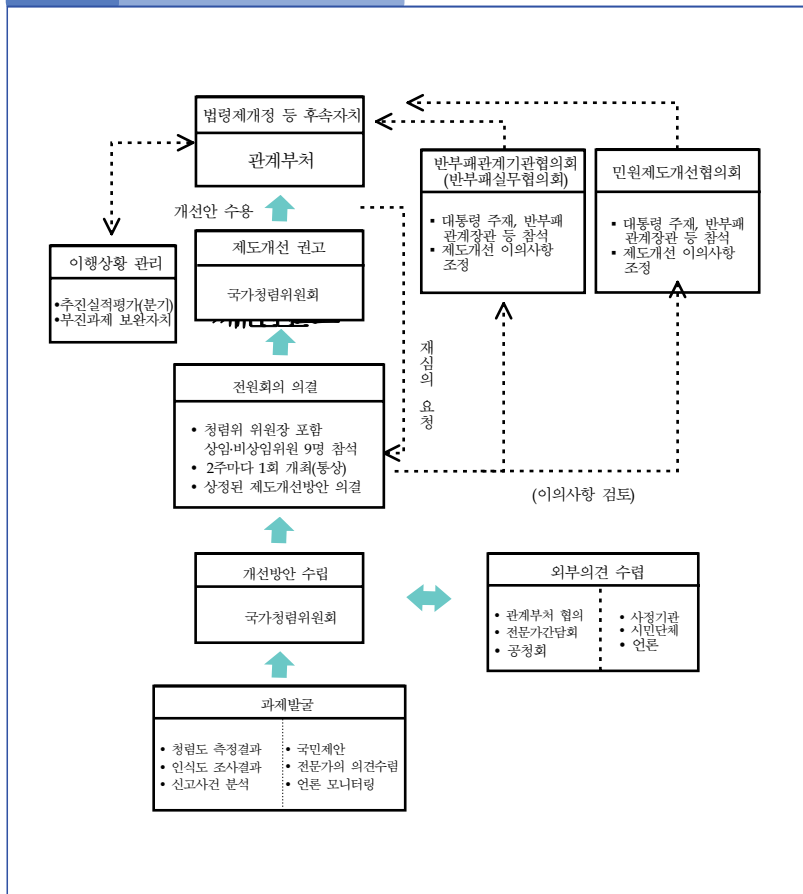
국가청렴위원회는 범정부적인 부패방지 제도개선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패방지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시달,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을 점검·관리하고 부진과제의 보완대책을 마련·제시하는 등 각급기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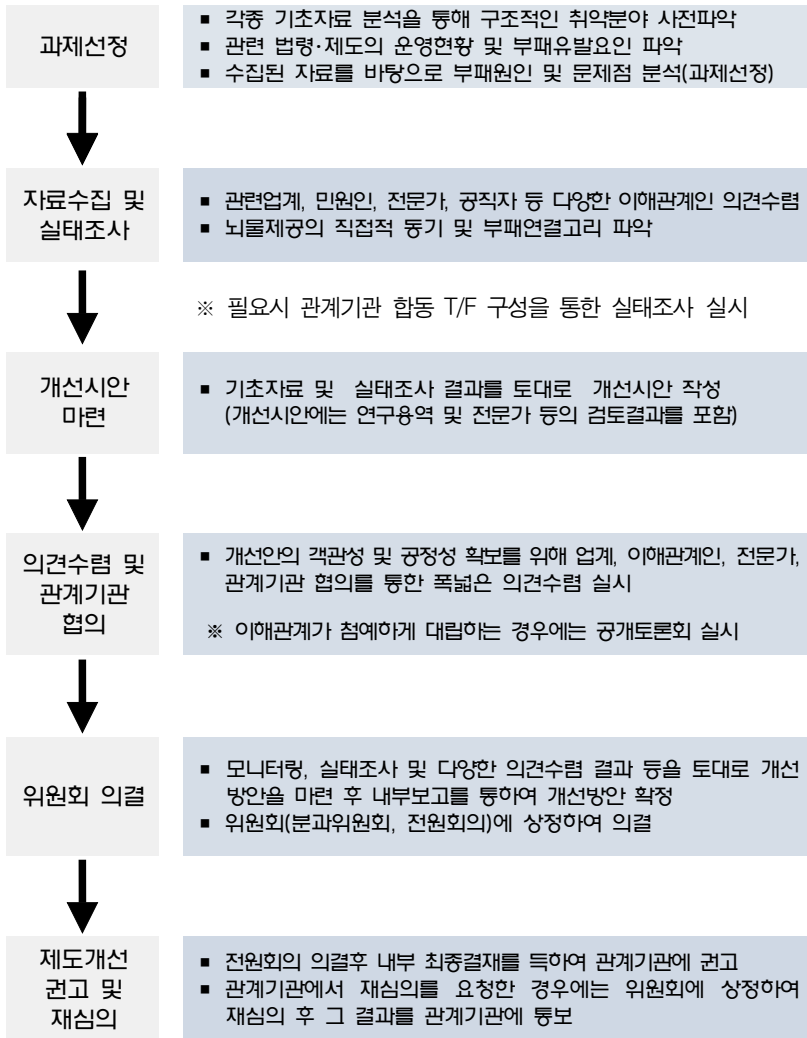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국가청렴위원회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와 부패 통제 효과가 모든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각급기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상적인 제도개선은 원칙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주관하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부진과제 및 관계기관 간 이견이 제기된 과제 등은 청와대, 위원회,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조정 등을 거쳐 추진되며,

제도개선 과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곤란한 사안은 관계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상정하여 조정하고 있다.

그림6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가. 제도개선 과제 선정

제도개선 과제는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구조적·고질적인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막대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우선 제도개선 과제선정을 위한 자료수집단계로 언론 보도내용, 위원회 신고사건, 감사지적사항, 국정감사 제기사항, 청렴도 취약분야 등 다방면의 부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도개선 과제선정시 참고하게 되며, 특히 국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제안을 받아 과제선정시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수집자료는 업무단계별로 드러난 부패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시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통상 제도개선과제는 중점분야 제도개선과제와 현안(수시)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중점과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되는 분야나 부패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중 정치·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매년 3개~5개의 중점분야를 선정하며, 현안과제는 수시로 발생하는 부패 관련 현안사항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시성 있게 과제를 선정하여 기동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나.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가 선정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패실태의 정확한 진단분석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는 유형화된 부패실태를 근거로 하여 부패현상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문헌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전문가 면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현장 실태조사는 관계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 제도개선(안) 마련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부패 원인 및 개선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방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분야의 제도운영에 따른 부패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를 위해 법령·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운영절차, 인적·조직적·문화·행태적 측면 등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근원적·본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선방안은 향후 법령·제도의 재개정 등을 수반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단기 과제를 제시할 때는 과제별로 해결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재량권 행사의 객관성 및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은 강화하되, 자율성을 제약하여 규제로 인식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선방안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은 업계,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게 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개별과제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 전문가, 업계, 관련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보다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토론회 등 대중적 의견수렴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02.1월부터 '07.6월까지 총 17회 공개토론회 개최

또한, 제도개선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개선이 사실상 곤란함으로 개선방안 마련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 의견조정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 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이의사항 조정

마.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제도개선 방안은 국가청렴위원회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조정 등 사안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기관 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제도개선 방안은 입법절차, 예산수반 등 사안별 이행상황을 감안한 이행시기를 부여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한다.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이 위원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기관의 부득이한 이행 곤란 발생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의 적시성있는 이행과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를 전후로 언론브리핑,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사후관리

가. 제도개선 이행점검관리

국가청렴위원회는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효과를 파악하고, 이행이 미흡한 과제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및 대국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DB 구축 및 과학적인 진단분석 등 제도개선 이행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되, 현장점검은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점검사항은 권고과제, 부패유발요인,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과제 및 기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 권고과제 :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급기관에 권고한 과제
- 부패유발요인 :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발굴한 소관 법령제도상의 부패취약요인
-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과제 : 부패현상이 발생할 때 해당기관이 자발적으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제

제도개선 이행점검을 통해 나타난 이행부진 과제는 관계기관에 부진 사유를 소명함과 동시에 원안이행 또는 합리적인 대안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당해 사유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평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급기관에서 추진중인 제도개선의 성과 및 노력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종합평가는 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까지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각급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일정 비율(30% 내외)을 반영하고 있다.

제도개선 종합평가는 권고과제, 부패유발요인,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과제, 수범사례 등 6개 대상과제에 대하여 과제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

비율을 달리하여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대상 과제별 과제의 적합성, 이행실적, 개선노력도, 개선제출기한 준수, 전파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3>

 과제별 평가지표 및 방식				
과 제	평가지표	평점부여 방식	가중치	비고
권고과제	이행실적	■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개선효과	■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및 노력정도		
	협조도	■ 이행실적 제출시한 준수여부		
부패유발 요인개선계획	신규부패유발요인 발굴 노력	■ 신규과제의 제도개선 유관성		
	추진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제출기한 준수	■ 이행실적 제출시한 준수여부		
	자체 효과성 평가	■ 자체 효과성 평가 실적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과제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	■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		
	추진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제출기한 준수	■ 이행실적 제출시한 준수여부		
	자체 효과성 평가	■ 자체 효과성 평가 실적		
수범사례	참여도	■ 사례제출 여부		
	사례의 우수성	■ 부패연관성, 구체성, 창의성 등 총 8개 지표 선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례

- 제1절 정치·행정분야 제도개선
- 제2절 재정·경제·산업분야 제도개선
- 제3절 교육분야 제도개선
- 제4절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 제5절 사회·문화분야 제도개선
- 제6절 다수기관 관련분야 제도개선

권고사례 개요

- 청렴위는 2002.1월 출범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07.10월까지 정치·행정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60건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 분야별 권고현황을 보면
 - 건설·건축분야 12건
 - 재정·경제·산업 분야 10건
 - 정치·행정 분야 9건
 - 사회·문화·노동 분야 9건
 - 교육분야 8건
 - 기타 분야 12건을 권고하였다
- 기관별 세부 권고과제를 보면
 - 건설교통부 13건, 재정경제부 10건,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 각 9건, 행정자치부 7건, 농림부·산업자원부 각 5건, 노동부·해양수산부 각 4건, 식약청중소기업청·과학기술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각 3건, 문화관광부·경찰청·기획예산처·여성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각 2건이며
 - 기타 14개 공공기관은 각 1건의 세부과제를 권고하였다

1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2002.10.8, 국회 권고)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금융실명제의 실시,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의 제정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행정·관료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윗물'인 권력층과 정치분야의 부패는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치 및 권력형 부패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 근원적으로 고비용·비민주적 정치구조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정치 및 권력형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개선과제를 제시함은 물론 정치권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천 위주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제점

우리사회에서 정치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치자금의 수요·공급·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 수요측면에서 과도한 선거·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치자금 공급측면에서 보면 현행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이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체계를 제도적으로 방치·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정치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자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권력형 부패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허점을 들 수 있다. 연고에 따른 인사관행이 지속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장치가 미비하여 인사관련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조세·벤처·공적 자금 운용·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정경유착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다섯째, 정치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제도화된 권력이 국가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치부패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개 선 방 안

(1) 제1단계 대책(2002년 대선 이전)

(가) 정치 부패 척결방안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방식의 제도화

조직동원 및 불법 선거비용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정당·후보자 연설회,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미디어 선거운동방식(TV, 신문, 지역케이블방송, 인터넷 등)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일전 60일부터는

당원집회 및 집회에 의한 당원교육을 금지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인정하고, 대신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공영제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요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선거비용의 실질총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비 이외의 지출을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예금계좌 사용 등 정치자금 지출 투명화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100만원이상 자금 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출 통제 강화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규정중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조항은 매우 포괄적 규정으로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의 회계감시권 강화

현행규정상 국고보조금 사용 등 정당회계에 대한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및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권력형 부패 개선대책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검증절차 제도화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국가정보원장, 검찰청장, 국세청장까지 확대하여 고위 권력층의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 감찰강화 및 특검제 제도화

고위공직자, 대통령친인척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찰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검제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부패, 친인척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수사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직계존비속에 대한 특별관리

대통령 및 일정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신고시 재산형성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취득일자, 취득경위, 거래내역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 설치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강화한다.

벤처 · 공적자금 관리개선으로 비자금 조성 억제

벤처제도는 기술성 평가에 근거한 사업성 종합평가로 개선하고, 공적자금제도는 지원 이후 감독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가지급금을 통제하고 해외이전거래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의 조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2) 제2단계 대책 (대선 이후부터 2004년 총선거까지)

저비용 정치구조의 확립

상향식공천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경선비용은 경선참여자에게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여 충당하도록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 및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중대선거구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방법확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경선참여자 포함)에 대해 후원회의 결성을 허용하고, 선거비용 법정한도액 내에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의석수 기준에서 득표율 기준으로 개선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뿐 아니라 정치인에게 근거 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 친족에 의한 자금제공과 개인의 재산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금액(100만원)이상을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공개하며,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제한 받은 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며,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기타 중장기 개선 검토과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국고보조금의 재원마련 방안의 개선을 위해 일괄공제제도(Tax Check-Off)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수 당원의 확보를 통한 정당의 재정적 자립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의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지배구조 개혁

현재의 비대한 중앙당 조직의 축소와 원내정당화를 유도하여 국회중심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대표제 또는 국회의원과 지구당대표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자금수요에 있어 고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지방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의 수요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선총선, 대선지방선거의 통합 실시 등과 같이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8일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권고하였고, 국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2004년 3월에 개정완료 하였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정치 및 권력형 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치 및 권력형 부패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2003.9.3, 국회 권고)

추진 배경

2002년 대선기간 중에 정치권으로 유입된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검정국과 맞물려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그 동안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 개혁 없이는 정치부패 척결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이 적게 들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이 정치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정치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불투명성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은 첫째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적 규제장치가 미비하여 자금운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업비자금 수사중에 드러난 대선자금 파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록 선거법이 선거비용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의 특정팀에 거액의 선거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례와 같이 정치자금이 개인 자금과 혼합 사용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을 적발·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둘째로는 미국은 100불 이상, 프랑스는 1,000프랑 이상 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나 돈세탁과 같은 음성적 자금운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 정치자금의 비현실성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첫째, 불합리한 선거풍토 및 지구당 유지비 등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합법적인 자금 수입원이 많지 않아 불법적 자금모금 및 집행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정치자금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현실적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통제효과가 미약하다. 따라서 생활보조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아 정치자금법상 규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본인의 돈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친족이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비합리성

국고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의석수 중심의 배분기준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잦은 이합집산을 유발하고, 신생정당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배정 받은 이후에는 사용내역을 허위보고하거나 용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다.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부재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 정치인은 극소수이며, 형량미흡 및 사면·복권의 남발로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등 정치자금법의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선관위가 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이 없어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 선 방 안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우선,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에도 지정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는 그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을 일정기간 내에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자금 흐름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예를 들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거액 기부자의 인적사항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치자금의 현실성 확보

첫째, 점차적으로 지방선거, 대통령 후보경선 시 후원회 등을 허용하고 법정한도액 내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후원회 결성 허용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둘째,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돈은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여 규제대상이 되도록 하고, 정치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규제대상을 확대 개선하여 친족을 동원한 자금세탁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성 확보

첫째,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석수 중심에서 실질적인 득표율 중심으로의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포괄적인 개념정의로 보조금 유용에 악용되는 정치자금법 제19조 제2항 제9호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삭제하는 등 국고보조금 용도를 제한하고 지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국고보조금의 정당 회계보고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만 회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정기적인 조사 실시로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운영이나 대통령 사면복권권 행사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료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3년 9월 3일 국회에 권고하였고, 국회에서는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완료 하였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패척결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전략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추진배경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관계 3법은 지구당 폐지, 기업의 후원금 기부 금지, 합동연설회 폐지 및 정당행사의 금품음식물 제공 금지 등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정치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제점

후원회 제도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사도지부를 제외하고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입원이 개인자금과 정당지원금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개정후원금 기부한도는 개인 연간 최대 2천만원이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기부대상	계	중앙당	사도지부	국회의원 등
기부금액	2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모금한도	-	50억원	5억원	1억 5천만원

지방정치인에게 후원회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당선 후 선거비용의 회수 및 재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청탁 등 각종 비리 소지 등 지방정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당소속 지방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무소속후보자는 불가능하므로 선거운동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당을 통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지방정치의 중앙당 예속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도

선거공영제 운영은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 선거 비용을 부담한다. 200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선거비용 보전비율의 확대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는 것이 많아 자부담률이 높은 실정이다.

선거공영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부담증가에 따른 반대론과 선거비용 축소를 위한 찬성론으로 각계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표1>

	선거공영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음성적 정치자금 수요 제거 •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충원 활성화 •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방지	• 자유로운 선거분위기의 위축 • 국고부담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 정치자금 기부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개 선 방 안

후원회 제도

후원회 허용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한하여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의회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넓은 선거구와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초단체장에 비해 인허가 업무의 비중이 낮아 후원금 제공자들에게 의한 포획 가능성이 낮다.

기초단체장도 도농통합, 도시지역 인구과밀 등으로 선거구가 넓어 선거비용 부담이 높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후원회 난립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통제가 곤란하여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제3회 지방선거('2.6) 선거구 정수와 후보자수					
구분 \ 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 수	16	231	609	16	3,459
정수	16	231	609	73	3,485
후보자 수	55	750	1,531	209	8,373

후원금 허용 한도도 광역단체장에 후원회 허용시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를 확대(연간 2천만원→2천5백만원)하고, 기부대상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한다. 후원금 규모는 지방선거비용 및 중앙선거 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체장의 경우 개인의 기부한도는 5백만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당해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후원회 허용기간과 관련하여 상시허용, 후보경선시부터 허용, 선거운동 기간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자금의 실질적 필요성과 후원자들과의 유착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원회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후원인과 지방정치인과의 인허가 관련 유착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재 3개월로 제한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의 공개기간을 상시 열람토록 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접근성 증대,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주민소환제 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정치자금 수수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정치자금 관련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공영제 확대

현행은 선거공영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선거공영대상으로 확대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의 확대 등 미디어 선거운동 적용범위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토착비리의 발생, 정당참여로 인한 추천 현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자금제도개선안을 2005년 2월 25일 국회에 권고하였고, 국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선거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02.7.22, 행정부·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권고)

추진배경

최근 들어 OECD, 세계은행, TI 등은 “윤리관리”를 정부 신뢰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윤리강령” 혹은 “행동강령”의 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98년 윤리관리의 원칙(Principles of Ethical Management)을 발표하면서, 행동강령 등을 통한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미 1829년 처음 우정국 행동강령이 마련된 이후,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하였고,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되었다. 1994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관련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행동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런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마련코자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토록 하였다.

필요성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상징성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강한 상징성이 부여 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국민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되어 공무원행동강령은 일반 국민들의 윤리의식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제시

우리 사회는 현재 급격한 변동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직사회와 민간부분간의 인적교류의 증대 등 공공과 민간부분과의 접촉증대 등으로 기존의 공적가치의 중요성이 크게 흔들리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동의 시기에도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택 의도로 추진하여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그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중의 한가지 방법이 바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주요특성

- 부패방지법 제8조(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였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상담절차,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금품 등 반환절차 및 징계근거 규정 등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실천성을 추구하였다.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의 수행

-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취소·변경(영 제4조)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같은 지시가 계속 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지시의 취소나 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무원의 이해관계의 직무회피(영 제5조)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 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이권개입 및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됨(영 제6조)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타인에게 청탁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됨(영 제9조)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영 제10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영제 12조)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함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금품등 받는 행위 제한(영 제14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소액의 선물 및 편의는 허용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의 제한(영 제17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여서는 안되며, 경조금의 범위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를 넘어서는 안됨. 다만, 친척과 동창회·종교단체 등에서 그 정관이나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
- 금전의 차용금지(영 제16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됨

행동강령 이행관리 체계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영 제23조)
 - 각 기관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및 강령의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위반시 징계처분(영 제20조)
 -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신고된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2. 3월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공무원행동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 초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회의, 여론조사, 공개 토론회의 개최 후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기관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토록 권고하였다.

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8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3. 2.18. 대통령령으로 공포, 3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03. 5.19.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행동강령을 정착시켰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추진배경

민선자치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주로 인사제도의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인사권자의 전횡적인 인사 재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으나 지침의 성격상 강제성이 결여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의 투명화·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용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관장에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인사위원장이 단체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단체장이고 인사위원 역시 실제적으로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까닭에 인사위원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한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었다.

승진임용의 객관성 결여

승진후보자 점수 중 경력평정과 훈련성적은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근무평정은 평정요소의 객관성 결여,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 등 평정자의 주관으로 정실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

<표3>

승진후보자명부 요소별 배점비율(평정규칙 제23조)				
요 소		배점비율	상 한 점	
근무성적		50점		
경 력		30점		
훈련성적		20점		
가 점	자격증	0.08-0.5	1.0	총 7.25점
	특수지근무경력	0.025-1.25	1.25	
	실적	5점 범위내	5.0	

전보인사의 기준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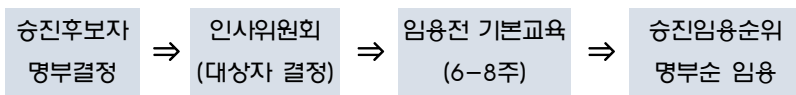
객관적 인사기준의 결여로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인사 청탁과 관련한 비리와 부정의 소지가 되고 있고, 단체장의 지연·학연·혈연에 따른 편가르기식 또는 줄서기 인사로 자치 단체 조직내 공무원간 파벌이 조장되는 등 인사병폐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방5급 공무원 승진관련 비리 다수 발생

시험승진제도에서 1998년 시험승진과 승진심사 양자 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 상당수 지자체가 심사제도로 전환하여 심사의 주관성으로 공무원의 줄서기, 발탁인사를 명분으로 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 인사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심사 결정과정



개 선 방 안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사위원에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 인사위원의 임기를 3년 단임제(현행 2년, 1차 연임)로 하며,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시, 동료 평가결과를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10%이상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하는 승진이 되도록 ‘다면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예정인원의 최하 30%이상에 시험의무제를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시험비율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그 소속기초단체가 협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 후보자명부 통합관리」(승진시험통합관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합격자들을 자치단체의 결원 자리에 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사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급 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설치

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직원대표들로 구성된 『6급 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한 전보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인사예고제의 실시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망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승진·전보의 인사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을 인사 7일 전에 공개하는 ‘인사예고제’ 실시를 의무화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2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완료 하였고, 다면평가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해당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각 시·도의 추진상황 및 인사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시책평가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지방행정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국민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인사부조리는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의 청렴도 하락과 부패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제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팽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의 학연·지연 등에 따른 정실인사가 빈발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와 같은 자의적인 인사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등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었다.

- ○○시장은 근무평정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서열명부 상위 순번에 배치 하도록 지시하여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부당 승진임용('06.2.10. 감사원)
- ○○시장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06.2.10. 감사원)
- ○○○지사는 6.13 선거가 끝난 후 도청여성국장 및 일부 국·과·계장 인사를 단행, △△△당선자는 '퇴임전 논공행상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02.6.18, 연합뉴스)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부재

인사권의 남용 및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운영의 방향, 인사기준 등을 포함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사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공개되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 전보제한기간(선호부서, 장기근무자 등)을 설정하지 않아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불만 및 불신 팽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과 실적보다는 친소관계 또는 보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혹이 있고, 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요인이 잠재해 있었다.

특별임용제도의 자의적 운영

특별임용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인사권자가 특별임용대상자를 미리 내정해 놓고 인사실무자에게 이를 추진토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들이 지원하기 어렵도록 자격요건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제한하거나 특정인이 소지한 자격증으로만 응시를 허용하고 있었다.

※ 특별임용 증가 추세(행자부 통계연보) : '02년(373명) → '03년(656명) → '04년(1,234명)

승진관련 부패행위 지속 발생

마지막으로 승진관련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상당수 발생하여 사무관 승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1~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거나 자치단체장 당선 후 인사상 특혜를 약속받고 선거출서기에 나서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조작하여 위법하게 승진하는 등의 부패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 ○○군의 공무원 5명이 5급 승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각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04.5.4. 한겨레)
- ○○시의 공무원 7명이 5급 승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각 1천만원~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05.6.29. 한국일보)
- ○○시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적인 형제회를 구성, 현금을 각출하여 선거자금 제공후 인사상 특혜를 받음('05.3.9. 경향신문)
- ○○시 공무원 2명은 당선후 승진을 약속받고 시장후보 E○○에게 금품을 제공('03.10.2. 동아일보)
- ○○시 공무원은 자신과 승진경쟁관계에 있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후순위로 조작하여 자신이 승진함('06.2.10. 감사원)
- ○○시 공무원은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 반영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임의 적용하여 지방서기관으로 부당 승진('06.2.10. 감사원)

개 선 방 안

인사위원회의 대표성·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

지방의회공무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확대방안을 검토 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위촉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인사위원회의 사무기능을 인사집행부서로부터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직원을 인사부서 이외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기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인사기준 준수의 실효성 제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사기준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를 개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자부령)을 개정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여 피평정자의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근무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근무평정과 관련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특별 임용절차 강화

또한, 지방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 사유 및 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를 개정하는 등 특별임용 절차 등을 강화토록 하였다.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마련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감독·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위법한

인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81조를 개정토록 하였다.

※ 위법한 승진의 취소방안에 대하여 78.7%가 찬성('05.10~11월 자치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 가이드라인(운영지침)을 수립·시달토록 하고 이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토록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 관련 전담인력(5명)으로는 지방인사 운영 실태점검·평가와 제도개선 등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인사 전담인력 보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6년 4월 11일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근무성적평정공개, 특별임용절차 강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추진배경

구로구청으로부터 정화조청소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개시를 위해 장비 구입 등으로 3억여원을 투자했으나, 구청장이 기존업체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정화조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부패신고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문제점

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11조1항 단서를 보면

구청장은 법 제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 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판결 등으로 분뇨등관련영업(분뇨등 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위법에 위배

정화조청소업은 오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 허가되고 있는데 반해, 대행계약은 관내 영업허가를 득한 정화조청소업체 등의 과당경쟁방지, 영업구역지정, 책임수거제, 적정요금 산정 등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획득한 허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대행계약이라는 조례상의 규정을 통해 허가의 효력자체를 상실토록 하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 위배되는 규정이다.

조례의 법규성에 위반

조례 제11조 1항 단서조항에 명시된 “법원판결” 등의 문언은 최근 동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승소판결 후 분노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지나치게 특정대상을 개별·구체적으로 적시한 처분법적 성격을 지녀 법규인 조례가 지녀야 하는 일반성에 위배된다.

특혜의 오해 우려 증대

원가절감, 안정적 서비스 공급, 수질환경 보전, 관계당국의 효율적 감독 등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허가 및 대행계약 방식에 의한 지역할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운영방식이 특정 1개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되며(판례입장), 더욱이 구로구청의 경우는 조례라는 법령을 통해 기존업체에 독점적 대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특혜의 오해를 낳을 우려가 크다.

※ 대법원 판례(00.6.19, 99두 2857 영업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내에 1개의 정화조 청소업체만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노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개 선 방 안

구조례 제11조 1항의 단서규정 삭제

대행계약을 통한 지역책임제는 원가절감 및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법 제3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허용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1개업체의 지속적 독점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 구조례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지역책임제의 공동책임제로의 전환 모색

지역책임제는 사실상 기존업체의 독점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으나, 현행 지역책임제를 공동책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분뇨등 관련영업 및 정화조 청소업 관련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 이를 장기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수수료 재산정 및 부실 정화조에 대한 보고 및 감시체계 마련, 과당경쟁 방지 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7일 구로구청에 관련조례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으며, 구로구청에서는 2002년 12월에 권고사항을 이행완료 하였으며, 향후 지역책임제의 공동경쟁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2003.7.14, 병무청 권고)

추진배경

병역특례는 병역의무자(현역, 보충역)의 정부지정 연구기관·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써 잉여 병역자원 해소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어 '90년대 이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확대되었으나,

적정한 관리·통제시스템이 미비되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정업체와 특례자간 병역특례매매, 특례자 선발과정의 비리, 병역특례자 노동력 착취 등 새로운 병역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불신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문제점**지정업체 선정 및 특례자 선발 과정의 비리발생 빈발**

지정업체 선정 권한이 부여된 소관부처가 현지조사 소홀 등 법규상 기준위주의 판단으로 추천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지정업체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로 업체가 특례자를 지정업체가 아닌 타업체나 타분야에 종사시키는 등 탈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타업체 근무	198	142	143	151	232
타분야 근무	116	130	178	152	30
소 계	314 (33.6%)	272 (32%)	321 (41.6%)	303 (43.4%)	262 (31.5%)
전체적발건수	935	850	771	698	833

※ 타업체 근무, 타분야 근무가 업체 처벌건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특히, 지정업체별 T/O를 배정하지 않고 업체가 필요한 만큼 수시 선발 하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선발권 남용비리가 빈발하였고, 특히, 벤처업체의 경우 병역특례자 채용을 미끼로 “청탁성 지분인수”, “거금 투자유치” 등의 부조리가 성행하였다.

※ 병역브로커, 알선업체가 매개되어 수도권 제조업체는 2~3천만원, 서울의 벤처는 5천만원을 호가하는 음성적 병역특례 매매 빈발(문화일보, '02.8.22)

또한, 지정업체 선정여부, 업체별 인원배정량 등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업체별 정보 파악을 위한 관계기관 줄대기나 브로커가 양산되었으며,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특례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후 인정제로 인해 업체의 약속을 믿고 근무하다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고,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직계비속만을 특례자로 선발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친인척, 특수관계자 등을 특례자로 선발하는 부조리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특례자 선발요건 〉

- 병역법 37조 : 1.석사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병역법 38조 : 1.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허술한 복무관리 및 복무규정의 악용

특례자를 타 업체에 종사하게 하거나 제조생산분야 특례자를 사무직영업직에 근무시키는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도 즉시 고발하지 않고 위반기간 3월 이내에는 주의·경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 의무사항인 “복무 기록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시정요구에 그치는 등 관대하게 처리하였고, 특례자가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으면 특례취소가 되지 않고(연장 종사),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연·월차 휴가일수 공제로 갈음하는 등 허술한 복무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또한,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였으며, 특례자가 업체의 복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에 따른 신분보장 장치가 미흡(보복성 해고 등)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였고, 업체의 부당명령에 의한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특례자는 연장 종사나 특례취소를 당하는 등 불안한 처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하였다

개 선 방 안

지정업체 선정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별 특례인원을 배정(년 2회)함으로써 지정업체의 선발권 남용비리를 방지하고, 지정업체 현황, 배정인원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례자 선발요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특례자 선발제한 범위를 업체대표의 직계비속 외의 친인척, 업체지분 소유자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하고, 지정업체에 유리한 선발요건을 개정하여 병역특례 매매,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 빌미 제공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특례자를 부당하게 다른 업체에 전직·과건 근무시키거나 제조·생산분야 특례자를 사무직·영업직 등에 근무시킨 때에는 주의·경고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복무기록 미관리 업체”도 즉시 경고 조치(기준은 주의)토록 하였으며, 특례자 무단결근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업종별 위반유형, 위험업체 집중관리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해외 과건 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외교부, 법무부 등)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조사 실시 및 해외과건 이후 당초 과건 목적을 본인이 수행증임을 입증할만한 경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위반행위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지정업체 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신고는 병무청 본청의 직접조사, 민·관 합동조사 등으로 조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실질적인 신고자 불이익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내부고발 활성화 등 신고제도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14일 병무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하였고, 병무청에서는 병역법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병역특례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추진배경

경매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경매브로커가 난립하고, 비공개된 경매 정보유출, 급행료 수수 등 다양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불공정성은 법원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확보의 신속성과 채무자 재산권 보호,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경매집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황

일반사항

강제집행 건수는 최근 3년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02년 256,917건, '03년 365,225건, '04년 508,599건으로 강제집행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낙찰금액은 '02년 10조 660억에서 '05년 13조 7,740억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낙찰액의 95% 이상이 부동산 관련 강제집행이 되었다.

<표4>



민사집행사건 종류별 접수현황

연도	종류	합 계	경 매			채권, 기타 재산권 강제집행	기타
			강제	담보권실행	소계		
2002		256,917	31,867	74,860	106,727	109,988	40,202
2003		365,225	35,990	122,887	158,877	148,220	58,128
2004		508,599	44,354	138,071	182,425	230,587	95,587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공개

부동산의 경우 경매물건 정보 공고는 법원계시판과 대법원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2주 전까지 게시하고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선택하나 일반적으로 법원 계시판과 집행관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산경매정보’란에 게시한다.

입찰방식

입찰방식은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구분되며, 부동산은 대부분 특정일 시에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는 기일입찰로 집행한다.

<표5>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제도 비교

구 분	기일입찰	기간입찰
개 념	입찰공고상의 특정일시에 입찰, 개찰을 진행하는 방식	일정기간(1주~1월) 동안 입찰서 접수 후 별도 매각기일에 개찰
입찰기간	1일	1주일 이상 1개월 이내
입찰방법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	집행관에 제출 또는 우편송달
매 수 보증금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법원 보관금 계좌 납입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경매절차에서 IT기술 활용 현황

현재 경매절차 중 매각물건 공고 및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공개 단계에서만 IT기술이 활용되나, 채권자의 경매신청부터 배당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종이문서, 대면접촉 등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02.10월 부터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현황조사보고서, 물건명세서 등 공개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인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감정인이 결정되며,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은 20~500만원의 범위, 500만원이하 동산은 10만원이며 수수료 지급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매사건 종료 후 경매신청인의 예납금 환불시 지급하고 있다.

집행관 제도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독립 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 '집행관 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 사무는 위임사무(고자·최고, 동산매각, 거절증서 작성 등)와 법원·검사의 명령에 의한 의무적 사무(서류 송달, 영장 집행, 벌금·과료·과태료·추징, 몰수물 매각 등)를 수행하며 사무원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얻어 집행관 사무소의 대표 집행관이 임명을 한다.

<표6>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 제도 현황

구 분	집 행 관	집행관실 사무원
자 격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자	법원, 검찰청의 9급 이상에 직에 근무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임명권자	지방법원장	집행관실 대표집행관
임기 등	임기 4년(연임불가) 정년 61세	채용후 4년 경과(재채용 가능) 정년 58세
정 원	'04년 정원 295명	집행관 정원의 2배 이내
보수(월)	'04년 평균700만원(대법원 발표)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

문 제 점

경매물건 정보의 제한적 공개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열람제도 폐지로 중요정보로 미공개하여 권리분석이 곤란하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일반적인 사실만 명시되어 있어 경매담당 직원의 비공개 정보유출, 브로커 개입 등 부패유발요인이 상존하고 경매 관련 사실잡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유체동산은 사전 현장조사 곤란 등으로 재산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표7>



민사집행법상 허용된 열람정보 범위

舊민사 소송법 (원본)	① 물건명세서 ② 현황조사보고서 ③ 감정평가서 ④ 현황조사명령서 ⑤ 감정평가명령서 ⑥ 송달내역서 ⑦ 등기부등본 ⑧ 경매개시결정서 ⑨ 입찰기록 ⑩ 입찰표 ⑪ 항고장* 최고장*(이매당사자 소명자료) ⑫ 권리신고 내역서*(도면, 계약서사 본) ⑬ 채권계산서*(근저당현황) ⑭ 기타 권리신고*(가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민집법 (사본)	① 물건명세서 ② 현황조사보고서 ③ 감정평가서

* 경매참여자의 권리분석에 필수적인 정보

경매물건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법원 신뢰도 저하

매각기일은 최소한 2주전에 공고되어야 하나 경매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고가 누락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중요사항 누락, 불분명한 표현, 오기 등 부실부정확한 현장조사로 채무자, 응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체동산은 공고기간과 방식이 입찰참여 확대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다.

- ○○지방법원은 감정이 2,600만원(공시지가 기준) 임야에 대한 경매시 신문, 인터넷 등에 대한 공고도 없이 입찰진행('06.1월, 위원회 실태조사)
- 유체동산 경매를 ○○시 이후 로 일괄 공고한 후, 해당 시간(오전 10:00)에 사건별 시간을 배정하기 때문에 집행관과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입찰참여가 곤란('05.10월, 위원회 실태조사)

기간입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기간입찰로 경매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응찰자의 불편 초래 등으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 되어 브로커 근절, 경매 응찰기회 확대 등 제도도입 목적 달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작업 경매로 인한 불투명성 및 부패유발요인 상존

입찰집행 과정의 수작업 업무처리로 인한 불공정·불투명성 등이 각종

부패행위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며 매각기간 장기화, 지체이자 증가 등 경매집행 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작업에 방식의 경매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6.3%가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남
(’05.12월 청렴위 경매경험자 1,040명 설문조사)

감정수수료 지급기준 불명확

기본감정료는 감정평가업자 보수기준에 의해 산출하나, 최종감정료는 감정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법관이 가감토록 되어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이 금품제공, 부실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감정수수료를 경매예납금에서 우선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예납금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 제출 후 감정수수료 지급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미지급 방지, 신속한 지급 등을 위한 금품향응 제공요인이 된다.

- 서울 노랑진동 연립주택 감정가는 55천만원이나 낙찰가는 212천만원(385%)로 매우 저평가된 상태(’05.9월 위원회 실태조사)
- ○○지방 법원은 (주)○○감정평가법인에게 약 8,600,000원을 예납금 부족 등을 이유로 미지급(’05.11월 위원회 실태조사)

집행관 충원·운영의 불투명성

집행관의 폐쇄적 충원으로 선발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신분의 불안정성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경매지연 등이 부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 선 방 안

경매 물건정보 공개 확대로 금품수수 소지 차단

민사집행사건기록부상 권리분석 관련 필수정보를 '02년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수준으로 공개 확대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응찰 확대를 위해 품목별 세부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며 경매물건 정보에 대한 비공식적인 유출방지를 위해 경매응찰자와 경매담당자간의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공개 필수정보(예시) ◇

- 선순위 임차인 : 상가임대차 설정일자, 보증금을 집행관 현황조사에 포함
- 매각 불허가 사유 : 송달불능, 건축물 하자, 농지증명 등 자격 하자 등
- 가등기 : 담보가등기(금액), 소유권이전가등기 여부 및 가등기권자 답변서
- 부동산 세부현황(내부사진, 공공요금 미납금 등), 체불임금, 송달상황 등

경매 물건정보 제공방식의 효율성 제고

IT기술을 활용하여 권리분석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매각 공고 누락 방지방안 마련 및 공고기간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기간입찰제도의 활성화

불필요한 접촉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입찰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매각기일의 탄력적 조정, 입찰양식의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서울중앙지법은 경매브로커 근절 및 응찰기회 확대를 위해 '05.5월부터 3억원 이상 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해 기간입찰 실시('05.5.10. 법률신문)

전자경매제 도입

경매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전자화·자동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표8>

수작업 경매와 전자경매 제도 비교		
구 분	수작업 경매(법원)	전자입찰제
공고열람	2주전 법원 게시판 및 신문공고	6주전 전자공고
입찰 기간	기일입찰 중심, 기간입찰 일부 병행 ※ 기간입찰도 개찰현장 참석 필요	기간입찰 형태 ※ 개찰현장 참석 불필요
입찰서 제 출	입찰표·입찰봉투 이용 ※ 현장 혼잡, 오기에 따른 무효 빈발	전자입찰서로 on-line 입찰
입찰장	각 지방법원 경매법정 직접참석 ※ 원거리 응찰자 입찰관련 및 불편 야기	개인 PC 이용
본인확인	신분증을 이용한 현장 대면	전자공인인증서 이용
보증금 납 부	현금, 유가증권으로 현장 제출	결제시스템과 연동된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낙찰자 선 정	최고가 응찰자 수작업 확인	시스템에 의해 자동 선정
보증금 반 환	낙찰자 선정 후 현장 수작업 반환	신청계좌로 자동이체 처리

감정평가료 지급절차의 명확화

예납금 부족 방지를 위해 예납금 잔액확인 및 추납제도를 감정료 지급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집행관 충원·운영 구조 개방 및 자격기준 강화

집행관 충원대상을 개방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하여 충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임기를 연임이 불가능한 4년으로 성과평가

를 통한 경매서비스의 품질 제고 차원에서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원은 재설계하고 부패 및 윤리적 항목에 대한 집행관 자격을 철저히 검증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으며 집행관의 현황조사, 인도명령 집행 등 업무처리 단계별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30일 제도개선안을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였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를 위해 다각도의 이행을 경주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내 부패유발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2002.12.12, 재정경제부 권고)

추진배경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탈세관련 내부고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탈세제보 사항이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조세범 적발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일반세무조사」에 의해 포탈세액이 추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제보자들의 불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탈세수법의 다양화·지능화 추세로 볼 때 조세관련 불법행위가 감시자에 의해 고발될 수 있는 차단장치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대해서도 투명회계 및 윤리적 경영을 적극 유도하여 기업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범위 확대와 함께 탈세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의 마련,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령으로 명문화,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문 제 점

조세범 적발 차원의 포상금제도를 운영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통고 처분 또는 고발 등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포탈세액 또는 벌금의 일정비율(5~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탈세 제보자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포탈금액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質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훈령인 「범칙조사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3억원) 이하는 보상에서 제외(量的 제한) 시키고 있었다.

※ ‘90~’01년까지 탈세제보에 의한 추정세액이 1조2천3백억원인데 비해 포상금 지급액은 2.9억원 (보상금 지급비율 0.023%)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검증장치 미흡

현재 지방국세청의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범칙조사 대상인지 여부 만을 심의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 객관적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탈세제보자 보호장치 미비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내부고발자들이 탈세제보로 인해 근무 조건 차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와 신고자 비밀보장 장치가 미비하였고, 또한 무고한 신고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범위 규정

포상금(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를 불문하고 포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일정부문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포상금을 돌려 쓴 제보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법령(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중요자료의 유형을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중요자료 예시〉

- 제보된 증빙자료 및 제보서류에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포탈세액과 직접 연결된 경우
- 조세탈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 조세탈루와 관련된 기업내부 비밀자료(회계부정 등) 및 부동산 투기 거래·상속 증여세 포탈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 기타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정보내용중 조사시 사실로 확인된 매출누락, 가공원가등 고의적인 조세탈루내용(조세범처벌법 제9조<사기·기타부정한 행위>)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한 차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보상제한제도(Deductible) 도입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포탈금액(과세대상금액) 1억원 이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현행 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하한액이 포탈금액 3억원인 점과 우리의 납세환경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세무조사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도 일정기준금액 이하인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조세환경 변화 추이를 보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표9>

기준금액 1억원 적용시 포탈세액 및 포상금 (단위-천원)				
기준금액 (포탈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총 포탈세액	포상금	총 포탈세액	포상금
100,000	47,000	5,200	74,000	6,700

포상금지급 최고한도를 유지하되 향후 상향조정 검토

포상금 최고한도는 포상대상 확대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현행 1억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부패방지법상 포상금 최고한도(2억원)와의 균형, 탈세 제보로 인한 기업의 윤리경영 유도 효과 등을 감안, 포상대상 확대시책이 정착되는 시점(2년후)에서 보상제한(Deductible) 한도인 1억원의 축소 조정과 함께 포상금액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표10>

기존금액 1억원 적용시 포탈세액 및 포상금 (천원)				
기준금액 (포탈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총 포탈세액	포상금	총 포탈세액	포상금
100,000	47,000	5,200	74,000	6,700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보상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범칙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법에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 보상심의위는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범위, 보상제한 해당 여부,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나 탈세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 및 징계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탈세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제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12일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안을 권고 하였고,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12월 국세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완료 하였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의 이행 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2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

(2003.10.22, 재정경제부 권고)

추진 배경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가의 간접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나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매우 커서 면세유 부정사용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농어민과 주유소업자가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하는 사례 뿐만 아니라 공무원, 농수협 직원 등 공직관련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면세유 공급사용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문 제 점

배정단계 운영시스템의 미흡

공급관리대상의 관리가 소홀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배정기준이 되는 시설농업(온실, 건조장 등)의 운영여부 및 농기계보유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 조사결과 읍·면·동장은 「농기계보유량조사서」를 농협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농협도 별도의 조사없이 면세유를 공급하여 폐농기계에도 면세유가 공급 되는 실정이며, 농협중앙회가 연간 8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농민을 특별관리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단위농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도 선박의 보유댓수에 따라 배정량이 결정되고 있음에도 2톤이하의 선박은 등록절차는 쉽고 실제 확인이 어려웠으며, 특히 1997년 선박안전법 등의 개정으로 소형선박은 정기검사에서 제외 되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감척사업, 쌀 생산조정제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다.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허술

면세유는 어민이 수협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지정주유소에 제시하여 공급받고, 어민은 출고지시서를 받으려면 위판증명, 거래증명, 선박 입출항 신고서 등 어선운행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이러한 증빙서류가 형식적으로 관리되어 위변조 사고가 지속되었다.

면세유 공급과정의 불투명성

농업용 면세유는 일반주유소에서 과세유를 면세로 선공급하고 주유소는 세무서를 통해 사후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농민이 농협에서 발급 받는 면세유구입권의 유통기간이 최장 1년까지 허용됨에 따라 서류조작에 의한 부정환급자료로 악용되는 소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출고지시서 등을 이용한 주유소의 면세유 부정유출이 발생하여 농어민이 유류공급대금을 면세유구입권으로 대신하거나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권을 주유소에 양도하는 등 부정유출에 참여하거나, 출고지시서, 구입권, 어업허가증 등의 불법 대여나 밀거래를 통한 면세유 부정유출 사례가 발생하였다.

※ 면세유 공급카드와 출고지시서가 현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면세유 카드를 800~1,000만원에 밀거래하다 구속 ('01. 3)

사후통제 시스템의 미비

지도단속의 실효성 및 행정기관간 연계시스템이 미흡하여 국세청 조사 외에는 자체고발 사례가 없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일부에서는 비리를 묵인하고 댓가를 받는 등 부조리가 잔존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지 않아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수협 간부들이 면세유 공급업자가 축양업자 76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를 신청하는데도 눈감아 주고 금품수수혐의로 구속(2002. 11)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포상금제도의 미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주유소에 대한 벌칙규정도 미비하며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로 수사를 받은 경우에도 대개 벌금형으로 처벌이 미약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는

포상금제도가 없고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포상금제도는 있으나 신고실적이 없는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영이 미흡하였다.

개 선 방 안

배정단계의 운영시스템 정비 추진

공급대상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화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계어업용 면세유 공급선박쌀생산조정제 및 감척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명확화

- 재경부 : 관계부처 감사, 실태점검결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 농림부, 해수부 : 정부합동감사시 읍면·동, 농수협 등의 이행상황 중점조사 및 농기계·어선 등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국세청 : 불법유통 다발지역 주유소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
- 읍면동 : 「농기계보유량」 실태관리 철저 및 조사결과 농협에 통보의무화
- 농수협 : 시설농업(온실, 건조장, 양식시설 등)에 대한 「면세유관리대장」 관리 및 반기별 현황조사 확행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강화

출고지시서 발급시 실제조업(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요건을 강화하고 시간계측기 미설치 선박에 면세유 공급을 중지하며 계측기 실적 미제출 선박은 일정비율 감량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급과정의 투명성 확보 추진

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하여 부정유통 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유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주유소의 면세유 공급확인서 제출기한을 단축토록 하였으며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공급주유소의 직영화를 추진하였다.

사후통제 시스템 확보 추진

농림부, 해수부, 농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 강화 및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실시를 제도화 하는 등 행정기관 간 연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동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세금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2일에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법개정을 완료하여 그동안 면세유와 관련하여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한 근절이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행실태조사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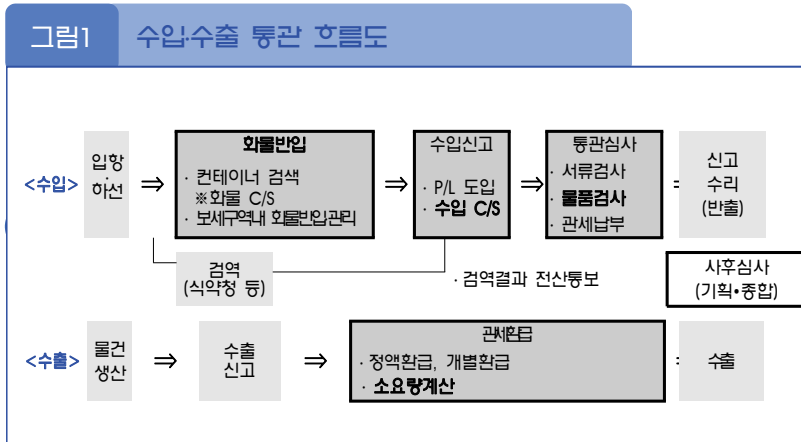
3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권고

(2004.6.7, 관세청 권고)

추진배경

인근 국가와의 공항만 경쟁 가속화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규제완화가 확대되면서 통관 검사비용 축소, 통관절차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가 개편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밀수 및 관세탈루 비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의 통제장치 불명확

통관화물의 전산선별검사(C/S)시 각종 정보사항(처벌실적, 허위표시 우려지역 등)을 미리 전산에 등록하고 검사대상을 선정(5%)하고 있으나 검사등록기준이 업체 및 관세사에게 유출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통제장치가 불명확하였다.

또한, 화주·관세사 등이 세관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통관편의 제공 및 부정 청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세사 등은 이를 빌미로 화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 C/S 기법 : 검사 대상중 사전 수집·분석 정보를 이용 우범성이 큰 검사대상만 사전 선별

적하목록(B/L등)의 심사로 컨테이너검색 대상화물(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화물을 사전에 적하목록에서 미리 누락시켜 컨테이너 검색을 피하고, 사후에 B/L등을 제출하는 등 선별대상에서 누락하는 편법 밀수행위가 발생되고 있었다.

※ 적하목록 : 외국화물 적재 선박의 입항시 선장이 입항 24시간내 작성제출하는 선적화물 명세서(배이름, 국적, 품명, 수량, 무게 등 상세기입)

※ 선하증권(B/L) : 선박회사가 운송을 위하여 본선 선상에서 수취한 화물에 대하여 하주의 청구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

보세구역 관리 과정의 관리 미흡

탈세나 검사회피를 목적으로 보세사·화주가 특허보세구역내 화물을 시중에 불법 유출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나 세관인력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고, 위법한 보세화물 유출에 대한 화물관리자인 보세사의 처벌이 미약하여 견책을 누적하여 받더라도 업무정지되지 않고 업무정지를 누적하여 받더라도 등록취소가 되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사후심사 및 관세환급 제도의 부실시행

세액심사가 업체가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사하고 세관에 보고하는 ‘자율심사방식’ 위주로 개편되었으나 업체내에 관세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업체와 불성실 관세사간 유착을 통한 부실심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또한, 화주·관세사 등이 품목분류번호·관세율을 고의로 위장변칙 신고하고 이에 대한 일선 세관의 고의적·비고의적 목인이 발생하여 관세율 적용오류와 정보공유가 미흡하였다.

개 선 방 안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의 강화

선별기준 등을 업체관세사에게 사전 유출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 조치토록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검사대상 선별기준 변경 요청부서와 등록부서간 견제체제 구축을 위해 통관지원과에 수입업무 유경험자 등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기준 변경사유의 적격심사제 실시하고 기준변경 사유업체명단을 분기별로 본청에 보고토록 하여 ‘본부세관 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관세종업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운영 합리화를 통해 포상금 지급상한(현행 최고 100만원)을 대폭 증액하고 관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비리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적하목록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우범화물로 선별하여 상습적인 적하목록 누락업체는 업체 준수도를 평가하여 검사를 강화하도록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개정토록 하였다.

보세구역 관리 과정의 감시제도 확립

특허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불시감사를 시행토록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토록 하였고, 화물관리 부실 적발시 보세사에 대한 처벌 누적을 적용토록 ‘보세사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도 개정토록 하였다.

사후심사 및 관세환급 제도의 철저한 시행

징계 및 처벌실적 있는 관세사 등은 기업의 자율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종합 및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세관간에 공유하고 동일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7일 관세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고, 관세청에서는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적재에 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과 본부세관 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4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개선

(2006.2.28, 재정경제부·중소기업청·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권고)

추진 배경

중소기업은 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담보력과 신용 평가기반이 취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하여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요가 높아 부패발생 개연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 '04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99.4%,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00%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보증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부적격 업체에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보증사고 발생률이 높고, 대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용보증이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보증사고율 추이(%) : 3.8(01) → 4.3(02) → 8.3(03)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의 견제기능이 상실

신용조사와 보증심사가 동일직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보증과 관련된 견제기능 미작동으로 보증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이 일정한 기준 없이 영업점별 재량으로 이루어져 신청업체의 신용조사과정에서 인맥·연고에 의한 각종 청탁 및 해당업체와의 유착 소지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증심사시 재량권 남용 및 기준 등이 비공개

보증심사가 구체적 기준없이 신용조사자의 자의적 판단과 영업점장의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등 포괄적 판단사항이 많아 재량권 남용 등 부패소지가 상존하고 보증심사 관련 규정 및 기준이 신청업체에 공개되지 않아 보증결정의 불신을 유발하였다.

보증결정시스템의 불합리성

보증결정은 통상적으로 보증취급 라인결재에 의해 보증승인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 불공정한 보증결정의 개연성이 높고 심사결과 통지가 구두 또는 전신 등 불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 예외 서면통지 : 한도거래보증 등 단시일내에 보증실행이 되지 아니하거나 승낙통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보증거절업체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역본부 또는 일반민원부서에서 심사함으로써 보증심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비하고 이의제기 창구가 일선 영업점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증거절업체의 접근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었다.

형식적 보증연장 심사 및 사후관리의 부실

대부분의 보증연장이 3년까지는 자동 연장되고 있어 장기보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초 신용보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현장조사 및 신용조사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지원자금의 적정 집행여부, 보증지원업체의 회계처리 적정성 등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보증지원자금의 용도와 사용 등 부정행위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미비

신용보증기관 내부 규정상 징계기준은 있으나 세부양정기준이 없어 보증사고 발생시 경미한 수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심사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 사례가 없는 등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심사자를 분리하여 내부건제기능을 확보하고 신용조사시 심사자 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보증신청업체와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신용조사 심사자에서 배제토록 하여 이해충돌 소지를 해소토록 하였다.

보증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

보증심사시 주관적 평가사항 관련 근거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비재무 평가항목의 경우 보증기관의 누적된 보증심사 자료를 토대로 유형화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신용보증심사기준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보증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매월 자금용도별, 보증형태별로 세분하여 보증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토록 하여 보증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업체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보증결정시스템 개선 및 보증 재심사 기능 확보

계선조직에 의한 보증심사 결정방식이 아닌 보증심의위원회 등 집단 의사결정 체제를 활성화하여 독단적 보증결정을 방지하고, 보증결정에 이의제기 방법을 인터넷 등으로 확대하며, 이의심사는 일선 영업점이 아닌 별도의 본부부서에서 담당토록 하여 영업점의 보증심사에 대한 건제기능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보증기한의 자동연장시 매 보증기한별 보증대출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기한 도래시 일정금액을 별도 예치토록 하거나 보증금액을 축소토록 하며 신용도 악화시 보증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보증연장 심사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여부를 확인토록하고 재무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심사분석 후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보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보증지원자금의 적정여부 점검 및 보증업체로 하여금 자금사용내역 확인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보증 대출자금의 용도의 사용 등 부당행위 발견시 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를 신용보증기관 및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하였다.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감독 강화

보증사고 발생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주기적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해 보증심사과정의 부패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보증사고 감축을 위해 매년 신용보증기관 전체 또는 영업점별로 보증사고율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실적치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증사고시 관련 임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중징계 해당시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보증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일 재경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기관에서는 권고안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05.9.14, 재정경제부·국세청 권고)

추진 배경

세무분야는 기능중심의 국세조직 개편('99. 9. 1)이후 과세인프라 구축 조사시스템 개선 등 세정혁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관습적 형태의 부조리를 상당부분 제거하였다.

그러나 2004년 7월 청렴위가 실시한 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세무분야가 건설·건축분야(71.3%)에 이어 2위(57.2%)로 세무분야의 부패인식도와 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미흡 및 조사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의 형평성 논란은 세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세무조사의 정당성 및 투명성 결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절차 등이 법령의 위임 없이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 운영되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세무행정의 불신을 고조시키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세무조사 관련 근거 법령규정 >

- 국세기본법 : 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기본사항 8개 조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중복조사 예외사유 등 6개 조항
-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 : 세무조사 관련 사항 대부분, 141개 조항
- 조사관리지침(비공개) :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

또한 일선 세무서의 조사관할 범위가 협소하여 조사대상의 합리적 선정이 어렵고,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부패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조사반 구성이 상시고정적이어서 구성원간 견제역할이 어렵고 동료애를 평계로 비리를 눈감아주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 '00~'03년 평균 세무조사 비율 : 법인 1.72%, 개인 0.3%
(미국 : 법인0.65%, 개인0.16% / 일본 : 법인4.19%, 개인0.35%)

범칙조사규정의 투명성 결여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범칙조사 회부기준 및 고발기준이 훈령 및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영되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운용소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포탈세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부과하고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등 단순질서범에 해당되는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엄벌주의가 소극적 범칙조사를 유도함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신을 유발하였다.

<표11>

 조세범칙조사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6
조사건수	121	102	130	115	172	103
고발건수	98	92	102	95	164	95
부과세액	2,090	3,388	4,072	1,365	3,970	3,403

지방세 세무조사의 비효율성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 협소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이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등 객관적 세무조사 선정기준이나 내용의 미비로 부조리 개연성이 많았다.

개 선 방 안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세무조사 관련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또는 「조서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세무조사관련 규정을 원칙적으로 국세 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 주요 법제화 대상 규정(예시) >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남용자 징계, 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의 착수, 조사결과 조치 등

다만,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은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훈령으로 시행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 및 통제시스템의 강화

조사팀에 대한 청탁로비를 차단하고 조사팀간 상호견제를 위하여 시범 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 남용요건 구체화 및 남용여부 조사의 무화 등 책임성 강화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금품제공 또는 금품 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등에 금품제공(알선) 금지를 세무대리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세무대리인이 금품제공이나 알선을 이유로 징계 등을 받는 경우 표창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범칙조사의 공정성 제고

범칙조사 회부기준 및 고발기준, 절차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즉 조세범칙 사무처리규정 제4조의3(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제9조(범칙조사 전환), 제53조(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내부훈령·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위임근거 마련 후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부 미비치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 등 단순 조세질서범은 범칙행위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등 처분으로 전환하고, 벌금형 등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세무조사팀을 구성·운영하되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서면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제화 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4일 제도개선안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권고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따라 법률 및 제도를 개정 또는 개정중에 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세무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배경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22조원이고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손해보험 시장 규모 : 10조('95) → 14조('98) → 16조('00) → 20조('02) → 22조('04)

리베이트 추정 규모 : 전체보험료 대비 4.9%(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 '01.12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불비, 소극적 행정처분, 일정금액 이상의 고발기준, 부패 수익의 몰수규정 부재, 반복적발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불법행위 차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분야의 공공성과 국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엄정한 부패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제점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만연

보험계약체결 과정의 리베이트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영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제공방법은 가입회사임원에게 직접지급, 법인카드 지원, 제3자(대리점 등)를 통한 우회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특히 건물과 빌딩 등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20~25%, 일반보험은

10~20%, 자동차보험은 6~8%가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자금마련을 위해 허위구매계약 체결이나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을 ‘경유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이 사용되며 이 비용은 곧 보험사업비가 되어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전가되는 실정이었다.

<표12>

 보험분야 금융사고중 리베이트 등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05	291	76	80	131	98	98	113
횡령·유용 *	281	248	72	76	116	88	93	84
사기	14	8	1	0	12	6	1	2
기타	10	35	3	4	3	4	4	27

* 횡령·유용에 리베이트 포함

또한, 대형 위험설비, 고가 기계장치 등 취급업체의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대기업의 화재·재해·중요기계장치 고장 등의 보험금 지급시 보상금액을 과대평가 후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련협회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조사행위의 불공정성

협회의 조사 권한이 법률에 의한 조사위임 없이 협회의 자율규제 업무인 ‘보험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법·규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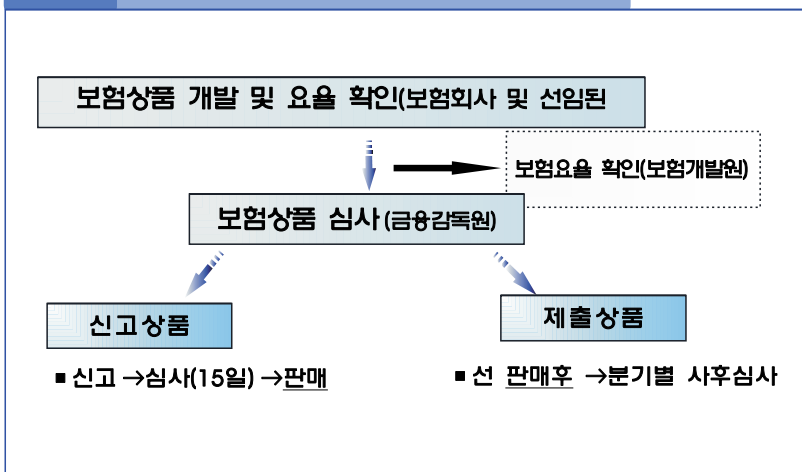
또한, 협회 조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이 없이 제재로 종결하고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 등이 사후관리되지 않았고, 조사팀(협회 1명, 보험사 2명)에 보험사 직원이 포함되어 중요조사시 상호 로비 등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보험료 결정 및 보험상품 심사의 불투명성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기관보험회사에만 제공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아 가입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였다.

또한, 보험상품 심사시 핵심사항인 사업비 책정, 보험약관 내용, 사업 방법서, 보험료 산출 등의 부적정으로 반복 적발될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보완조치가 없어 상품 심사시마다 유사유형들이 반복 적발되고 심사과정의 재량 및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그림2 보험상품 심사 흐름도



개 선 방 안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정비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영업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포함)이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 등에 반영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를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수수한 자’로 개정하여 취득자까지 처벌하고,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엄격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대리점, 모집인까지 처벌을 검토하고, 재량소지 문구를 정비하여 과징금 부과 of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을 개선하여 금감원의 자체 고발기준 금액(특경법상 5천만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발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법인명의 가입시 받은 리베이트와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과 고의성 등의 내용(가이드 라인)을 운영기준에 마련토록 하였다.

특별이익 제공에 의한 법인명의 보험가입,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 공모편취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1년 이후 사문화된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기준을 시행령·규칙 등에 마련토록 하였으며,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 제재기준(반복의 개념, 기한, 횟수, 금액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협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스템 개편

관련협회 조사행위 중 특별이익 제공 등 위반행위는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협회 신고 건중 리베이트 등 중요자료이거나 고발기준 해당자료는 금감원으로 통보하여 조사처리하고 금감원 접수 민원중 리베이트 등 중요신고 건은 협회에 이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의 ‘상호협정’규정에 협회에서 조사 조치한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토록 명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협회에 이첩하거나 이첩된 건의 조치결과의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보험료 결정 및 보험상품 심사의 투명성 확보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위험률 등으로 검증·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등 공개내용 및 방법을 확대하고, 보험상품 심사결과 반복적발 사항은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후심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는 2005년 10월 17일 제도개선안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하였고,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해당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개정 완료하였고,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의 4.8%인 5조 6,751억원에 이르는 등 연평균 1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자 및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행위들이 지속되고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연구기획, 평가, 사후 지도·감독 등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시스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다.

문제점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문제

연구개발사업이 소관부처별(20개)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연구기획 과정에서 범국가차원의 부처간 통합·조정시스템이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연구과제 중복 검사 등에도 불구하고 과제 중복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공통법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획내용의 공개 미흡, 짧은 공고기간 등으로 인해 연구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주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연구기획단계에서 신규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사업 기획이 소수 전문가에 의해 반복되고 있었다.

평가과정에서의 부패발생

담당 공무원 및 연구관리기관 직원이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특정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기관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소수 검증된 전문가에게 과도한 평가부담을 부여하면서 평가참여에 따른 수당 등 인센티브는 부족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있는 평가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평가위원 Pool이 적고, 부처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특정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동일인이 중복선정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도·감독 및 감사 부실에 따른 부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각 부처별(20개)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규정이 대부분 지침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곤란하며, 연구개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처벌조항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 선 방 안

효과적인 사전예방체제 확립

연구기획과정에 있어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가 유사한 사업은 공동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편성시 부처간 공동기획 대상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지침 등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공통법규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신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공고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통합공고시스템을 확충 강화하는 등 기획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연구기획단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기획전문가 선정방법을 보다 체계화하고 기획전문가 선정시 산·학·연의 균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평가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평가과정의 불공정 시비 불식을 위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 및 연구관리 기관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평가 기준 및 방법의 사전공개, 평가실명제 도입 등 열린 평가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추진 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평가에 따른 보상 확대로 평가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부처별 평가인력 DB를 연계해 평가위원 Pool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효과적 부패통제를 위한 지도·점검체제 강화

관계부처, 연구관리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관리 합동 점검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비 카드사용 확대,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연구과제 관리평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연구관리기관 연구원의 석·박사과정 이수승인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적발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는 2004년 7월 2일 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안에 의거하여 법령개정 및 후속조치 등을 완료하였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8

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2003.8.20, 중소기업청 권고)

추진배경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선정 및 조합원간의 물량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나 물품계약의 수주과정에서의 구매기관과 조합업체간 유착 등 최근까지도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구매기관과 조합·업체의 유착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우리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물품 추천·지정요건의 불합리성

물품 품목을 지정하는 방식은 기존에 지정된 모든 품목을 그대로 두고 특정물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지정하여 조합·업체 간에 서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전 로비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 추천 지정요건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7조 별표1〉

-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한 조합의 물품, 물량배정기준과 연간배정기준표를 준수한 조합의 물품,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조합의 물품 등

업체의 생산능력에 대한 현장조사 미 실시

물품 추천·지정시 조합원(업체)이 실제 물품 생산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앙회 및 조합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조사 없이 물품을 지정하여 생산능력 없는 업체가 제3자 하청생산, 덤핑구매를 통한 물량공급을 하는 등 부실납품의 사례가 지속되었다.

※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에 의거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민원발생시 예외적으로 현장조사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규정 24조〉

구매기관과 조합·조합원의 유착비리 상존

구매기관이 특정 조합원(업체)에게 계약 물량을 주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차등배정제’를 악용하여 공무원출신 조합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 이전 근무처인 구매기관과 담합하여 특정업체 물품을 차등 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구매기관의 계약정보를 사전획득시 연고를 통해 구매기관에 사전 로비하는 관행이 잔존하였다.

※ 단체수의계약과 관련,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과 골프여행 등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협회간부 ○○○씨 구속('99.1월)

물량배정심의회 통제기능 미흡

민원 해소를 위해 개별조합 단위에 설치된 '물량배정심의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치 이후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 청렴위 현장실태조사 결과 9개 조합중 8개 조합이 심의회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중앙회에 접수된 민원의 발생 추이 : '00년 (18건) → '01년 (20건) → '02년 (46건)

불합리한 처벌규정

비리발생 조합에 대한 처벌여부가 재량이여서 사후처리과정에서 로비에 따라 처벌여부와 처벌수위가 조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계약 내역 미공개 등 조합의 부정운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이 있을 뿐 사실상 조합의 부정운영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었다.

개 선 방 안

물품지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물품 추천·지정시 요건(추천·지정요건 및 추천·지정 제외요건)을 개선하여 물품지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구매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에게 물품을 배정할 때에 조합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구매기관과 조합·조합원 유착 방지 대책 마련

구매기관에서 차등배정 요구시 계약 특성별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보를 하고 차등배정 내역을 대외적으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임용시 유예기간을 도입하였다.

또한 업체의 사전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물품정보를 조합에 요구, 조합이 물품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업체에 구매기관의 계약문의 요청이 온 경우 이를 조합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불공정 배정 통제장치 현실화

물품별 「연간배정기준표」와 조합원별 「연간배정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물량배정 과정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배정심의회의 주기적 개최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효율적 부패통제 장치 마련

비리발생 조합의 “연도내 지정제외”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고 위반업체 및 조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고 조합원간 견제와 균형확립을 위해 조합내부에 비리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1개사 1조합 가입원칙 준수여부’, ‘동일업체 여부’, ‘위반업체의 물량배정제외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 Check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반업체 상시 적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는 2003년 8월 20일 제도개선안을 중소기업청에 권고하였으며, 2004년 1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완료하였으며, 향후 이행실태조사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9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07.6.25, 대한광업진흥공사 권고)

추진 배경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자원개발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저렴한 원자재 공급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대한 광업진흥공사)에서는 정책자금인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국내자원산업자금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광산업체가 취약한 담보력으로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표13>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광업자금			광산물 가공자금			석골재자금		
	계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총계 (‘69~’06)	15,405	6,656	8,749	12,554	5,482	7,072	92	54	38	2,759	1,120	1,639
‘04~’06	2,260	919	1,341	1,897	818	1,079	92	54	38	271	47	224
‘04	656	232	424	555	227	328	-	-	-	101	5	96
‘05	789	256	533	671	215	456	5	-	5	113	41	72
‘06	815	431	384	671	376	295	87	54	33	57	1	56

* ‘04~’06 : 광업자금(광산물가공 포함) 88개 업체(96개 광산), 석골재 24개 업체

그러나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및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부실 준공검사,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용자 및 용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 및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자금 본래의 목적인 취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 제 점

시설자금의 부실용자 및 목적외 사용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자금을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용자받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하였으며,

특히 일부 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제출서류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현장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실시하여 부실용자를 초래하였고, 용자후 사후관리도 부실하여 목적외 사용을 초래하였다.

운영자금의 관리제도 미비 및 부실한 사후관리

운영자금도 용자신청 시 자금운용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자금의 적정 집행에 대한 사후확인 수단이 없어 부당사용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였다.

- ※ 준공검사 시 00업체 등 일부 업체가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제출서류 상 금액을 인정하여 준공처리('07. 4. 청렴위 실태조사)
 - 기존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사후 세금신고내역 대조 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
- ※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시설설치와 관련이 없는 자회사에서 전액 발급 받아 첨부처리(00가공업체에서 전기, 기계 등 비영위 업종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첨부처리)('07.4. 청렴위 실태조사)

이러한 부실대출 등의 발생은 시설자금에 대한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등 준공검사 부실과 운영자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수단 미비 및 지원자금 적정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지원업체내역, 사용제한 등 정책자금 지원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지원자금의 적정집행에 대한 대외적 통제 곤란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 선 방 안

시설자금 용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이러한 부실용자 및 목적외 사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자금의 경우 준공서류 제출 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 공사에 세무관서 신고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형식적

준공검사 방지를 위해 제출서류 증빙확인 철저, 상호 교차검사 등 준공 검사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및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운영자금은 자금 신청 시 “자금운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융자금 “집행 전용계좌” 개설·집행 및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융자부서·감사부서 등 합동의 주기적 불시점검 의무화하고, 부실검사 및 부실융자 등 적발 시 융자 및 준공검사, 확인·점검 직원의 징계 등 연대책임을 강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실 융자, 융자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지급중지 및 약정 취소환수 의무화 (임의규정→강행규정화)와 함께 부실융자 등의 적발 시 해당 업체 일정 기간 지원 금지 의무화 등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지원사업의 대외통제 강화를 위해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7년 6월 25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권고하였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관련 세칙등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생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산업자원부 소관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 발전 역량 확충, 산학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소홀로 사업비 횡령, 부당집행,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막대한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체계 부실

현행 규정상 사업참여기관의 수행능력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지방비 조달능력, 지역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체계가 부실하여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미흡

다양한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에 조정 및 통합 체계가 미흡하여 있어 유사·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유사사업에 대한 칸막이식 지원과 사업간 연계미흡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주체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사업관리기관의 책임성 및 도덕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제도 운영 부적정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불합리하여 규정을 악용한 위법·부당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다. 또한 사업비 정산은 외부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서류위주의 형식적 점검으로 영수증 이중사용, 장비도입 등 실물확인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사업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미흡

형식적 점검 등 면밀한 지도점검이 미흡하여 위법·부당한 사업비 집행 방지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등 주요사항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자격 기준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지자체의 기획부실, 지방비 출연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자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였다. 또한 평가위원이 금품 수수 및 비밀누설 등 규정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실효성있는 제재가 곤란하였다.

개 선 방 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사 강화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기획단계에서 지역기업의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산자부 및 지역단위로 “유사중복 사업조정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사업추진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사업추진 도중 협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자부는 그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점검 결과 사업비의 목적외 집행 등 규정위반사실 발견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R&D사업 관리기관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하여 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토록 하였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사업비 관리 통장을 법인명의로 개설하도록 하고, 5만원 미만의 사업비 집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서류위주의 정산시스템을 온라인 정산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기관 및 정산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대폭완화함과 동시에 신속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정산기관이 고의로 정산 잔액 조작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내역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 강화

사업비 집행 점검시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참여율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하도록 하고,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현장 실태 조사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지원을 받거나 공동수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비상근직인 법인대표를 상근직으로 전환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 제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지역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등 지역 전문가를 포함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회피·기피·제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지자체가 기획부실, 지방비 미납 등으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규 사업참여 제한, 국비 차감 지원 등 불이익 부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규정 위반시 평가위원 POOL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5년) 국가연구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7년 8월 29일 산업자원부에 권고하였고, 2008년 6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제도개선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공정한 인사의 시행은 교사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사의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도 금품·향응과 결부되거나 인사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지연·학연 등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정실인사가 작용하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인사상 특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분야 즉,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방법과 인사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제점

인사위원회 공정성·독립성 확보 미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교육감

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인사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외부 위촉위원 역시 대부분이 전직 교장 또는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등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독립성의 확보가 곤란하였다.

근무성적 평정 과정상 유착관계가 형성

근무성적 평정의 구성요소 및 평정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정자의 주관에 의한 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평정대상자와 평정자간의 유착 발생 개연성이 높았다. 또한 교사의 학생교육은 평생(20~30년이상)이 걸리는데 평정대상기간은 승진심사 전 최근 2년간으로 한정되어 그 기간동안 평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집중적인 유착관계가 발생되었다.

교원 인사구조상 인사비리 소지의 상존

근본적으로 현행 교원의 인사구조가 계급구조(교사→교감→교장)로 되어 있고 승진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승진을 둘러싼 인사비리 소지가 상존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사위원회가 합의제기관으로 독립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사위원 중 내·외부인사를 막론하고 교직단체가 협의·추천하는 인사 1인을 포함하고 인사위원회에 배후 영향력 차단을 위해 회의결과와 참석 인사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 확보

근무성적평가에 교장·교감평가 외에 「동료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하여 평가결과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료평가 반영비율을 20%수준으로 책정하여 근무성적평정 80%(교감

40%, 교장40%), 동료평정 20%로 함으로써 학교장의 평정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논문 점수 평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사도지역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포함한 교원 논문자료들은 중앙단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10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여 해당부처에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동료평가 실시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제도개선의 이행 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03.7.29,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추진배경

외국대학의 통신과정 박사학위, 국내 현지 사무소의 비인가 학위과정 모집 등 비정상·비인가 학위제도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알선·부정 비리가 발생하고 이들 학위의 인정여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00여명의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들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등록하고 있으나 등록·접수만 하고 있을 뿐 학위의 진위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 재단의 신고사실이 정부공인을 받은 것인 양 왜곡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14>



년도별 신고자수									
구분	82~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합계
신고자수 (명)	12,083	1,873	2,199	1,764	1,805	1,493	1,803	1,858	24,878

<표15>



학위종별 신고자수									
학위종별	공학	이학	문학	철학	교육학	신학	경제학	기타	합계
신고자수 (명)	6,511	4,317	3,784	1,538	1,135	1,035	1,397	5,161	24,878

<표16>



국가별 신고자수									
국가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기타	합계
신고자수 (명)	14,240	4,056	2,067	1,209	859	414	330	1,703	24,878

한편, 박사학위 소지자는 교수 신규채용, 재임용 우대, 재직자인 경우 3호봉 인정, 초·중·고교사의 승진가점(2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등 학위취득에 따른 국가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비인가 학위에 대한 혜택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적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시장 개방과 고등교육의 국제협력 강화추세에 대비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외국박사학위의 질적 검증뿐만 아니라 가짜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미비되어 있고, 비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례가 빈발함은 물론 이들이 대학교수직에 상당수 제직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립대 총장·사립대 이사장 등의 외국학위 알선사례 및 외국박사학위 세탁 등을 통한 비인가·비정상 학위취득 사례가 빈발하는 등 외국학위 취득과 관련한 부패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비정상적 학위취득자에 대한 특혜부여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하여 교수 신규채용, 재임용 우대, 호봉, 승진 가점, 초·중·고등교사들이 교감·교장 승진 등에 이용되고 있어 자격과 대우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의 추가 또는 보완

현행 단순 신고·등록기능에서 비정상·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 취득 예방을 위한 신고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목적을 재설정하여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의 취득을 방지하고, 신규기관(학교)은 설립 근거 및 설립연도, 박사학위 수여근거 및 학위종류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록내용을 추가하고, 신고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정규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명확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제출 서류의 보완을 위해 현행 학생증 사본, 논문이용 동의서, 학위논문 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신고필증 내용의 보완을 위해 현행 학위종별, 학위 수여교, 학위번호 및 수여일자 외에 논문제목, 학위논문 언어,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체류기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정보제공 체계 강화

외국박사학위 정보·자료수집 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제도의 보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대학학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학 등 수요처에 대한 학위 관련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위내용 확인제도 및 비상설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요자의 학위내용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의결사항을 관련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가짜 박사학위 신고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가짜 박사학위 신고에 대하여는 학위정보의 공개차원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가짜 학위를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 또는 이를 국내에 통용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제 수단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29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향후 권고된 제도개선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실태 조사·평가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2003.10.14,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추진배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 모금, 찬조금 형식의 불법모금 및 기금의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공개 등 불법과 부작용이 성행하였다.

<표17>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년 도	학교수	조 성 학교수	조성 목적별(단위 : 백만원)				
			계	교 육 시설비	교 육 기 자 재 · 도 서 구입비	체 육·학예 활 동 비	학 생 복지비
2001	10,234	6,228	131,453	46,296	39,354	20,650	25,153
2002	10,345	6,404	132,743	48,729	34,397	21,189	28,428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불법적인 사례 발생시 행·재정적 제재 등을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학부모에게 일정금액 할당 및 학급간부 부모에게 강제 할당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전화통보 등으로 일정액의 학교발전기금을 할당해 납부를 강요하거나 학생회장단, 반장단 등 학교간부의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강요하고 있었다.

영수증 미발급 등 관리 소홀 및 목적외 사용

학부모 대표 등이 직접 교장실을 방문하여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학교장이 영수증 발급 없이 수령하거나 관리대장 기록 없이 특정목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조성목적과 기부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또는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교직원의 단체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당초 기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금 사용현황의 공개 미흡 및 위반자 처벌 미약

학교발전기금 결산결과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공개나 홍보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일부 간부만 발전기금 사용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고 있을 뿐 일반 학부모들은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표18>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2001~2002)					
구 분	위반 학교수			주요 위반사항	조치결과
	계	2001년	2002년		
사도 교육청 (16개)	334	127	207	· 운영위 의결없이 기금 모금집행 · 기금으로 접수않고 교직원 회식비 등 사용 · 모금시 일정액 할당 및 강제모금 · 기금조성 목적외 사용 등	<행정조치> - 시정 <신분조치> - 주의, 경고등

학교별 부익부 빈익빈 초래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대도시 특정지역의 일부학교는 매년 수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반면, 서민층 밀집 지역 학교는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학교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특정지역 학교는 더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선호학교가 탄생되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불법찬조금 강제 모금 성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그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모나 자생단체인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을 통하여 각종 찬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정해진 목적과 절차·방법·모금액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찬조금은 수시 모금이 가능하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대장의 기록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규모나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학부모로부터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 조정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각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학교발전기금모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용용도를 제한 하지 않았다.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관할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다.

위반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시에는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을 제한하고 기금조성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기금조성을 중단하고 기 조성된 금액은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14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관련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4 교육분야 제도개선

(2004.2.23,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추진 배경

교육분야 부패는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침으로써 부패의 세대간 전염통로가 되고,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 등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민의 관심대상 분야이다.

그러나 기업, 가계, 정부 등 거의 모든 사회 경제주체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교육부패가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사립학교의 교수교원의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등 회계관련 부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교수·교원의 신규임용 부적정

교수나 교원의 인사권한이 학교법인 및 중앙기구에 집중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총학장(교장) 등이 교수·교원의 신규 임용 시 금품 요구, 시설투자기자재 구입 요구 등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고, 일부 대학은 인사규정을 불투명하게 제정·운영하거나 인사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 자격기준 미달자 등을 임용하거나 심사위원의 담합으로 면접 등에서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하여 임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평가 항목인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면서 겸임(초빙)교수를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대학의 비용감소 등을 이유로 겸임교수 채용이 증가하였고, 사립 중고의 경우 법정사유 외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이 급증하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수(원)의 신분 불안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고보조금의 불법사용 및 예결산에 대한 감시기능 상실

국고보조금이 일부 대학에 집중 배정됨으로써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공사 등 수의계약, 회계별 구분 없는 혼용집행 등 불법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 '98~'02년 5년간 총 137개 사립대학 중 상위 5개 대학에 국고보조금 전액의 24%, 상위 10개 대학에 36% 배정

국고보조금 등 예결산 자료 공개시 신출근거나 부속명세서 등 세부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미공개·지연공개·부실공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며, 예결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감시기능이 상실하고 감사증명제도도 회계법인 등을 학교법인이 직접 선정하여 부실 예결산에도 적정의견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었다.

부패통제 체제 미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인력(32명)의 절대 부족으로 국·공립대학(교) 62개교, 16개 시도교육청, 사립대학(교)·산하기관 등 총 464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가 곤란하고,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연간 10개교 미만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성이 제기되었다.

※ '79~'03년 사립대 155개교 중 총92개 대학(59.3%)이 교육부 종합감사 미수감

더불어 감사결과 조치도 대부분 경고 또는 주의 등으로 소극적 처분 요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사학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생(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사학분규로 발전하는 등 감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학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불합리

이사회가 친인척이나 학연·지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공공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미비하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도 2년이 경과하면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여 불법행위 이사진의 법인 복귀 방지제도가 미비하였다.

개 선 방 안

교수·교원 임용제도의 투명성 확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열·학부별로 합리적인 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등에 공개하고, 대학평가 항목인 교원확보를 산정시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교원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고하였다.

또한 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 강의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학교장이 제청하면 학교법인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제 교원의 채용요건을 구체화 하였다.

예·결산의 공개 및 감시제도의 강화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하였으며, 학교법인 감사 2인중 1인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 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학교별 배정금액, 사용내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고보조금을 허위·부정 신청, 용도의 사용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마련 및 회계자료 공개범위를 산출근거, 부속 명세서 등으로 확대하였다.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사립대학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사학에 대한 실질적 감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력 확충 및 사학전문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구체적 양정기준을 포함한 감사처분기준 마련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감사제를 도입토록 하였으며, 일정요건의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의 “감사청구권제”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및 처분결과를 인터넷 등에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인 의사결정구조 개선

이사회의 1/3 이상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익대표자로 선임하고, 친인척 이사 참여 상한선을 “1/3”에서 “1/4”로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및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리이사의 복귀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시 재적이사의 2/3 이상 동의를 의무화하고, 감사는 이사회 추천 1인과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토록 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록을 보존기간 내내 비치·열람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 23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감사청구권제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효과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5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2005.12.20,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추진 배경

지금까지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앨범제작,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관련 부패는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시켜 교육의 신뢰와 권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결여

교육기자재의 구입가격은 조달청 고시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가격 조사기관의 공표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나, 학교 및 교육청 구매담당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인정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입한 사례 등이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는 물품구매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예산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구매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었다.

물품 구매절차의 비합리성

지역교육청 공동구매에 의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매하여 관할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불필요 또는 사용불가한 제품을 구매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와 업자의 유착으로 가격은 높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납품 받는 등 비리가 발생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물품구매시 교사들은 구매요구서만 작성하고 구매계약은 행정실 담당자가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의견수렴 및 검수 등에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물품 구매 관련 직무교육 또는 회계교육의 미흡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편성단계부터 교직원 등의 참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회계 관련 담당자(행정실 교사 등)들의 재정관련 직무회계 교육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매우 미흡하였다.

수익자부담사업 결정의 불합리성과 내역의 비공개성

학부모가 수익자부담사업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학교장 등 일부 관계자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었다.

또한, 수익자부담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대부분 학교장 등이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수익자부담사업은 수학여행, 학교급식, 교복앨범 제작 등이며, '03년도 기준 2조 5,715억원 규모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결여

학교급식은 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에 대한 사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비리발생 소지가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교원·지역위원으로만 구성되어 급식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심의기능이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리한 실정이었다.

<표19>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운영방식 현황('05. 9월말 현재)

구분	계	직영(%)	위탁(%)	미실시(%)
계	1,214	585(48.2)	614(50.6)	15(1.2)
초등	559	554(99.1)	5 (0.9)	-
중등	363	16 (4.5)	341(93.9)	6(1.6)
고등	292	15 (5.3)	268(91.6)	9(3.1)

현장 인솔지도교사의 관련 경비 예산에 미반영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시 인솔교사들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일비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은 물론 도덕성 문제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수련활동시 여비지급 요령 >

○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 비	일 비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10,000원 또는 5,000원

개 선 방 안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추진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규격·가격, 제작업체 등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주관하여 구매하는 교육교구 공동구매시에는

금액과 수량이 크고 많으므로 조달청, 가격조사기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토록하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금액(3천만원) 규모와는 별도로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단위 별로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토록 하였다.

물품 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추진

구매 및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토록하고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구 분		개 선 내 용
공동 구매	계약시	○ 지역교육청 물품 공동구매계획 수립시 해당 학교 의견수렴
	검수시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공동 입화확인
단위학교 구매	계약시	○ 물품 구매담당자는 계약 전 해당 교사의 의견수렴
	검수시	○ 구매담당자(행정실 관계자)와 해당 교사가 공동 입화확인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 강화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한 회계·계약관리와 관련한 교육실시의 횟수·인원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시 물품구매 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등의 방안과 시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 공개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소요예산, 수행업체·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 사항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및 「시·도별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토록 하였다.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제고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의 운영업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간조건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실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교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심의기능을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한편,

납품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에 대한 심사 방안을 강구(전문기관 협조)토록 하는 등 「학교급식법시행령」 반영 및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인솔·지도교사의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

수익자부담사업(현장 학습 등) 추진시 소요되는 교사의 여비 등 필요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시도 교육청별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일부시도의 학생 수련 활동시 여비지급 요령 중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등을 지침에서 삭제토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20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개정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서 '97년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은 긴요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IMF 직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학부모회 등이 학교발전기금을 강제모금하거나 교원들에 대한 선물비, 회식비, 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 사용이 빈발하였다.

그림3 불법찬조금 조성·사용현황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행내용
· 학생단체 (임원)	· 학부모	· 교원복지비 :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 학교장	· 납품업체 등 일반인	· 학교운영비 : 행사지원, 비품구입, 청소비 등
		· 운동부후원 :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따라서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학교발전기금의 복잡성·불투명성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사용 절차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학부모 등이 기금 편입에 소극적이며,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발전기금의 모금·사용의 개략적인 사항만을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고 공개가 미흡하여 부적절한 자금이 발전기금으로 편입되는 등 학교발전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 서울 ○○초교는 건설업체의 인허가 협의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교실 증축 사업비 15억원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한 후 발주기관인 관할 교육청에서 집행('05.5월 청렴위 실태조사)

학부모에 대한 재정의존 관행 및 학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학부모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학교장의 예산 자율성 확대경향과 결합하여 경쟁적으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집행권이 학교에 있음에도 '학부모로부터의 모금을 전제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예산을 운영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 학교회계에 편성집행해야 하는 각종 행사비, 학급운영비, 청소용역비, 교사 간식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자율학습감독비 등을 찬조금으로 지원('03~'04 감사지적 사례)

학교운동부 운영은 교육활동의 일환임에도 예산지원에 소극적이고 학교운영위와 학교가 운동부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여 선수 학부모로부터의 코치 인건비 등 불법찬조금 모금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 순회코치(비인기종목, 교육청고용)는 92~158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나, 일반코치(축구등 인기종목, 학교고용)는 학부모의 지원이 용이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에서 인건비 미지원

금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의 팽배

교원은 각종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 보충 수단으로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부패행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불법찬조금 관련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처벌의 미약

교장(감)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근무평정이 2년에 불과하여 책임성 제고가 곤란하고, 교장의 중임심사도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장이 재임용 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교원의 관리직 진출에 대한 인사관리상 한계가 있었으며, 불법찬조금 적발시 각출금 반환, 관련 교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 온정적 처분으로 교육현장의 자정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금품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회의 강제적인 모금 및 기금의 회계 미편입 행위 등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 선 방 안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비와 구별 되도록 사용·용도 조정·구체화, 모금 및 사용 절차 단순화,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등 복잡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에 반영하고,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다.

정부예산 지원확대 및 내실화 추진

불법찬조금 모금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생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운동부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 학교운영비의 연차별 확대방안의 강구와 예산편성 없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명시토록 하고 예산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을 마련

운동부의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의 관리·집행 장치를 마련하고, 훈련비·출전비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일반코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급하여 신분 및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금품·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및 윤리교육 강화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심사에 반영하고,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제한을 위해 제한사유를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여 불법찬조금 모금·수수에 관련된 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강화하였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감경 제한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불법찬조금 관련 학교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제외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운영비·연구비(교당 8백만~2천만원)를 지원하고, 유공 교원에 대하여 1.25점 범위내에서 공통가산점 부여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 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3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일부 개정 완료 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 관련법령은 국회계류중이고 불법찬조금에 관여한 교장중임 제한은 검토중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효과성 담조를 위해 노력할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박사학위는 각 학문분야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고 공정한 학위과정 운영은 국가 및 전체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치·한의학과 등 박사학위 부정수여, 논문대필조작 문제 등으로 고급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학문 활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고조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술연구에 대한 불신은 대학교육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박사학위 과정의 비리소지를 제거하고 학문활동 및 박사학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원의 학문연구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허위출석 기재 및 과제대행이 공공연하게 발생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학점(3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에 통상 3일 내지 최소한 2일을 출석하여야 하나 직장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워 대리출석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 허위로 출석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20>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 등록실태 표본조사 결과(13개대학)			
구 분	등록 총원(명)	직장인 수(명)	직장인 비율(%)
○○○ 등 5개 국립대	4,173	3,017	72
○○○ 등 8개 사립대	5,590	3,486	62
계(13개대)	9,763	6,503	67

※ 의학분야는 직장인이 87% 등록

학위과정 이수 시 제출하는 각종 과제를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상의 과제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과제대행을 하고 있었다.

논문대필, 유사논문 제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학위논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친분 있는 교수조교를 통한 논문대필 알선, 대학연구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교수가 논문작성 편의제공, 인터넷상의 논문대필업체를 이용한 논문대필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특히, 의과대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논문대필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술지에 기 발표된 동일 논문 또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었다.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의 관행화

의과대학의 경우 개업의가 박사학위 이수과정에서 출결관리, 실험대행 뿐만 아니라 논문심사 등 학위수여의 총체적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일반대학에서도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이외에 거마비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논문심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직장인 등 학생의 학업여건을 감안하여 학위과정(course work)을 부분제 및 전일제로 구분 운영하되 등록대상 구분은 학생의 구체적인 학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후 결정토록 하였으며, 부분제와 전일제 과정이 학기당 이수학점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였다

※ 전일제·부분제 운영 외국사례 (예시)

- 영국(University of Plymouth)의 박사학위 최소연한
: 전일제(full-time) 최소 24개월, 부분제(part-time) 최소 36개월
- 미국(Delaware University)의 학점등록 구분
: 전일제(full-time)는 9학점이상 등록, 부분제(part-time)는 9학점 미만 등록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박사학위 논문 심사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학위논문심사기준을 학칙에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논문 표절, 논문대필, 실험대행 등에 대해서는 정의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의 구축

박사학위 논문표절 방지를 위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및 학위논문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DB시스템 구축하여 연도, 분야, 제목,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색기능을 포함하고, 특히, 관련분야 및 제목 등이 유사한 논문간 비교분석이 용이토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박사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의 표절대필, 실험대행 등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연구 부정행위 접수창구를 개설 하고, 박사학위논문 등 관련 제보사항에 대한 객관적·중립적인 사실 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기구(가칭 : 연구 진실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특히, 부정행위를 제보한 내부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보내용 보안유지와 신분상·학업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정행위 제보활성화를 위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부정행위접수 및 제보자 보호내용을 홍보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자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토록 하였다.

학위논문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에 심사기준, 부정행위시 내부제보 및 처리시스템 안내, 논문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대학원 정규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하고,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직장내 교육 등을 통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박사학위과정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박사학위수여 부정·비리에 관련된 대학은 재정지원평가시 감점 및 대학원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으로 제재토록 하였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는 반드시 취소토록 하고 해당 학생은 일정기간 학위수여를 제한하며 박사학위 부정수여 관련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일정기간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3월 6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고등교육시행령 개정 및 대학학칙 등에 대한 개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각 시·도 대학 등의 실제적용 여부를 이행점검을 통해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8

초·중등 교원인사 관련 비리소지 제거 제도개선

(2006.4.26,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추진배경

교육은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청탁 및 편법인사 등 부패사례 빈발

교육청 간부가 교장교감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인사관련 청탁 및 부패사례 빈발하였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순위를 앞당기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하거나 규정에 정한 배수 범위 밖 또는 직렬을 위반하여 승진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승진 등 편법인사가 발생하였다.

- ▶ ○○○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3명의 교감으로부터 교장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04년 ○○○교육청 징계자료)
- ▶ ○○○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장학사와 교감으로부터 근평 및 보직인사 청탁 대가로 각각 700만원, 200만원 수수('04년 ○○○교육청 징계자료)
- ▶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은 ○○○ 교감으로부터 교장 승진시 임지배정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 수수('01년 ○○○교육청 징계자료)
- ▶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이 21회에 걸쳐 초등학교 교장·감 17명으로부터 인사청탁(승진, 전보 등)과 함께 5,580만원 수수('03년 ○○○교육청 감사자료)

인사심의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결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교육청 간부와 전·현직교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의 비율이 낮아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전보인사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전보인사에 대한 불안감 및 인사청탁 유혹으로 작용함으로써 전보인사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였다

부적합한 교장임용 및 위법시 시정조치 미흡

교장 중임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교장 재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품공여 등 위법한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조치 관련 규정이 없었다.

- ▶ '05. 3. 교장중임대상자 188명 전원이 중임되었으며, 최근 3년간 중임 탈락 사례는 단 1건에 불과('05년 ○○○의원 국정감사자료)
- ▶ ○○○교육청은 △△초 교장이 '01년 교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교원정책과장에게 300만원을 공여하여 '04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05년 교장 재임용('04년 ○○○교육청 징계자료)

개 선 방 안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7~9인 중 2~3인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수를 1/2이상 점진적 확대하고,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사항 중 승진·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 등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규정토록 하고 인사위원회에 승진 및 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요구 기능부여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교육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교장 중임심사를 강화하여 현재 교육부훈령(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으로 규정된 교장중임심사 법적근거 등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토록 하는 등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빙교장 평가 및 임용규정을 강화하여 초빙교장에 대해 2년마다 평가하여 재임용시 반영토록 하고 평가요소에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교육기자재 계약의 투명성 등 개인의 청렴성 및 학교 경영의 투명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기준의 객관화

교사 전보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교장·교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장학지도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인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근무성적평정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여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본인통보, 이의신청 절차 마련방안을 검토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교육장으로 하는 등 중·고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장기 검토과제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교사직과 관리직을 구분, 관리직의 경우는 교사와 다른 양성과정을 통한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교사직과 학교관리직의 양성과정 이원화(二元化)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교장 공모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강구하고 결원 발생지역 교육청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장공모제를 확대시행 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6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개정 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1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2004.9.10,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권고)

추진배경

건설부패는 인·허가 단계부터 건설공사,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발주자와 감리자간 유착에 따른 특정 감리업체 밀어주기, 불법·부당한 설계변경 묵인 등이 감리과정에서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감리자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청의 책임의식 결여,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감리자 선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감리자가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실 및 부패 방지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감리제도가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감리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감리원의 책임 및 권한의 불명확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은 감리용역 뿐만 아니라 설계 등 모든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문서로서 감리의 특성상 적용이 불가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발주자가 지속적으로 감리업무를 지도·감독·관여할 수밖에 없고, 감리자에 대한 책임여부가 전적으로 발주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독립적인 감리기능 수행이 어려운 구조였다.

- 발주청이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시켜주거나, 감리원의 공사중지나 시정명령 등을 철회 또는 완회토록 하는 등 부당 압력행사
- 발주청이 감리원 및 감리회사에 부과해야 할 부실벌점을 유착하여 미부과

부실벌점 판단기준의 불명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공백규정이 많아 발주청에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고, 부실벌점부과 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로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가 유착하여 부실벌점을 임의로 경감하는 등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다.

- 발주청이 감리원 및 감리회사에 부과해야 할 부실벌점을 유착하여 미부과

- ○○시는 2003. 2. 27. ○○시설공사와 관련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따라 감리단장 및 감리원에게 부실벌점 각 1점을 부과하였으나, 감리회사에 대하여는 경고만을 주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부실벌점이 부과된 후에도 위 회사는 2003.3.6. “○○수해복구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금액 254백만원)과 2004.1.5. “○○○수해복구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금액 : 481백만원)을 위 기관으로 부터 수주하는 등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성 미흡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의 불투명

건교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감리전문회사의 실적관리, 감리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실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주청에서 용역입찰시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에 대한 PQ평가기준을 특정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특정기술(경력)을 발주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 ○○시에서 시행한 “○○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2003. 9. 25.)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건교부,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중 교량(스틸박스거더교, 연장 100m, 폭 25m 이상)이 포함된 공사의 감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의 객관성·투명성 결여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예시형태로 되어 있어 발주청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평가배점, 감리실적, 감리원 경력 등)을 용역발주시마다 임의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참여감리원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평가기준의 경우, 동일한 도로공사 감리실적이라도 발주기관에 따라 경력을 차등 인정함으로써 발주청 퇴직자만이 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특히, 수행능력평가기준에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최대 1.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부조리 발생이 빈발하고, 전차용역(당해공사의 실시설계, 기본설계 등) 수행자에 대하여 5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설계한 회사만 가점을 받는 것으로 가격평가점수의 차이가 없는 현행 P.Q제도에서는 사실상 낙찰자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부여의 소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작업계획 및 기법(배점 5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입찰 전에 자기회사의 수행능력평가점수만 통보함으로써 발주청 공무원과 유착하여 입찰참가자 모두의 평가점수를 알게 된 회사가 가격입찰시 유리하도록 되어있어 부패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 ○○시가 '02. 7. (주)○○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한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감리실적 평가기준을 건교부기준(80억원 이상) 보다 낮게 책정(50억원 이상)하여 낙찰업체에 유리하게 적용
- ○○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전차용역(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자 0000이 P.Q평가시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여 10점(회사 5, 기술자 5)을 받아 낙찰되었으나, 6개월 후 질병을 사유로 교체

감리원의 윤리의식 미흡

현재 공공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 자격기준에 비리에 연루되어 파면된 공직자의 제재기준이 없어 이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부실공사 및 부조리를 예방하여야 하는 감리원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규정도 없는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마련하거나,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여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의 ‘부실벌점측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부실벌점 부과시 벌점부과의 공정성 및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회사가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또는 자체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과 감리회사의 양별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부실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감리자 선정과정의 투명화

현행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 개선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인한 발주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리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한 표준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준공시에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을 감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셋째, 감리협회는 발주청이 송부한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에 대한 분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마지막으로, 발주청은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감리회사 실적평가, 감리원 경력평가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명기하고 발주청의 임의조정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발주청에 따라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차별인정 금지, 상훈 가점, 전차용역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고, 작업계획 및 기법에 대한 평가 기준 객관화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는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공개토록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 향후 국가계약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현행 수행능력평가기준(P.Q)기준은 입찰참가 자격여부 만을 판단(Pass or Fail 방식)하고,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으로 개선

감리원의 윤리의식 강화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감리 참여를 제한하도록 건설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성격의 감리원 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9월10일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턴키(Turn-Key)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일반적인 공공공사와 달리 도급자가 공사의 재원조달, 설계시공,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이는 책임소재의 일원화, 민간의 설계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비용의 절감과 공기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에서 설계점수가 낙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업체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당로비가 성행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한 가격담합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턴키공사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격담합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문제점

설계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결여

기존의 심의위원 2,200명(전문가명부제)을 2만5천명(자격기준)으로 확대('02.7.8)하고 일정자격기준 이상인 자는 누구나 설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건설 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설계심의 과정에

서의 부당한 로비와 설계심의위원의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설계심의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연계·선호 등에 의한 편중된 심사 빈발
- 일부 도덕적 해이 인사들은 턴키 심의위원을 내세워 건설업체에 무리한 청탁요구 빈발

설계 심의방법의 불투명성

설계심의위원 선정은 심의 전날 제3자(감사실 등)입회하에 입찰참가업체의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결정한 후 개별통보하고 선정된 심의위원은 발주자의 사업목표·심사기준을 토대로 기본설계안을 심의하고 정해진 심사표에 점수를 기록하며 발주처는 개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점수(20점), 설계평가점수(45점), 입찰가격점수(35점)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심의위원에게 충분한 심의시간이 없어 발주자의 사업목표·심사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입찰업체에게도 심의위원들에게 신기술 등 설계의 주안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심사기준 선정이 잘못되었더라도 현행제도 하에서는 심사기준에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심사기준과 다른 개인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될 때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은 심사표에 점수를 기록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므로 일부 심의위원이 불공정한 점수를 줄 경우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심의결과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낙찰자 선정방식의 불명확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사수행능력(20점), 설계평가(45점), 입찰가격(35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턴키공사 입찰업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설계비(공사비의 2~3%)를 투입하고 탈락 시 그 설계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 건설업체에 한정되고 있고, 낙찰자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은 공사예산금액 보다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공사수행능력점수는 공동도급으로 만점을 획득하므로 결과적으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찰자는 비중이 큰 설계평가(45점)에 주력하고, 입찰업체간 담합으로 수주업체를 제외한 들러리업체들은 고의적으로 형편없는 설계안을 제출하여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사례발표 : ○○시 지하철 턴키공사 2개 공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 2개사에 대하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02. 7. 1)

공사비 실행내역서 비공개의 문제점

현재 공사비 원가는 건설회사 담당책임자 외에는 알 수 없어 공사비에 대한 발주자나 일반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발주자는 공사비 실행내역을 알 수 없어 공사 투입자재와 인력을 파악할 수 없고 예산수립 시 정확한 금액책정이 어려우며, 공사수주 업체는 타 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업체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재하청을 주어 원도급자는 폭리를 취하는 반면 하도급자는 저가의 부실시공을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현재 발주청에 위임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를 상설설계심의 기구(중앙단위)를 설치하여 집중심의토록 함으로써 설계심의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심사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그 임기 중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모든 심의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및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며, 심의위원의 심사수당을 현실화하고 예우를 상향조정토록 하였다.

설계적격 심의방법 개선

설계심의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설계심의 위원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도서를 사전에 배포함으로써 설계심의를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둘째,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입찰안내서에 발주자의 사업목표, 요구조건 및 심사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심사기준 작성시 심의위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셋째, 심의방법 개선을 위해 토론제(Discussion)를 도입하여 분야별 평가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하되, 입찰자별 점수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최고·최하 점수 평점자는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평가자료를 열람·개방하도록 하였다.

넷째, 참여업체, 발주청 등이 선정된 심의위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참여업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선 추진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Pass-Fail)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입찰업체간 가격담합 소지를 해소하고 부당한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며 가격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설계심사와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를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코자 하였다. 이 평가방식은 먼저 설계심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업체를 선정한 후,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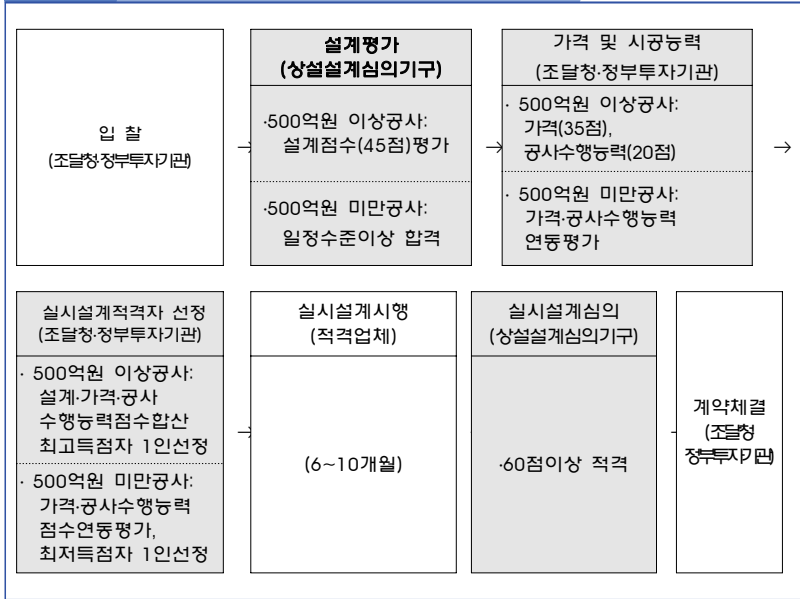
<평가방식(예시)>

입찰가격을 공사수행능력점수로 나누어 최저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frac{\text{입찰가격점수}}{\text{공사수행능력백분율}} = \text{환산가격(최저환산가격} \rightarrow \text{낙찰자)}$$

턴키공사에 있어서 설계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계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00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500억원이상 공사 중에서도 공사의 특성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림4 턴키공사 입찰제도의 업무절차 개선(안)



공사비 실행내역서 공개

공사비의 기성금 지급이나 준공신청시 공사비 실행내역서(원도급자는 하도급내역까지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를 통해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비에 대한 발주자 및 일반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안을 2002년 12월 6일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는 감사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적되고, 국민의 부패채감지수가 높은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서 일시적인 적발이나 처벌만으로는 부패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제점

용역부실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의 발생

조달청 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설공사의 부정적 요인 중 설계검토 미흡에 따른 설계부적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용역감독공무원이 짧은 기간내 수많은 설계도서 검수함으로써 인해 잦은 설계변경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표21>

 2002년 이후 준공된 공사 및 시공 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단위: 건)

집계 기관명	공사 건수	공사1건당 설계변경차수	설계변경 총차수	증감금액	공사1건당 증감금액	증감율
○○○부	622	3.399	2,114	3,608,668	5,802	14.82%
○○○도	490	2.208	1,082	533,617	1,089	14.19%
○○○청	363	4.050	1,470	1,651,912	4,551	24.54%
○○○시	238	3.849	916	1,597,810	6,713	21.26%
○○○○공사	200	4.395	879	2,438,024	12,190	12.01%
○○○○공사	69	6.870	474	846,667	12,271	25.48%
○○○○공사	565	2.343	1,324	1,786,282	3,162	44.30%
합 계	2,547		8,259	12,462,980	4,893	17.80%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설계변경이 구체적 기준없이 상황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청탁이나 권력기관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발주부서 공무원의 경우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감사지적 등을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설계변경 보고절차의 불합리성

공사시공자는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감독관이 보고내용 불인정시는 보고가 불가능하고, 기획·설계단계 설계부실의 경우 공사주관부서 당사자의 압력으로 실정보고 접수조차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가 편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사부실 및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설계변경 협의단가 기준 및 심의절차의 미비

설계변경으로 물량변동 발생시 협의에 의해 단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기준 등이 없어 비리발생 가능성이 크고,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시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다.

- ○○○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계약금액 : 248억 원, 낙찰율 61.6%)를 시행하면서, 당초 연약지반처리공법(PDP공법)을 SCP공법으로 변경하면서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단가를 책임감리원이 제시한 80%보다 20%가 높은 100%를 적용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177억 원(최초 계약금액 대비 71%) 증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소극적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개대상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입찰계약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복잡한 공개절차로 설계변경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분쟁조정기능의 미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협의 결렬 시 계약상대자에게 법적보호장치 없이 분쟁기간중 수행을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분쟁조정 기구간 조정청구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분쟁조정기구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신청 대비 거부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조정보다는 중재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여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

개 선 방 안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및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에 규정된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공사의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감리시행지침”을 마련토록 하였다.

설계변경 평가기준 법제화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

자의적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이후 수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공사에 대한 구체적 설계변경 평가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계약관련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 하도록 하였다.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및 설계변경 심의 강화

협의단가 결정을 위한 구체적 협의기준을 마련토록 하였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을 50억원 이상(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도 포함토록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 공법변경으로 인해 공종별 단가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 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의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토록 하였다.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국가계약법상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정청구대상을 “국가계약법” 관련 모든 분쟁사항으로 규정토록 하고 조정청구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조정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2월 26일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하였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4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2004.1.28, 건설교통부 권고)

추진배경

하천골재채취는 지방자치단체(시·군)의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 또는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골재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으로 지방재정 손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감사원, 검찰 등의 많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일시적인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골재채취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하천골재 채취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천골재채취관련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사업시행 과정의 비리 빈발

하천골재채취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공무원이 대행업체 선정 또는 채취허가 과정에서 골재채취업체와 유착하여 금품수수, 향응 접대 등의 부패행위가 빈발하였고, 계속되는 적발·처벌에도 골재업체 간 담합과 고의유찰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우선허가 조항의 악용

민영허가방식으로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대하여 소규모 (량)의 골재채취허가를 한 뒤, ‘우선허가조항’을 악용하여 연접지역의 물량이 많은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등 비리가 빈발하였다.

※ **우선허가** : 허가신청인 중 허가신청구역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골재 수송능력, 투입 시설장비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및 환경보호대책능력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

관리·감시장치의 결여

민영허가방식으로 골재를 공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중기를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반출하고 있어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가 반출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채취료의 손실로 인한 재정 누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출증 제도의 미비로 골재반출허가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무단반출과 무자료 유통이 성행하고, 이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었다.

행정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골재채취허가대상자 선정공고 시 긴급공고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개시 등의 방법으로 일부업체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특정업체에만 상세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 사례가 있음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직영사업방식에서의 ‘담합행위’ 방지

입찰가 조작을 통한 담합행위와 고의유찰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대행계약 체결시 담합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통첩」을 제정하고, 「이행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담합에 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 향후 골재채취 입찰에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제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민영허가 방식의 운영개선 추진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시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하며, ‘우선허가’조항을 폐지하되, 우선허가 사유인 환경보호대책, 골재채취능력, 수송능력 등은 가격요인과 함께 경쟁요소에 포함시켜서 입찰을 실시토록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토록 하였다.

계중기 설치 의무화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제13조(허가부관 등)에 일정 규모(10만m³) 이상의 골재채취 사업장에는 계중기 설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골재물량의 불법·무단 반출을 방지토록 하였다.

표준반출증제도 확립

계중기에 의거 기록된 반출증을 감시초소 회수분(허가관청분), 대형업체 보관분, 매수자 보관분으로 구분·운영하는 표준반출증제도를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하였다.

골재관련 행정정보 공개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등재를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에 명문화하여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은 건설교통부 및 골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골재채취계획공고, 허가대상자 선정공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등 골재관련 행정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골재협회에 수록하도록 하여 모든 참여업체에게 균등한 기회제공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건설교통부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제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군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반영하였다.

향후에도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4.2.23, 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 권고)

추진배경

건축건설분야는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민원 중 부패에 가장 취약하고 국민의 부패인식도 또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개선속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표22>



국민의 건설·건축분야 부패인식도(%)

조사년월	2002.4	2002.12	2003.3	2003.9
부패인식도	67.5	66.5	71.6	72.6

또한,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에서도 건축관련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금품제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23>



청렴도 측정결과 / 금품제공율(%)

구분	소방검사	경찰법무	건축·건설	세무
2002.11	9.4	7.4	6.4	4.5

따라서 인·허가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불합리한 법규정비 등을 통한 투명한 민원처리시스템 마련이 요구되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건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및 과도한 재량권 행사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없는 기초의원과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일부는 로비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 선발 시 공개모집 없이 자체선정하거나 협회 등에 위촉을 의뢰함으로써 견제세력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위원회 심의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인해 급행료 관행을 유발하고 있었다.

<표24>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위원수	공무원	의회의원	민간 전문가		
				학계	건축사	연구소 등
〇〇시	16	7	1	7	1	-
〇〇시	15	6	1	4	3	1
〇〇시	18	5	2	6	3	2
〇〇시	14	5	1	6	2	-

건축 인·허가시 법적근거 없는 과도한 조건부과로 인해 금품제공이 발생하고, 관련법 규정이 불명확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부실 현장조사에 의한 건축허가로 공신력의 상실

건축허가 신청내용의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물설계 건축사가 대행토록하고 있어서 건축주에 종속된 건축사는 불법설계를

은폐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등을 통해 불법으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현장 확인 없이 허위조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조사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제3의 건축사제도’ 편법 운영 및 ‘소방감리제도’의 부실

시·군·구는 시공과 무관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사용승인관련 현장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축주가 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위법행위 묵인, 공무원 유착 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 건축사협회에 선정을 위임하는 등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제3의 건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소방시설 사용승인관련 현장 조사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가 대행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 미지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에 종속되어 부실시공 묵인, 건축주에 별도 수수료 요구 등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었다.

<표25>

소방 감리자 불법행위 적발·처벌 현황(○○시)			
구 분	2001	2002	2003.9월
합 계	3	7	28
영업취소		1	2
영업정지	3	6	26

※ ○○시 등록 소방감리업체 수(총 172개소) 대비 제재업체 비율이 16.3%에 달함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결여 및 위법사항의 관리 부실

불법 건축물 적발시 조치기준이 모호하여 지자체나 담당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단속 부조리를 유발하였고, 건축물 위반사항을 ‘위반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기재와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반감되었다.

개 선 방 안

건축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재량권 남용 방지

위원회 구성시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공무원 참여비율을 20%이하로 조정하며 위원선발 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위원회 회의결과, 부과조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건축위원회 행정소요일수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해 법적근거 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건축 관련 법령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불명확한 법규정은 하위법규에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허가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신뢰 제고

허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확인업무를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가 대행 또는 공무원이 직접수행토록 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선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사군구 단체장이 지정토록 명문화하고, 소방시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점검은 허가권자와 계약한 민간전문가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업무대행 건축사 및 소방감리자의 허위조사나 위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불법행위의 객관적 처리기준 마련 및 불법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불법 용도변경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기간, 고발시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처리기준을 마련토록하고, 불법 건축물 등 건축물 위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다른 인허가 업무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2월 23일 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건축법시행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6

부당 수익계약 제도개선

(2004.7.2,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권고)

추진배경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취득·비축·관리 등 국가 토지정책과 광역도시 계획, 국가산업단지, 신행정수도,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이 택지·공업단지 등 토지의 조성·매각으로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간분야와 다양한 업무 연관으로 인해 계약분부에 대한 제도개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부패유형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법령에 어긋나는 사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용역수의계약 집행기준」에서 학술용역은 집행기준과 계약절차를 모호하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건축감리용역 분야는 수의계약 기준을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하거나, 공사진행에 있어 하자책임 곤란, 작업혼잡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정 시행중인 「공사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서 타 기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립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임대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기업토지 및 건물관리 지침」을 무시하고 관리중인 부동산의 임대료를 저가로 산정하여 특정인과 계약함으로써 특혜 부여 의혹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표26>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	연도	합계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498	2,226,522	458	151,137	522	452,311	622	612,510	596	801,776	300	208,788
공 사		195	40,738	27	13,357	38	8,973	46	6,083	59	9,376	25	2,949
용 역		524	52,602	57	6,359	73	8,037	97	6,474	147	17,235	150	14,497
기업토지 매각		802	2,083,161	44	112,528	144	421,030	268	589,823	272	770,208	74	189,572
임 대		977	50,021	330	18,893	267	14,271	211	10,130	118	4,957	51	1,770

토지매각·매입과정에서 부당한 정보제공

토지 매각조건 완화 등 편의·정보제공 및 토지 매입 시 매입가격을 내부지침으로 정해진 기준가격대로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저가매각 또는 고가매입하거나 임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음에도 직위 해제 후 의원면직하여 부패방지법 제4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성과연봉을 지급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조하였다.

계약관계법령을 위반한 계약

용역내용과 관련이 없어 수의계약 근거가 될 수 없는 법령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차인의 불법전대 등 위반행위 여부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고가에 불법전대, 공사보유 토지의 임대 등 특정인이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공사소유 토지 등의 취득 및 임대

공사 직원이 공개 추첨 분양 절차를 편법 운영하여 공사소유 부동산을 독점 분양받아 전매하고 있고, '01~'03 공사 직원과 가족 23명은 투기 목적으로 총 17건 공사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개 선 방 안

법령에 어긋난 계약관련 사규 개정

토지공사가 임의로 제정한 수의계약관련 사규를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였고, 수의계약 전적 참여 대상 확대, 수의계약 계획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집행기준(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하였다.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조기 시행

우리위원회가 2003년도 제도개선 권고한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전적참여 확대, 긴급공사사유 등에 의한 허용범위 구체화, 특정공사에 대한 평가기준 법제화, 소액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 도입,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였다.

공사 직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00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공사 임직원(가족)과 공사와의 토지거래 일부제한과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전매를 금지하였으나 토지거래의 제한 외에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공사직원이 공사부동산을 추첨분양받거나 매각의 경우 감사실에 신고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부동산을 매입·임차 또는 매도·임대하는 경우 사전승인토록 하였고

신고 및 승인절차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규정을 마련토록 하였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임원이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 문제가 있을 시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유관기업 취업제한이나 경영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을 불식시키도록 임원의 부패행위 및 유관기관 취업여부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 책임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 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에서는 2004년 7월 2일 제도개선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에 권고하였고,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 한국토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보완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및 토지공사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반영하였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7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2004.2.23, 건설교통부 권고)

추진 배경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련 부조리는 외부감사에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전문브로커가 결탁,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부패 및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 지도단속 과정의 불법행위 묵인 등의 비리가 상존하여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부패 유발요인 제거, 사후통제 시스템 확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불필요한 시설 허가로 인한 불법행위 조장

농림수산업용 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소유하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도감독기관의 형식적인 사후관리로 인해 투기 목적의 불법 용도변경, 허가요건 상실 후 허가 비취소, 토지 분할을 통해 타인명으로 다수의 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다.

<표27>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적발현황							
연 도	면 적 (km ²)	용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건)					
		계	창고	형질변경	공장, 작업장	축사	기타
2003년	4,615	4,085	2,010	600	852	29	594
2002년	5,005	2,014	507	803	211	50	443

불법행위 통제를 위한 공조체제 부재

시·군·구에서 적발한 불법영업행위(탈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미통보, 한전의 용도의 과도한 전기시설 허용 및 자치단체의 단전요청에 대한 소극적 조치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가 미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행정의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불법행위 단속의지 미흡 및 단속결과에 대한 부당처리

시·군·구청장은 매분기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여야 하나 선거 등을 의식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업무 담당 자치단체의 인력구조상 청원경찰 또는 관할 지역 거주자가 단속함으로써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사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기관별로 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불법행위가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83조(이행강제금)에 해당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병과하여야 하나 미부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표28>



개발제한구역 관련 비위조치 현황(명)

구 분	계	부당 인허가	불법행위 부당처리	단속업무 소홀	기타
계	1,961	675	510	746	30
정계	126(6.4%)	71(10.5%)	37(7.2%)	17(2.2%)	1(3.3%)
주의준계 등	1,835(93.4%)	604(89.5%)	473(92.8%)	729(97.8%)	29(96.7%)

※ 전국 80개 시군구 조사결과(2001~2003.10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 결여

담당공무원의 ‘부당 인·허가’, ‘불법행위 부당처리’ 등 부조리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인해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공직자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구입,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임대수익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행위허가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허가신청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요건 상실시 허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불법행위 통제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관계기관간 상호 유기적 연계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지도단속 과정의 부조리 근절

재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원 특별감사, 검찰의 정기적 단속 등 제재수단을 강구토록 하고 주기적 인사이동을 통해 단속공무원의 부패고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지도단속 및 실명제 확행, 현장사진 첨부 의무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배제를 위해 처벌규정의 명확화와 재·계고 처분시 법규정 및 이행강제금 병과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였다.

위법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도입토록 하였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이행강제금 요율을 상향조정토록 하였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 제고

단속공무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징계기준을 부조리 유형별로 명확화,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그린벨트, 농지 등의 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여부 확인, 국세청에 세금 탈루여부를 확인하여 탈루행위시 환수토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2월 23일 건설교통부에 권고를 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8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2006.11.20, 건설교통부 권고)

추진배경

건설신기술 제도는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 도입된 제도로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가 빈발하고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계약 관련 공무원의 수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로 공사 수주 후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표29>

신기술 인증 건수 ('06.5월말 현재)							
분야	계	도로	토목	토질·기초	환경(상하수도등)	건축	조경
인증	486	98	103	68	103	102	12

<표30>

최근 3년간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대상건수	활용건수	적용공사건수	적용공사비(천원)
2003년	279	143(51%)	3,692	350,639,250
2004년	219	134(61%)	2,878	363,523,633
2005년	205	141(68%)	2,475	371,957,166

따라서 건설신기술 인증과정의 공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후 활용단계에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인증심사위원 구성 관련 유착소지 및 전문성 결여

인증평가 심사위원명단을 일주일 전에 공개함으로써 사전로비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심사위원으로 선발하기 前 해당자의 관련업체 고문·임원 취임 현황 및 실험·연구용역기관 근무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상태였다.

인력Pool에서 심사위원 3배수 무작위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므로 지침에 위반하여 특정인을 선정 또는 제외 가능하며 업무지침상 전문분야가 없거나 해당 심사위원이 부족할 경우 임의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 소지가 있었다. 또한 신원조회절차 등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부패행위 등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통제가 불가능하며 신기술 지식보유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건교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직원을 인력풀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다.

- A씨는 신기술인증 신청업체 대표 B씨에게 교량건설 신기술을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5천만원 수수 구속(04. 8월)
- 평가업무지침상 심사위원 구성비율이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6:2:2임에도 (10%내 조정 가능) 규정위반 사례 발생(06.8월 실태조사)
- 외부전문가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아 전체 위원 30%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거나 전문가가 인력풀에 있음에도 외부전문가 선정(06.8월 실태조사)

인증심사 과정의 불공정 소지

인증심사 처리기한은 120일이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품질검사 기간 등은 제외되어 통상 인증에 1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 신청수수료(총 351만원) 이외에 수십배의 실험비용과 시험시공비용 등을 인증신청자가 부담하고 있어 심사통과를 위해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연구소, 전문검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평가원 직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실사를 비롯한 심사 **소**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평가원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통제장치가 미흡하며 공직자행동강령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 시험시공 실적이 인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지자체의 소규모 교량, 도로공사에 시험시공 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항응 등 제공(06.5월 실태조사)

신기술 활용관리 미흡

시공업체가 공사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시공단계에서 부당하게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였고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는 신기술에 대해 수요자 정보제공 미흡으로 부실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총사업비 2조5천억원) 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의 실제 반영률이 63.4%에 그침(06.3월, 감사원 감사)

건설신기술 계약관련 불공정 소지

건설신기술 보유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비용, 효과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공사수주 가능성이 있으며, 제한경쟁(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1항) 입찰시에도 입찰자격조건을 특정 신기술 보유자 및 동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하여 형평성 시비가 야기되었고 신기술이 일반공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 일반경쟁에 의해 선발된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보유자가 일방적으로 기술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특혜시비 등 분쟁이 야기되었다.

- A업체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 취득 후 해당 기술로는 수주를 할 수 없는 관급공사 37억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부당이익 및 국고손실 야기(06.5월 실태조사)

개 선 방 안

심사위원회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인력풀 구축시 개인 동의를 전제로 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절차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체에 위촉근무 또는 용역수행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신기술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시 관련분야 자격증, 학위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하고 인증심사에 임하는 위원 개인에 대한 성실도, 전문지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적격자를 퇴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기술 보유자(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들의 경우 동종 기술 심사시 심의위원 위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였다.

심사위원 활동의 공정성 확보 및 심사위원 선정과정 개선

심사위원 대상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의 사전공개를 금지하고,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를 도입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심의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에 포함시켜 기존 심의위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관리하며 인력풀로부터 위원후보 전산 추출시 순번을 부여하여 상위 순번대로 위촉하며 후순위자 위촉시 사유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인증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의지연시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제시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신청자에게 불허 결정 통지시 사유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주심위원이 결정문을 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기술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이나 관급 공사 발주처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강화하고 결과를 심의위원

회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관계기관 의견과 명백히 상반되었을 시 해당 이유를 평가서에 정확히 명시토록 의무화하였다.

서류 접수심사와민원처리 등 전 과정에서 평가원 담당자의 영향력 행사 및 규정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파·시정요구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평가원 심사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으로 윤리의식을 강화하였다.

신기술 관련 사후관리 강화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제외될 경우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건교부 주관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실태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신기술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평가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D/B 구축,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세부 활용실적과 평가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부실신기술의 자동퇴출을 유도하였다.

계약상 특혜소지 제거

건설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사유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주청(지자체 포함)별로 설치된 ‘신기술 설계자문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구를 통해 신기술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 등 계약방법(재무관 참여)을 심의토록 하였다. 그리고 신기술사용과 관련한 ‘기술협약세부체결기준’을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마련하여 건교부 보고 후 시행하고, 건교부는 기술사용료와 관련하여 과도한 사용료 지불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기술 제공을 거부한 공법에 대해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타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을 배제하고,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등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불허 또는 연장기간을 축소하고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및 내용 등을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6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9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06.12.29, 건설교통부 권고)

추진 배경

국민의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욕구, 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정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극적 관리로 일관하여 왔고, 사업주체간 갈등과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비용이 일반조합원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 등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실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주체간 금품수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 향후 2010년 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는 재개발 812개 지구, 재건축 692개 지구로 예상('06.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표31>

재개발·재건축 비교표		
구 분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필요 없음	조합설립 인가 전
시공사 선정시기	조합 설립인가 이후('06.8월시행)	사업 시행인가 이후
미동일자 처리	조합에 토지수용권 부여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 제기
예산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 지원	없음

문 제 점

주민의 초기자금 소요가중으로 인한 각종 업체의 사전 개입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정비계획 수립 전에 주민제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제안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업체 유착 및 로비가 빈발하는 실정이었다.

- 정비가본계획도 없는 안양시 재개발현장에서 정비업체가 10평미만 토지소유자에게 23평 분량을 약속하며 동의서 징구('06.8월, 실태조사)

시공사, 정비업자, 철거업체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사업기간 장기화(통상 10년 내외)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조합운영 필수경비 등 소요자금의 자체조달이 곤란하고, 정비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나, 적립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다.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선점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단계부터 경쟁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개인별 각출

보다 시공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가계약, 금전소비대차)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사업동의서 확보를 위해 외주요원(O/S)을 고용하여 동의자에 1매당 15~20여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구 재개발 현장에서 정비업체가 준비위원장에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독려('06.3월, 실태조사)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 선정기준·절차 미비로 부패행위 빈발

건설업자 선정방식의 잦은 변경 및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특혜 및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참여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로 편법공고, 입찰방식 수시변경, 특정업체에 유리한 참여기준 제시,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표준도급계약서 기피, 불공정한 계약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비전문성 및 시공사 선정 개입

조합을 지원하는 정비업체의 자본력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인 자문 보다는 시공사 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업이권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가 소송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리베이트를 조합 등에 제공('06.4월, 청렴위 실태조사)

추진위·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 조합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 통제기구가 미비하고,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면결의 및 주민동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가 빈발하고 있었다.

조합임원은 인터넷 등에 관련서류를 공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공람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처벌규정 미비로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정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미흡

비위 관련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분쟁,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있으며, 조합임원, 추진위원, 정비업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고, 재개발 공동시행자(민간 건설업자) 사전 선정시 처벌조항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추진위, 주민대표회의는 업체선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품수수 행위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고 있었다.

분쟁, 사업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가중

각종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 상호간 법정분쟁, 비상대책위 설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종 비위행위 발생으로 인한 비용과 피해가 일반조합원에 그대로 전가되고, 결국에는 일반 분양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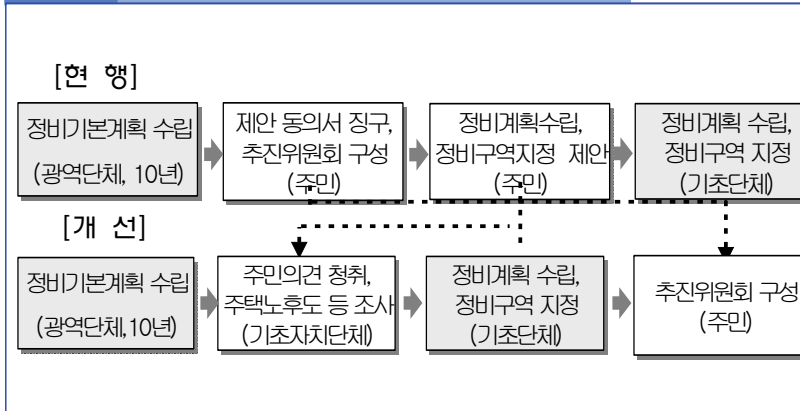
- ○○시 전체 19개 재건축 사업장 중 18개에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음('06.2월, 청렴위 실태조사)
- ○○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조합임원 등이 설계변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에 8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킴(05.4.26, 문화일보)

개 선 방 안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자치단체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 및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림 5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 승인시기 비교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확행하고 기금의 사용용도 구체화,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수립(인구 50만미만 도시)시 소요비용 지원, 주민 부담의 사업추진 소요 필수자금의 용가지원 확대 등 주민지원 방식을 세분화하였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의 개발·보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다

참여업체의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건설회사(시공사·공동시행자) 선정관련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사업) 관련 시공사 추천·선정시 복수추천 및 경쟁계약 토록 하였고 감정평가업체를 주민총회에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감독관청에 선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기타 업체 선정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하여 업체선정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사업능력 강화

정비업체의 사업등록기준을 강화하였고 도정법 위반 또는 뇌물죄 등으

로 형사 처벌시 등록제한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재참여를 제한하였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관련 지원업무를 추진위(조합)와 계약된 정비 업체만 담당토록 하여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조합임원이 도정법 위반 또는 뇌물죄 등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재참여를 장기간 배제토록 하고 추진위, 주민대표회의의 위원도 결격사유를 조합과 동일하게 규정토록 하였으며 조합임원이 직무관련 뇌물, 횡령,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표준정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조합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임원 등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화된 공공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참여자에 대한 전문 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 등 도덕성 검비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각종 참여업체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적용토록 하였으며 주민동의서 매수행위 및 정보공개 의무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29일 제도개선안을 건설교통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법제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게 된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10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2003.10.30,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농림부 권고)

추진 배경

건설공사의 각 단계 중 입찰·계약단계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는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 혹은 특정업체에게 계약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부패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분야이다.

수의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상대방이 될 자를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의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경우, 기술력, 경영상태 등 업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업체가 써내는 가격에 의하여 계약자를 결정하는 경쟁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발주청이 선의를 가지고 조달사무를 처리하고 개인적 혹은 발주기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한 것이며, 발주청이 사심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구한다면 특정업체와 유착을 통하여 높은 가격에 부실한 시설을 받는 부적절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문 제 점

계약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발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거나 한 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계약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부당한 긴급복구공사 명목으로 수의계약 시행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거나, 태풍피해가 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계약하는 긴급하지 않은 복구공사도 수해관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일관성 및 투명성 결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기관별로 제정하여 운영하거나, 기준이 없는 기관도 있어 제도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었다.

소액수의계약조항 악용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인 경우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대규모공사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었다.

※ ‘소액수의계약’제도 개선현황

일부 지자체에서 소액수의계약 관련업무의 투명성 향을 위해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음(관련법규에는 미반영)

- 서울시 : 500만원 이상 공사, 300만원 이상 구매·용역 전자공개
- 경기도, 도로공사 : 3천만원 이상 공사 전자공개
- 철도청 : 2천만원 이상 공사 전자공개

개 선 방 안

수의계약 견적참여 확대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견적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배제토록 하였다.

단, 업체선정기준에 있어 수의계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열거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특정기술에 의한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등)는 제외토록 하였다.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긴급공사(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명시토록 하였다.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사(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회계예규로 규정하게 하였다.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고기간의 단축, 참여업체의 지역제한, 입찰수수료경감, 낙찰하한을 보장 등 보완장치를 포함토록 하여 소액수의계약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수의계약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평가서’ 등의 기준과 수의계약 사유 평가 결과, 계약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되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 등 불가피하게 공개가 곤란한 내용은 제외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부에 권고 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고,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개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11

공사·계약 분야 제도개선방안

(2005.3.9,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권고)

추진 배경

사회간접시설의 공급, 주택건설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건설분야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금품수수 관행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부문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연간 100조원이 넘는 시장규모와 180여만명이 종사하는 건설, 건축분야는 ‘수주사업’이라는 산업기술적 특성과 과도한 법령 및 규제의 양산으로 부패가 유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건설분야의 부패방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표32>



건설공사규모

(단위 : 10억원, %)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
	계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137,422 (100)	51,810 (38)	12,041 (9)	22,732 (17)	17,037 (12)	79,958 (58)	5,654 (4)

※ 자료출처 : 2003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통계청

<표33>

연도별 건설업 등록업체 수의 변화 추이					
구 분	1989	1992	1996	2000	2004
일 반	930	1,700	3,543	7,978	12,988
전 문	4,623	10,210	18,554	27,364	32,980
계	5,553	11,910	22,097	35,342	45,968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불법 하도급 만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종분류체계가 불합리하고 건설공사 하도급제도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불명확한 법률 등으로 인해 불법하도급·재하도급이 만연되어 있고 하도급 계약시 이중 계약서 작성 등으로 탈세 또는 불법자금을 조성하거나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계약하거나 발주청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를 받더라도 하도급자에게는 어음 결제를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건설산업정보망 미활용으로 인한 상시적 부패감시 미흡

건설산업정보망은 건설경기 및 산업동향 분석 등 종합적 건설정보활용을 위해 04년까지 DB구축을 완료하였으나 부적격업체 정보수집 및 적발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부적격업체 적발에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건설공사 회계처리

건설회계는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시공방식과 공급자재를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원자재·노무비 등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부조작이 용이하고 이중계약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가 용이하며, 공사현장별 비용을 본사에서 합산 처리하기 때문에 비자금조성이 용이하였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흡

입찰낙찰계약체결 관련 뇌물 제공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기준이 미비하고 제재기간 결정이 발주자의 재량이 커 형량 최소화를 위한 업체와 발주자간의 새로운 부패를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경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가 전국 모든 공공기관 공사에 적용됨으로써 기업도산, 해외수주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 ○○도에서 '02~'04년까지 수주청탁 또는 공사편의 제공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중 해임이상 징계받은 공무원은 11명으로 관련업체 56개 업체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1개 업체에 불과('04년 실태조사)

<표34>

 뇌물제공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현황(2003~2004년)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기관
뇌물제공관련 부정당업체 수	18	1	14	3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사유가 발생하여도 공사발주가 없는 동절기에 조치하는 등 제재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뇌물 제공으로 적발되더라도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제재를 개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었다.

부실벌점제도 산정방법의 부적정 및 운영소홀

부실벌점 측정시 측정 후 점검횟수로 나누어 산정토록하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부실벌점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인 협회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점수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처리절차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벌점 부과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시 최초 부실벌점구과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시 재차 검토하도록 되어있어 심사의 객관성·중립성이 결여되었다.

발주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한 후 이를 관리기관인 협회에 통보해야 하나 이를 누락시키거나 발주청은 건교부 등의 부실벌점부과요청을 받고도 미부과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또한 관리기관인 관리협회의 부실벌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발주청에서 통보한 부실벌점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다.

- ○○시 ○○구청 및 ○○시장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 진단에서 (주)○○건설 및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개발 및 ○○건설(주)에 대하여 부실발점 각 1점을 부과하고 ○○협회, ○○기술인협회만 통보하였으나, 상기 부실발점의 관리기관이 ○○협회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계약관련 정보의 미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집행상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상대방·계약금액 등 계약체결 관련 사항, 설계변경 및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등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발주기관이 공사관리의 용이성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턴키공사를 선호하고 대형건설업체도 최저가낙찰제도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주기관에 턴키공사 발주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순한 공사도 입찰방식(턴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결정되고 있으며 대형건설업체들은 입찰이전에 심사기준, 입찰방법 검토 및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주기관과 설계심의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업체간 담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 ○○교통공단 ○○본부장은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턴키·대안입찰)와 관련,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영으로부터 3,000만원, ○○건설로부터 500만원 등 수뢰 혐의 구속 (2004.11)

불합리한 절차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민자사업 부실화

민자사업 제안시 엄격한 사전 타당성 검증없이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민자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평가방법

이 불합리하여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 사업은 공사비의 과다계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공사비 단가에 대한 검증없이 설계가에 가깝게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확정하고 있어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의 불합리성

응집력이 강한 지역사회구조 특성과 계약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제한하는 등 왜곡된 입찰계약 형태가 발생하고 수의계약(69%)이 경쟁입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투명성 확보장치는 미흡하며 기획검토 등 부족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특수관계인을 통한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과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 지방의회 의원 중 18% 정도가 건설업종사자

개 선 방 안

공공공사 하도급 투명성 제고

기능 및 전문성에 따라 건설업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토록 하였으며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다. 또한 시공능력 없이 공사 수주만 목적으로 하는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수급 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토록 하였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절차가 투명한 업체를 ‘클린업체’로 선정, 압찰(적격심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주자의 하도급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부패감시체계 구축

건설산업 DB에 공사실적, 기술자 경력, 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 부실별 점 등) 허위신고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패통제 관련 정보를 구축토록 하였다.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퇴출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솔선수범하여 전문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업체에게 인센티브(신인도 가점)를 부여하는 등 현행 회사단위로 일괄집계 하는 건설공사의 회계방식을 현장별 독립회계방식(현장별로 독립하여 회계감사 실시)으로 개편토록 하였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뇌물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

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부정당업자의 제대경감기준을 공사규모별, 뇌물제공 액수별, 계약이행 성실도, 업체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부실벌점 산정기준 중 재량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기준(“주요구조부” 등) 및 판단이 모호한 기준(“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등)은 구체화토록 하였다.

또한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부실벌점부과 통계자료 이외에 발주청의 부실벌점 통보자료현황, 경감기준에 따른 협회 경감현황 등을 반기별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화하도록 하고,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하였다.

부실벌점 관리에 있어 발주청의 부실벌점 부과기한, 벌점부과 후 벌점관리관에 대한 통보기한을 법제화하고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관리절차(부실벌점 관리대장 운용 등)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발주기관에서 부실벌점 부과현황에 대한 수시 확인이 가능토록 부실벌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공개토록 하였다.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5조의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턴키계약 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 각 발주관서에 위임되어 있는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내실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중립적 기관에서 별도의 수요량 추정,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부실검증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정부가 수요추정을 책임져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하여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사업제안 평가시 2단계 평가방법 도입 등 사업자선정평가체계를 개편하고 단독응찰사업에 대하여 유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증 강화를 위해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일정금액(공사 30억원, 물품·용역 10억원)이상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심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단체장, 지방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등도 영리목적 계약체결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감독을 위한 주민참여제를 법제화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계약상대자와의 부당한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에 적용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9일 제도개선안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고, 관련기관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하였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공사·계약 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2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2.20, 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 권고)

추진 배경

태풍, 호우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구호하고, 파손된 공공시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 과거 10년간 연평균 재해복구비는 2조 7,978억원이었으며, 최근에는 증가 추세에 있음

'02년	'03년	'06년
9조 486억원	6조 7,401억원	3조 5,125억원

그러나, 재해복구 과정에서 피해내역 허위신고, 자의적 분할계약, 복구비의 목적 외 사용 등 복구비 지원 관련 비리가 빈발하여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야기, 부실시공으로 인한 반복재해 발생 등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복구예산 낭비 방지 등 복구비 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피해규모 허위·과다 신고의 빈번한 발생

양식업 등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해로 인한 피해로 허위 보고하여 부당한 국고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재해복구 사업에 수의계약 제도의 편법 운용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재해복구 공사 계약을 함에 있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여도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인 응급복구공사의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여야 하나, 먼저 시공하고 사후에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발생하였다.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규정을 악용하여 예산 낭비 초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분할이 금지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를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후 자의적으로 과다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 금액을 증액 시켜 주거나, 실제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 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등 국고낭비 사례가 발생하였다.

재해복구비의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용 발생

재해복구비를 당초 피해시설 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해가 발생 하지도 않은 지역 등에 부당하게 사용, 하자보수 대상 시설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 선 방 안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피해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피해조사시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피해내역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양식업 등에 대하여 압출하 신고 시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내재해형 표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한 표준설치 규격 및 지원 단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최초 피해 조사 시부터 주민 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시설별 피해규모를 일정 행정단위별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복구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등 복구공사 계획 및 공사 감독에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수의계약 대상 중 수기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해복구 공사의 범위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공사에 한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일 구조물 공사 등 분할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시공하는 경우, 자의적인 분할계약 및 시공방지를 위하여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편법적인 공사금액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중앙합동점검반에 최초 피해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요원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토록 하고, 점검 시 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분할, 설계변경 등의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도록 하였다.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기관에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를 소방방재청, 지자체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7년 2월 20일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등에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하여 사안별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07년 6월 1일(일부 '07.12.31.)까지 개선 완료 및 예정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2004.3.16, 문화관광부 권고)

추진배경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지 지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빈발하고 관광지 개발지 장기방치, 국고지원 누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광(단)지 지정·개발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단체장·사업자·지역업체 간의 비리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관광지 지정·개발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고지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35>



관광단지 현황

(2003, 12월 현재)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자연공원
개소	212	9	22	73 [국립(20), 도립(22), 군립(31)]

문 제 점

관광(단)지 지정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먼저 관광지 지정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시·군의 관광지 지정신청에 대한 합법성 검토가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종 ‘관광지’를 단체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관광지 지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개발지표 및 각종 사업성 평가지수를 부풀리기 식으로 산정하고 용역낙찰 후 사례비조의 뇌물제공 및 접대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조성계획 승인·사업시행 과정의 부패가능성 상존

현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다시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미승인시 설계용역비,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 및 단체장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사업자 선정은 통상 조성계획 내 상가지구 등에 대한 민간 분양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 결과를 비공개함으로써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뇌물 제공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관광(단)지 개발지원 및 사후관리 과정의 관리 소홀

보조금 지급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지급 우선순위에 포함되기 위한 시·군의 사전로비가 빈번하고, 주관부처의 관리 소홀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의 신축개보수 등에 지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외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미리 관광업체도 계속사업의 경우 용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비리업체가 기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관광(단)지 지정 과정과정의 공정성·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사도에 민·관으로 구성된 관광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관광객 수요예측 등 주요 개발지표에 대한 산정기법을 개발하여 관광지 지정승인의 검토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광(단)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 선정비리 및 부실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용역업체 및 용역결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의 종합관광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조성계획 승인·사업시행 과정의 투명성 확립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조성계획 승인 후 시설용지지구를 분양하는 경우 민간 분양자(사업자) 선정내용(분양절차, 분양업체, 분양가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관광(단)지 개발지원 및 사후관리 점검 철저

관광개발및국고보조요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단체장의 사업우선순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비지원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관광부의 현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비리업체에 대한 용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비리업체는 다음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3월 16일 문화관광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부처에서는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관련법령 등을 개정완료 및 개정 중에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06.5.4, 문화관광부 권고)

추진 배경

예술행정 분야는 국민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증진함은 물론 문화상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전문성·창의성 존중을 이유로 행정적·사회적 통제가 미약하여 비리가 빈발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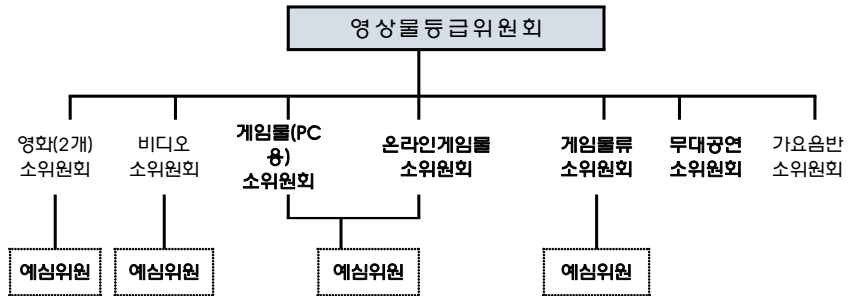
특히 게임물등 영상물 등급심의와 관련한 급행료 등 비리, 각종 경연대회의 입상과 관련한 금전거래,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과정의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가 관행화되어 있어 이러한 예술행정 분야의 비리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 제 점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부패가능성 상존

영상물(영화, 비디오, 게임물, 무대공연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공공성, 음란성 등의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으며, 등급심의를 담당하는 영등위는 15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8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주요 기능
영상물등급위원회 (임기 3년)	-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에 의해 대통령 위촉 (15인 이내 구성) -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시 재심의만 결정(위원장 호선)
소위원회 (임기 1년)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 (소위원 5~10인 이내) - 등급분류 결정 및 수입추천 업무(의장 호선)
예심위원 (임기 1년)	- 위촉직이지만 실무자로서 사실상 등급결정 역할 - 사전 검토 후 소위원회에 등급결정 의뢰 (2~5인 구성)

이러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등급심의 시 금품제공 등 유착 부패 발생, 심의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브로커 개입 및 급행료 등 비리 발생, 출장심의 시 업체와의 접촉빈도가 높아 유착 가능성이 상존함과 동시에 출장심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아 심의방식에 따른 불공정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등급심의를 실질적으로 영등위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소위원회에 대한 로비 가능성, 신분 보장이 미흡한 위촉직 예심위원의 등급결정 영향력으로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합의제 의결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불명확하고 책임성도 미약하였으며, 심의기간 장기 소요 급행료 발생, 출장심의기준 미비로 인한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등이 상존하였다.

경연대회 관련 비리발생 빈발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미술음악 등 11개 단체가 예술가의 발굴·육성과 창작품토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기 및 경연대회에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연대회 포상은 수상시 일반인은 취업·학원운영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학생은 입학시 가점·추천 등 진학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연대회 수상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포상 등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부재, 예술단체장의 독단적인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 위촉절차 비공개 및 폐쇄적 운영, 대부분 예술단체의 심사 규정 및 기준 미비, 심사 결과 비공개 등으로 인해 미등록 단체까지도 포상이 지원되어 정부기관 등의 공신력이 저하되었고, 각종 비리행위 등이 발생한 경연대회의 경우에도 제재없이 차년도에 지원을 계속하여 관행적 비리발생을 초래하였으며, 대회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부패 연결고리 형성 및 대회전 입상자 선정 등의 비리가 빈발하였다.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관련 비리발생 빈발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제도는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시 건축비의 일정비율(1% 이하)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써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미술장식 설치는 건축주의 미술장식 심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및 예술성 평가를 거쳐 작품을 결정하고 건축주가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주가 작품을 고가로 발주하고 저가에 설치하여 차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되어 작가 알선 및 심의위원회 금품제공 등 부패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미술장식의 비전문가인 공무원, 지방의원 등이 다수로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건축주가 이동이 용이한 고가의 회화 등을 설치하고 건물 준공 후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

개 산 방 안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공정성 제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위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필수참여 전문분야 명시, 부적격자 위원 선임 제한, 소위위원 임기 연장, 예심위원의 신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명식 비밀 투표제 도입, 의사결정 과정 및 심의결과 공개, 구체적인 출장심의기준 마련,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경연대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경연대회 포상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연대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경연대회에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배정비율 조정, 비리연루자 심사위원 위촉 배제 등 경연대회 심사위원 자격요건구성 및 선정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공개, 경연대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관련 규정 마련 및 추가검토과제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의 관내 출품 제한, 비리연루 작가의 작품 출품 금지,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 설치 의무화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 시행 후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거나 부패가 재발하는 등 개선이 미진할 경우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또는 “설치비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로 개편” 등 근본적 개선대책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6년 5월 4일 문화관광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 등을 개정완료 및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04.2.27, 농림부 권고)

추진배경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전용이 빈발하였고, 공무원, 건축업자, 민원인 등이 유착된 편법 전용행위, 농지관리위원의 금품수수, 지도단속 과정의 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각종 부조리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표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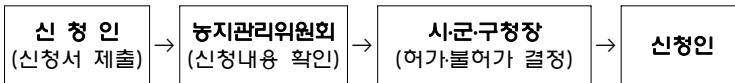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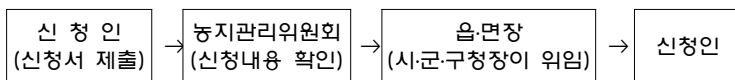
	허가(협의)사항			신고사항
	농림부장관	사도지사	사·군·구	사·군·구(읍·면에 위임)
농업진흥지역 내	3만㎡ 이상	3천~3만㎡	3천㎡ 미만	신고대상시설
농업진흥지역 밖	10만㎡ 이상	1만~10만㎡	1만㎡ 미만	신고대상시설



농지전용 허가 절차



농지전용 신고 절차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전용 허가신고절차 및 지도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예방 및 농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 제 점

불합리한 입법운용을 악용한 부조리 빈발

농지법은 허가와 신고를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대상·시설, 절차 등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나 하위법령에서 입법취지와 달리 신고전용 시설을 허가전용 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제한 시설로도 전용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적인 전용을 조장하고 있었다. 또한 농지 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시행령제49조)을 전용승인토록 규정함으로써 전용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

신고로 전용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전용 신고한 시설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각할 경우(명의변경)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17개 시·군 공통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대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소홀은 농업용 시설을 위장한 일반창고·공장 등을 설치하고 다시 파는 수법으로 농지 훼손, 부동산 투기 등 부조리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농지원부와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승인 없이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지전용 신고 요건중 “농업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비
“농업용 시설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 후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성행하였고, 농지법시행령 [별표1]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농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를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통제효과의 미흡

형식적인 지도단속 등 봐주기식 행태의 성행으로 불법전용 행위를 묵인하였고, 처벌 감경 등으로 단속 부조리가 빈발하였으며,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이 월등히 높아 지속적 불법행위가 초래되었고, 불법행위시 고발조치가 원칙이나 객관적 기준의 불분명으로 시정조치율이 높아 가벼운 제재로 인한 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

신청인이 읍면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위원들과 접촉과정의 부조리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17개 시·군 공통)하고 있었으며, 농지전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농지전용위원회는 위원의 비공개 선발, 환경건축 등의 전문가 미 참여 등으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는 “피해방지 계획의 수립여부” 확인에 그치고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전용목적 사업의 적정성” 등 핵심사항은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구조적인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신고포상금제의 부실 운영

최근 3년간 17개 시·군의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실에 의한 경미한 불법행위 이외에는 고발조치가 원칙이나 대부분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시정조치가 많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감소하였고 사법처리 후 포상금 신청이 가능함을 신고인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불합리한 입법운영 개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변경 운영개선”을 위해 첫째, 신고시설은 신고시설간, 허가시설은 허가시설간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토록 하였고

둘째, 허가가 제한되는 시설로도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위법을 조장하고 있는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3항제3호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전용신고 된 시설을 용도변경을 통하여 일반창고·공장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침내용(농지업무지침 191쪽)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전용 후 5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사군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준공전 명의변경 관리와 동일한 수준의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지업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신고로 전용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불필요한 농지전용 방지를 위해 농업용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신고로 전용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등[시행령 별표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 예) 농업용 창고 : 부지면적을 경지면적의 1/10 이내로 제한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 확립

지도단속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도단속 실명제(‘99년 국무총리 지시사항)를 잘 지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단속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연간 점검계획(정기점검) 수립을 의무화하여 단속대상 선정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지전용 불법행위(농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불법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농지업무지침에 고발·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신청인은 사군 공무원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접수, 시설보완 등 민원을 처리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사군에만 확인사항을 제출하여 신청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농지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활성화

과실에 의한 경미한 불법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토록 함으로써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처리 후 “포상금 신청 가능함”을 신고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2월 27일 농림부에 권고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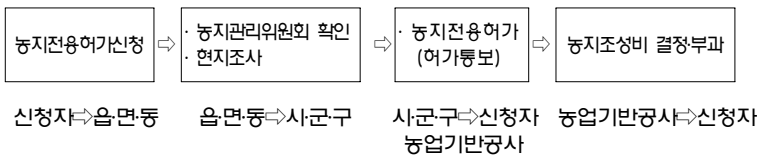
(2004.7.22, 농림부 권고)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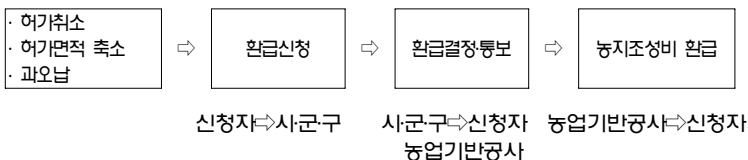
최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농지 조성비 환급 업무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하여 농지조성비를 부정 환급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각각 사실 확인과 환급금 지급 업무를 분담 처리하여 관리감독 소홀 및 책임감 결여로 이러한 부패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전국 각 지역의 농지조성금 환급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패유형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책임규명과 부정환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림6 농지조성비 부과 및 환급 흐름도

- 농지조성비 부과(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0조) -



- 농지조성비 환급(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6조) -



문 제 점

불명확한 법규정 등으로 의한 업무체계의 혼선 초래

농지전용허가 취소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이미 농지 외 용도로 전용된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없이 환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환급신청 처리에 대한 현장 확인 규정 미비로 농지전용 허가 취소만 할 뿐 대부분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농지조성비 환급신청 처리시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구비서류만 갖추어지면 환급 결정하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현장 확인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불법전용 사례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지조성비 관련 업무 처리의 소홀

농지조성비 환급시 선행되어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면적 축소 등 허가사항 변경통보 이전에 환급을 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간 업무연계 미비 및 농지조성비 자진납부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미준수로 인해 농지조성비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농지조성비 수수료의 목적 외 사용

농지조성비 부과수납업무 수행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농지조성비 수수료는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출장여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함으로써 농지관리 인력 및 관리비 부족을 초래하였다.

환급된 농지 등의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 소홀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농지조성비 환급이 이루어진 농지가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상급기관 감사결과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 선 방 안

농지조성비 환급 관련 법령·제도 보완

농지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용농지 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강제규정화 하고, 환급 결정 전에 환급 대상농지의 원상회복 또는 농지기능 유지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환급 결정을 하도록 세부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신청 또는 농지조성비 환급 결정을 하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농지기능 유지에 대한 책임한계와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급 결정시 원상회복 여부의 근거인 농지기능 유지여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확인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예방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공사에 환급 결정 통보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급 결정 통보 서식을 마련토록 하고, 상호간의 업무연계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행정비용 감소, 자진납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공사로부터 직접 통지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이중납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는 농지조성비 수납환급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현행 전산시스템을 개인 및 필지(토지)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 업무에 사용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출장비로만 사용하도록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지조성비 부과 및 환급 관련 업무의 일제점검 추진

농림부에서 농지조성비 관련 업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환급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하거나 농지조성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전용허가 취소 및 변경 농지의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경미한 불법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2일 제도개선안을 농림부에 권고하였고, 농림부에서는 농지법(제44조), 농지법시행령(제56조) 등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부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산지전용 제도개선

(2004.2.27, 산림청 권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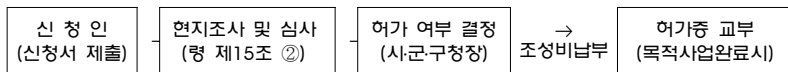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형질변경은 합동단속·고발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로 전용전문업자와 산림소유자가 담합한 편법·불법전용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어 산림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인허가 및 지도단속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불법 행위 묵인 등으로 처벌되는 등 비리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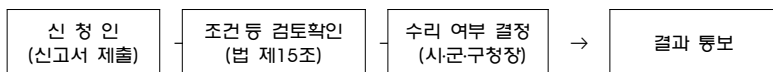


전용허가·신고 절차

○ 산지전용 허가는 산지를 임업 외의 목적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 산지전용 신고는 농림어업인의 거주, 소득증대를 위해 전용하는 행위



<표37>



연도별 산지전용 및 불법전용 현황

(단위 : ha)

연 도 구 분	'02년		'01년		'00년		'99년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산지 전용	18,757	7,545	15,578	7,386	14,828	7,170	14,798	7,968
불법 전용	1,844	342	1,913	478	1,752	476	1,987	425

문 제 점

불명확한 법규정 등에 따른 재량권 행사

농림어업인 주택부대시설 설치는 농림어업인에 한하여 가능하나 “농림어업인”의 판단기준이 불확실하여 증명서류로 제출되는 농지원부가 신청만 하면 농업인으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며,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의 편법 전용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660㎡이상 전용시 재해예방, 경관훼손 방지 등을 위해 “경사도”가 평균 25도 미만일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산지법시행령 제20조)하고 있으나 신청서 제출서류에 측량에 의해 산출된 경사도 첨부 의무가 없어 조사공무원의 주관적 판단(목측)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불법전용 행위를 유발하는 인·허가대상

‘농림어업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신고대상시설·설치조건에만 맞으면 신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정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산지훼손 및 불법임대 사례가 성행하고 있었다.

또한, 농림어업용 시설로 전용된 시설이 비농림어업인에게 불법 매각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통제장치가 없어 농림어업용 시설을 위장한 일반창고·공장 등을 설치하고 되파는 수법으로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등 부조리 유발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신고전용 시설을 허가전용 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전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편, 전용허가 기간을 연장 및 재연장할 경우, 기한의 제한이 없고

연장허용 시 판단기준의 재량이 많아 토지의 일부만 착공하고, 잔여 토지는 장기 방치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 규정 미비

산림법에 불법전용 행위, 목적 외 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주체,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전용 행위 묵인, 처벌 경감, 허가기간 경과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미실시 등 단속관련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시정조치의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솜방망이 제재 및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기대수입이 커서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사법처리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신청 가능함”을 고지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간 신고가 많은 데도 최근 3년간 지급실적 전무하는 등 불법전용 “신고 포상금제” 운영 저조한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법규정 명확화로 재량행위 축소

신고전용 및 보전임지 중 660㎡미만 허가전용의 경우 농림어업인용 주택·부대시설을 위해 전용시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제출서류에 “농지원부” 첨부 의무화하여 등록후 1년이상 된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전용요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토목설계기술자 등’ 전문가가 작성한 ‘경사도 측정’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측정방법 표준화를 병행토록 하였다.

또한 산림관련 기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 한 경우 자격·영업정지 등 처벌 조항을 산림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위반한 자격자는 측량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조치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불법전용에 악용되는 법규정 정비

전용된 산지를 농림어업용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의 합리적인 규모를 소유경작 면적별로 차등 규정하고 불필요한 시설설치 후 임대 등 전용목적 외 사용행위를 통제하도록 하고, 농림어업용 주택·부대시설로 전용한 자는 5년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변경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기간내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되 허가기간 연장시 최대 허용기한을 사안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간연장 허용 여부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 확립

산지관리법에 불법전용행위 조사 근거규정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불법 행위 지도단속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불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고발기준을 마련 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토록 하였다.

한편,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신고인에게 신청기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지급대상, 지급요건, 제보자 비밀보호 등 시행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사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조치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2월 27일 산립청에 권고 하였으며, 산립청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각종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6

근로자 직업훈련 사업 제도개선

(2004.7.2, 노동부 권고)

추진 배경

1998년 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직업 훈련이 확대 실시되면서 훈련기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훈련기관에 대한 사전검증, 감독 및 사후평가 체제가 미흡하여 훈련비 및 수당 부당지급 등의 부패사례가 발생하여 직업훈련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표38>

연도별 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건)						
연도별	계	공공기관	노동부지정시설	훈련법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시설 외 기관 (사업내훈련원 포함)
'98	510	95	178	-	-	237
'99	3,221	95	175	77	44	2,829
'00	2,592	52	278	84	24	2,154
'01	2,854	53	138	77	46	2,540
'02	3,190	54	372	119	45	2,600
'03	4,208	53	548	97	51	3,459

<표39>

유형별 위반사항 추이 (단위 : 건, %)							
연도별	계	출석관리	훈련내용	수료관리	시설·장비 /훈련교사	훈련비 관 련	재해보험등 기타
'99	2,284	694(30.4)	640	344	150	74	382
'00	1,678	571(34.0)	594	173	94	47	199
'01	4,081	1,097(26.9)	1,454	356	209	261	704
'02	3,895	1,557(40.0)	700	523	176	96	843
'03	2,857	1,154(40.4)	566	214	132	94	697

문 제 점

부실한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부당지급 가능성 상존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출결

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출석조작이 가능한 카드체크 및 출석부 서명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훈련비 및 수당 부당지급 가능성이 상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 산정기준의 문제

실업자 직업훈련의 평가지표로 취업실적이 중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실적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스템이 미흡하여 채용장려금 제도와의 연계 등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이해가 일치하여 부정수급에 필요한 자료가 작성되는 경우 부정수급 사건의 상당수가 관계자의 제보(내부공익신고)에 의하여 적발 되므로 수사 또는 사후점검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또한 부정행위 조치 기준 및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훈련생이 사업주나 훈련기관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곤란

부실한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체제 미흡

IMF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사전에 검증되지 아니한 훈련기관들이 대거 진입하여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상황으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진입·퇴출 관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였다.

훈련법인에 대한 관리체제 미흡

훈련시장 규모 축소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훈련법인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여 허가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훈련법인 해산 시 재산처리

제한 규정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법인재산을 유용·은닉하는 등의 부정행위 사례가 빈발하였다.

개 선 방 안

출결조작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개선

대리출석 등이 불가능한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방식의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출결상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취업률 산정기준 등 훈련기관 평가체제의 개선

취업률 평가 시 취업기간이 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취업률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수료 후 3개월 내 취업만을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률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률 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였다.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직업훈련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부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부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훈련기관, 사업주 등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 하였다.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퇴출시스템 강화

인적물적 요건(훈련경력, 시설면적, 전임훈련교사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하였다. 또한 훈련기관 평가 시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우수 훈련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 훈련기관은 퇴출시키는 「평가연계지원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였다.

훈련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잔여재산을 “타 훈련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이 부실한 훈련법인의 퇴출 촉진을 유도하는 처분 제한을 완화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7월 2일 노동부에 권고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7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2006.12.11,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권고)

추진 배경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분야의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등 국민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 개요('05.12월)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종류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소	종사원	개소	종사원	입소인원	개소	종사원
노인복지	55,936	20,642	1,133	15,147	37,919	54,803	5,495
장애인복지	1,719	17,895	426	9,772	22,202	1,293	8,123
아동복지	1,958	9,551	536	5,360	20,716	1,422	4,191
사회복지관	391	7,650	-	-	-	391	7,650
기타	603	4,967	167	2,846	22,661	436	2,121
계	60,607	60,705	2,262	33,125	103,498	58,345	27,580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종류	개소	이용(입소)인원	비 고
보육시설	28,367	1,221,006	이용시설
모부자시설	40	2,654	생활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보호	63	928	생활시설
계	28,470	1,224,588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관련법	세 부 종 류		소관 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 노숙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 부랑인시설 - 결핵, 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 복지법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 생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 보건법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자활후견기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보건 복지증진법	농어촌지역은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을 동일지역에 설치가능(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모부자 복지시설	모부자 복지법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설,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 가족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성매매 방지법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자료 : 보건복지부('0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문 제 점

보조금의 불법수령·횡령

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후 편취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 대표이사 등 법인이사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기능보강사업 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복지시설 신축,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선정을 관계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보강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접수받은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 후원금을 사용금지 항목인 관공비, 정보비 등으로 사용, 허용범위를 초과한 간접비 사용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기본재산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불법처분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 지원으로 형성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회가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법인 취득재산의 부실관리

법인이 매수, 후원 등 재산 취득 시에는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사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하나 편입누락 하는 사례와 법인 재산 증감시 정관변경 및 사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정관변경 및 승인누락 등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관리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시설장의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복지시설 평가 시 회계 관리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사업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토록하고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 1개월)을 부여하고,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시설공사 발주방법 개선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시설보강공사의 편법계약 방지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규모(예 : 2억원) 이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토록 하는 등 조달시스템을 이용토록 의무화하였다.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원생활인 인적사항 관리 등 주요사항을 회계시스템의 전산처리 기능에 포함되도록 구축운영하고 통합회계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및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지도점검의 내실화 및 전문성 보완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였다.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감사의 업무범위를 기본재산 관리, 기능보강사업비·운영비 등 보조금 관리, 후원금 분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다.

외부 회계감사 등 검증장치 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회계 감사제를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토록 하고, 회계법인은 주무관청이 선정토록 하여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본재산 관리체계 구축

사회복지 시설법인 설립허가 관련 현금성 기본재산 출원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금융재산, 부동산 등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시스템을 주무부처 주관으로 구축토록 하였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제정 및 허가내용 공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재산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토록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허가근거, 처분목적, 처분재산 내역 등 허가내용 개요를 허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였다.

임시이사 파견제 도입

법인의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에 해당되어 해임되는 등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파견(예 : 1년)하여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

임원(이사 및 감사) 중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 특별한 관계(단, 이사는 1/5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임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였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국가·지자체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검토·추진토록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범위, 이사의 자격요건 및 추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2007년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감척대상 어선할당량에 따라 정부가 선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매입한 후 선령 10년 이하의 감척어선(폐업어선)에 대하여는 어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일업종의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으나, 수역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감척시킨 일부 선주들이 제3자(친인척 등)명의로 경매에 나온 감척어선을 헐값에 재인수하여 거액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따른 감척어선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제점

감척어선 선주의 타인지배로 인한 2중 혜택

고액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매입비를 지원받은 감척어선 선주가 제3자(친인척 등)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경매가격은 폐업지원금 및 어선매입비의 20~30% 수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적발·처벌의 실효성 미약

사전에 사·도간 어선감척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수혜자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한 경매참가가 용이하고, 사후에 적발되어도 행정

처분은 경고(1차)에 그칠 뿐 어업허가취소(2차)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 형량 및 벌금도 가벼운 실정이었다.

타인지배의 경우 실소유주와 매입자 관계의 실질적인 확인 곤란

자금흐름추적이나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는 실태조사로 타인지배를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법 위반자 통보 또는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 불비

수산업법 제80조(포상)에 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개인은 제한적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적발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감척어선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활용체제 구축

해양수산부 및 각 시도에서 감척어선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의 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하고 관련 시도에서 자료 요청시 수시로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집행지침’을 보완수정한다.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입찰조건 강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찰조건으로 타인지배가 적발될 시 어업허가 취소, 당해어선 매각계약을 취소하고 재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타인지배의 경우 어선매입자는 어업허가 취소

감척어선을 불법으로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없이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강구

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홍보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감척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점검 실시

어선등록대장 및 실제 조업현황 등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을 강화한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3년 4월 16일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시책에 관한 포상규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향후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권고한 제도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추진배경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정행위가 빈발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었다.

<표40>



연도별 진료비 및 국고 지원 규모

구분	2002	2004	2006
진료비	14조 6,510억원	17조 43억원	22조 4,623억원 (‘02년 대비 53.3% 증가)
국고 (기금 포함)	3조 139억원	3조 4,830억원	3조 9,410억원 (‘02년 대비 30.8% 증가)

<표41>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인당 월보험료		13,425원	16,248원	17,985원	19,104원	20,904원
직장보험료 보험료율		3.63%	3.94%	4.21%	4.31%	4.48%
건강 보험	지 출 (진료비지원)	146,510 (138,993)	157,437 (149,522)	170,043 (161,311)	191,537 (182,622)	224,623 (214,893)
	수 입 (보 험 료)	138,903 (106,466)	168,231 (131,807)	185,722 (148,7457)	203,325 (163,864)	223,876 (182,567)
	당기수지	△7,607	10,794	15,679	11,788	△747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불명확

허위·부당청구의 정의를 포괄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법령의 해석·적용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제재를 위한 법률 적용 시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요양기관 간 견해차이가 발생되고 있었다.

현지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심의과정 불합리

실제 부정청구행위가 있음에도 현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공립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현지조사 의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대상범위(통계상 전체 요양기관의 1% 정도)만 조사하는 등 소극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토론과정 없이 서면회의로만 심의함으로써 담당자의 재량으로 조사의뢰 대상기관을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기관 제외사유와 근거 등 기록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요양기관의 기본 정보(기관명, 대표자 등)가 공개된 상태로 심사함으로써 심사위원의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에 따른 조사대상기관 제외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현지 조사대상범위 자의적 운영

허위청구 적발 시 조사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최소 6월에서 3년까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허위청구 적발시에도 나머지 기간은 미조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조사대상범위 확대시 구체적인 기준과 승인절차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조사수행 과정의 책임성·투명성이 미흡하였다.

현지조사 관리체계 미흡

조사대상 선정부터 현지조사까지 일련의 과정이 요양기관 및 업무단위 별로 자료관리 체계가 되어있지 않아 상호연계 및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정당한 근거 없이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관리체계 및 조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미흡 하였다.

의료인력 변동 등 현황 파악 미흡

차등수가제도에 따른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 받지 않기 위해 의료인력 허위신고, 면허대여 등을 통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였고, 법정기간 내에 의료인력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한 미신고,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하였다.

요양기관 부정청구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일부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일단 비급여로 청구하고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환자는 진료비 청구과정, 확인에 관한 권리를 모르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등 무관심하여 허위·부당청구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업무정지처분 등) 실효성 미흡

대형병원의 경우 부당비율 및 진료비 환불금액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채 부당이득만 환수하였고 국공립요양기관은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미 실시 하는 등 제재가 미흡하였다.

특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상호변경 또는 타인명의로 재개설하거나 장소를 옮겨 타인 명의로 재개설하는 등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허위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운영 부적정

보건복지부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고발업무 수행 인지 미흡 및 미고발 조치가 대부분이고 실제 진료비 현지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보건소 담당자가 고발업무 수행함으로써 형사고발 결과 기소유예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경사례가 빈발하였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 고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발기소 관리, 폐업시 방치, 최종 판결 여부 미확인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였다.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환수 미흡

건강보험료는 납부 이행강제를 위해 독촉, 체납처분, 공매, 가산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부당이득금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였고 특히 과징금의 경우 이를 진료비 청구비용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였다.

개 선 방 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명료화

현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허위·부당청구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허위·부당청구 기준을 법령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과의 견해차이를 해소하고 진료비 현지조사의 당위성, 제재의 근거인 허위·부당청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지조사, 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적용토록 하였다.

구 분	현 행	개 선
허 위 청 구	○ 의료법 제53조 :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	- 정의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 < 예시 > · 입·내원(내방)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 비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 ·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를 청구
부 당 청 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 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 정의 : 진료·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담청구 < 예시 >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용 청구 · 의약품(재료대), 검사료 등 대체·초과 청구 · 실제 사용량 등을 초과하여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 등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합리화

최근 몇 년 이내에 현지조사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국·공립요양기관, 진료비 환불건수 및 환불액 상위기관 등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민원발생건수, 부당청구 건수,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표42>

조사대상 선정기준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예시)
진료비 환불액	선택적으로 3 ~ 5개소 (선정기준 없음)	환불액 상위 5% 이내 또는 환불액 일정액 이상
대형요양기관 (종합병원 이상)	부당금액은 총족하지만 부당비율이 총족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많음	부당금액 일정액수 (1억원 / 6월) 이상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조사대상기관 선정, 정산심사, 의견청취 등을 위한 회의자료 작성시 요양기관 명단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연고 등에 따른 부패발생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심의위원회에 민간 외부위원 참여, 대면심의 등을 시행하고 부득이 서면심의로 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을 득한 후 진행토록 하였다.

현지조사의 책임성·공정성 제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상기관 선정단계부터 이행실태 점검단계까지 각 단계별 담당자를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 조사 누락,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조사 요원이 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학연·혈연 및 입사 전 근무 요양기관 등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토록하고 조사요원이 조사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 현지조사 수행지침을 규정토록 하였다.

조사대상범위 확대 기준 및 절차 마련

조사과정에서 허위청구 적발시 조사대상범위를 1년분으로 자동 확대하고,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며 조사대상범위를 1년 이상 확대시 허위청구 금액 및 비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확대기준 마련하고 조사대상범위 확대시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확대하도록 하여 투명성·책임성 확보토록 하였다.

현지조사에 대한 확인점검 및 평가 강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조사대상범위 운영, 조사과정, 정산심사, 행정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토록 하였다.

조사대상 누락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현지조사 대상기관 미의뢰·미실시, 행정처분 대상기관 미통보, 형사고발 등 각종 누락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을 확대하거나 조사대상범위를 축소·확대하는 행위, 허위·부당 청구 행위가 있음에도 조사대상범위 확대 승인을 미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토록 하였다.

요양기관 지도·감독 관련 통합DB 구축

요양기관별로 현지조사 의뢰, 현지조사, 정산, 행정처분내역 산출, 행정처분, 이행실태, 형사고발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전산관리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강화토록 하며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 등 취약분야를 집중관리
토록 하였다.

※ 주요 기록사항(예시) : 조사의뢰 내역,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선정 및 제외사유),
현지조사 담당자 및 결과, 조사대상범위 확대 및 미확대 내역, 정산심사 및
처분결과, 조사 미실시기관 내역, 행정처분 이행실태조사 내역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모든 세대를 기준으로 진료 받은 기록을
연 1회 정기 통보토록 조치하고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제도에 의거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 ‘06년의 경우 417만 세대(전체 1,785만 세대 23.3%)에 대해 “진료내역통보”
우편 송달, 부당청구 12.8만 건 적발하여 13.7억 환수

진료내역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
창구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료 납입고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
제도』,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토록 하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항을 마련토록 하였다.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촉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자진신고제도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및 법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당이득금

은 전액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감면, 형사고발은 면제토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신규 개설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을 공개하여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적정성 제고 및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허위청구에 대한 형사고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고발업무를 체계화하며 형사고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반사실을 조사한 전문기관이 고발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국·공립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 승계, 대형 요양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요양기관 의료인력 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토록 하였고 부당이득금·과징금 체납 시 진료비를 상계처리 토록하고 부당이득금 분할납부제도를 마련토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7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2008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각 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이행 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1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2002.10.15,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권고)

추진배경

국민성금은 연간 3,000여억 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 성금내역의 미공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성금의 부당사용, 목적외 사용 등을 통한 횡령편취 등의 의혹이 발생하였다.

특히, 성금은 대부분 현금 및 현금으로 기부되고 있기 때문에 성금 운영자의 보고·공개 없이는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금에 대한 후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성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철저히 하고, 감독기관의 사후지도·감독권을 확보하는 등 성금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였다.

<표43>

	국민성금 모금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금액	90,673	120,15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83,312	99,826
기타 비영리단체 후원금 (모금규모가 큰 단체 대상)	59,487	58,181
계	233,472	278,163

※ 종교단체기부금, 학교기부금, 정당후원금 등은 제외

문 제 점

기부금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상 모집자가 모금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사용내역을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부금 사용 시에는 기부금 모금총액의 2% 한도로 모금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한도 외로 사용하거나 기부금 사용내역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사용내역을 일부단체들만이 일간지에 공개하였으며, 대부분의 모집자는 언론보도나 홍보지 등에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었다.

※ 국가청렴위원회 조사('02. 8)결과 허가받은 모집자 27개 단체 중 16개 단체 (59%)는 지방일간지(중앙일간지)에 미공개

특히 현 제도상 허가권자에게 모집허가권은 있으나 모집자가 기부금 모집결과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하였는지 파악이 어렵고 국가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얼마나 모집되고 집행되었는지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후원금제도의 문제점

후원금을 후원금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다른 통장에 관리하거나,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세입금액의 확인불능, 사적용도로 사용,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누락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상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내역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 국가청렴위원회 조사('02. 8)결과 조사대상 946개 시설중 209개(22%) 시설이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특히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미공개 또는 허위공개 등 후원금 관리규정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으며,

감독기관은 시설운영자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 실사를 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성금납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등 모금기관 현황을 정부인터넷에 일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성금의 모집금액과 사용내역도 정부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성금관리의 체계화

기부금의 운영자는 허가권자에게 모금 후 30일 이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고, 모금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수입·지출결산보고서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허가권자는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허가를 받고 모금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국민성금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자부장관이 국민성금백서를 발간, 차년도 국회 결산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기부금의 모금이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확인·검증절차를 위하여 기부금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 제출 시 일정규모(예 : 1억이상)이상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은 그 규모가 대다수 영세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수료 부담문제 등이 있으므로 후원금은 적용 제외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제작한 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후원금을 접수한 경우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후원금영수증을 사용 하도록 권고하였다.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성금모금액 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허가권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된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불법·부당 성금운영자의 제재조치 강화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공개 등 후원금관리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2년 10월 15일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2003.5.28, 보건복지부·노동부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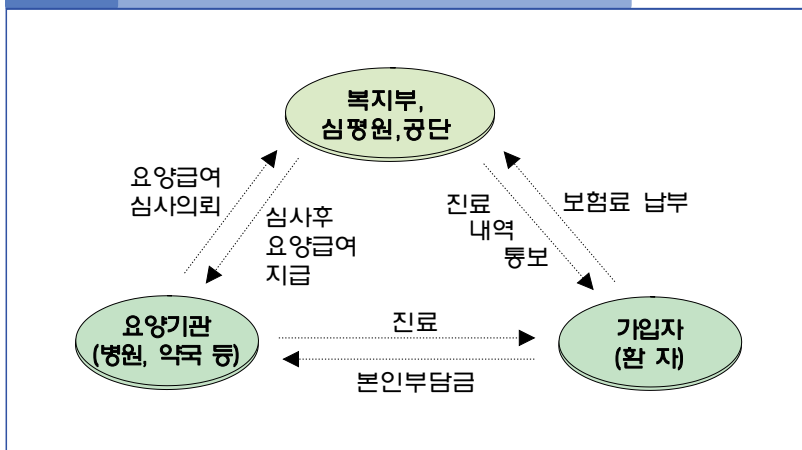
추진배경

의료분야의 경우, 종합적인 보험·보호체계의 도입으로 국민의료 보장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환자수 및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건전한 보험재정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허위·부정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는 급여청구의 심사,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등 다양한 부정청구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은밀성·치밀성 등으로 부정청구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림7 의료보험(요양급여)의 청구·지급 체계



의료급여 규모

- 의료기관에 지급한 4개 요양급여의 진료비 총 규모
- 2001년도 16조5천억원
- 2002년도 17조4천9백억원

※ 4개 요양급여 : 건강보험의료급여(복지부), 산재보험(노동부), 자동차 보험(손보협회)

<표44>

의료보험 부정청구 규모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구 분	조사기관 수	적발기관	부정청구액	비 고
2001년	813 개소	640 개소	112 억원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499개 기관) ○ 형사고발(84개 기관)
2002년	683	498	65	○ 형사고발(24개 기관) ※ 나머지는 고발 준비중

※ 조사기관은 연간 600~800개 기관으로서 전체 요양기관 약 63,000개중 1~2% 수준

문 제 점

부정청구 조사의 한계성

부정청구 규모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나 부정청구 관련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일부자료를 토대로만 조사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요양기관들의 부정청구 수법의 다양화·치밀화

진찰료 등의 수가조정 및 차등수가제 도입 이후 내원일수 조작, 진료내역 부풀리기 등 의료기관의 계획적인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진료기록 및 진료비 청구 업무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전산조작을 통한 진료내역 부풀리기 사례도 적발되고 있었다.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유인 미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6월 이후 부정청구 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시행을 중단하였다.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청구 억제 미흡

진료비 심사실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처벌요건 강화 및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3배 이상 강화하였음에도 부정청구 규모가 줄지 않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적용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요양급여(의료보험, 산재보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 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요양급여 부정청구(부패행위)를 알게 된 의료기관 등 의료관련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 등 누구든지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 및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병의원·약국)의 담합행위에 의한 약가상승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리베이트, 랜딩비 포함)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 비밀보장·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방안 등을 시행토록 하였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부정청구 행위 공익신고로 보험재정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하고 보상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진자(환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수진자 및 그 가족(배우자 등 피부양자)가 의료보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진자를 통한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계산서·영수증)발급 의무화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진자의 진료정보인 “의료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28일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권고하였고, 해당부처에서는 법령 등을 개정완료 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위생분야 제도개선

(2004.2.23, 소방방재청·식약청·경찰청 권고)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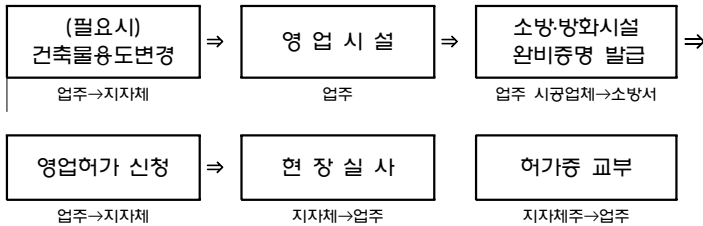
위생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 분야 중 끊임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분야로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관행화·고질화되어 더욱 은밀하게 잠복되었으며, 또한, 다수의 국민이

종사하거나 이용하는 분야이고 관련기관이 많아 부패척결 시 파급효과 확산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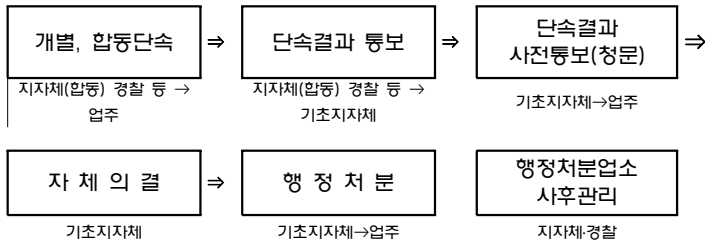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은 식품접객업 분야와 그와 연관되는 유사분야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함에 있어 식품접객업분야 중 부패발생비중이 높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부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과정별, 부패발생 원인별, 부패행위자별 분석과 제도·행태별 대책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림8 허가처리, 점검·단속 및 행정처분 흐름도

○ 영업 허가



○ 단속단속·점검 및 행정처분



식품접객업소 및 단속현황(2002)

- 업소는 2001년 687,319개소에서 2002년도 709,148개소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
- 1995년 단체장 직선 이후 업소 수가 증가하였으나 단속 건수와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오히려 대폭 감소
- ※ 1994년 1,809,587건이던 적발실적이 2002년에는 662,314건으로 현저히 감소

문 제 점

인·허가 과정의 부패

허가기준 위반사항 묵인, 급행료 수수가 성행하고 영업허가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 실사 시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묵인하고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금품·향응이 제공되고 있으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을 위한 현장 실사 시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되고 사업자 등록 시 명의위장(바지사장) 여부 확인과정에서 사실 관계 무마를 대가로 금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유흥주점 등의 중과세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특히, 유흥주점 영업허가 조건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 및 급행료 명목으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향응제공 등도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담당제로 인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사항 확인업무를 대부분 담당공무원(시군구, 소방서) 1인이 처리하고 있어 업주와의 유착 개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도·단속과정의 부패

비현실적인 단속법규로 인한 부패요인에 대해 조리사면허증, 허가관청의 홍보물 등의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위반하고 있어 단속과정의 유착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 시 점검목적·점검자 등을 기록하여야 하나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단속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업소 단속 시 대상 업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의 중복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업주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유흥업소의 96%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제공이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불법시설설치 등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하고 뇌물 등을 수수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소방방화시설 정기점검 시 시설기준 위반사항을 묵인하고 풍속 단속 시 불법행위 묵인, 단속정보 제공, 업소내 사건발생시 선처 등을 조건으로 금품, 향응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단속결과 처리과정상의 부조리

식품접객업소의 업태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벌을 감경하는 등 처벌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의식하여 단속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자치구는 월 1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부분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합동단속이나 경찰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서울시는 구청장 직선 이후 직제개편시 위생과와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 업소 감사적발업무를 맡은 위생감시계를 폐지(최근 재설치 추세)

또한, 처벌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어도 대부분 불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단계별로 가중 처벌되고 있고, 손님 등에 대한 쌍방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도 관할 지자체에 통보가 지연되어 폐업, 명의변경 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기회가 일실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패요인 제거

현장 확인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영업허가 및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시 2인1조로 출장하여 공동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신청자나 시민지원단이 알 수 있도록 점검기준(체크리스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명의위장에 따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명의위장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자금 출처 소명서를 첨부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청 조사3국에 명의사장, 카드변칙거래 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검찰과 국세청 조사요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단속과정의 부패방지

단속법규의 현실화로 영업허가증, 조리사자격증에 대한 영업장내 게시 의무를 비치하는 것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모든 단속은 관계기관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경찰서·소방서 및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시(1), 광역시(6)에서 우선 시행한다.

<표45>



유통업소(유통·단란 등) 업무기능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특별시·광역시·대도시	· 합동단속반 운영(월 2~4회) - 위생 및 시설기준 위반사항 단속	· 합동단속반 운영(상설) - 위생 및 시설기준 위반사항 단속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자치구·구	· 영업허가 · 위생 및 시설기준 위반사항 단속 · 위반업소 행정처분 ·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 영업허가 ·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방경찰청·경찰서	· 위생 및 시설기준 위반사항 단속 · 행정처분업소 단속 · 112 신고 등 사건처리, 수사	· 112 신고 등 사건처리, 수사

주간예고 점검 및 야간 불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여 점검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주간점검이 가능한 위생·소방 등은 일시를 정하여 사전예고 후 주간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년 1회 불시검사를 실시하되, 단속은 비노출 위장단속을 실시하여 업주의 자발적 규정준수를 유도할 것이다.

실명단속 및 단속책임제를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은 위생업소 출입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업주가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하며, 단속반은 단속 목적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단속자가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관련공무원은 사무실이나 합동단속 시 업소에서만 업주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속결과 처리과정상의 부조리 근절

엄격한 부패통제장치를 확립하여 사회 미풍양속 저해 등 중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법행위를 정하여 고지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부패유발적인 환경개선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뇌물제공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일정비율의 포상상금을 지급하고, 공적에 따라 표창 수여 및 승진진보 시 우대해야 하며, 뇌물제공 업주는 형사처벌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제한해야 하고, 뇌물수수 공무원은 고발 및 단속업무 배제 등을 통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

업주와의 유착관계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현재 1년 이상 위생업무, 풍속업무 및 소방시설 완비증명 업무 담당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원 교체해야 한다.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신고보상금제도와 식품위생법상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하고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신고포상금 현실화 및 지급액의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4년 2월 23일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에 권고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 분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배경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물류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류 과정이 불투명하고, 각종 리베이트가 만연하여 높은 물류비용과 외국 상공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어 국가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주한외국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물류분야의 부패인식도조사('04. 9)에 따르면 '부패함'이 22.1%로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9.8% 보다 높게 나타남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출입물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물류경쟁력은 물론 국가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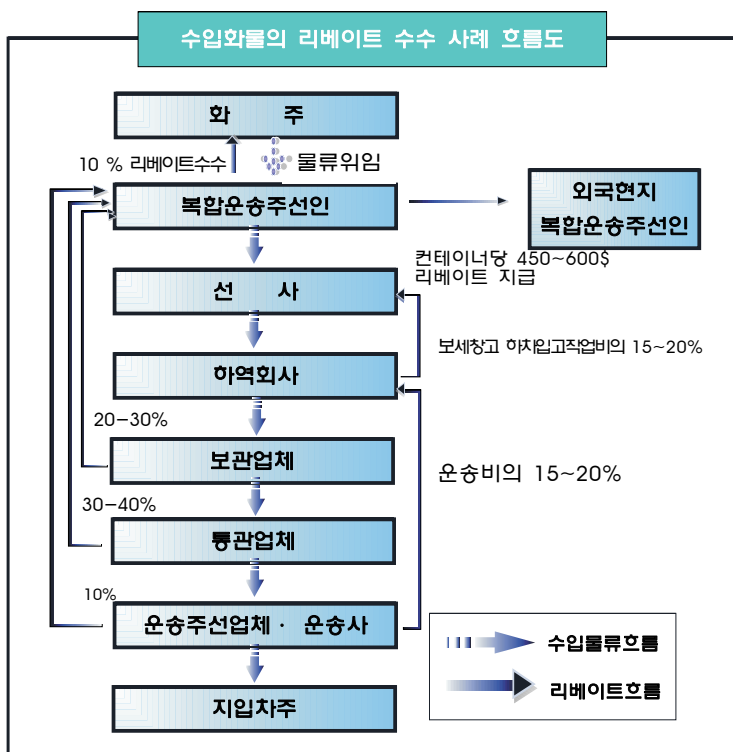
문제점

물류업계 과당경쟁으로 인한 각종 리베이트 수수

국내 수출입물류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및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생존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각종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수익성과 서비스 보다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에 더욱 의존하고 있고, 지나친 저가수주는 물류업계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물류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항공사, 선사 등 각 물류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격 결정방법은 과거 승인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여건의 미성숙으로 정형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각자가 그때그때마다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물류가격 중 일부에 리베이트가 포함되는 등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었다.



관련법규 미비로 인한 업무영역 불분명

국내 운송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다단계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입물류 복합운송주선의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다단계금지 운송 금지규정이 없는 등 관련법규가 미비하고, 하역업체와 보관업체간 업무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각종 편의제공, 추가비용 지급 등 독점적 업무영역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부재

복합운송 주선업체간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체와 국내운송주선업체간에 복잡한 다단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무등록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중앙부처(건설교통부)가 업무를 주관하고, 지자체(시도지사)가 집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무등록 영업에 대한 단속 이외에 관리·감독 등 집행수단이 미비하고, 지자체의 무등록 업체의 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물류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부차원에서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 등을 통해 물류비 지출내용이 최대한 상세·투명하게 드러나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 또는 품목별, 물류비 구성 항목별, 운송기점 및 도착지별 등으로 구성된 각종 물류비(보관료, 운송료, 하역료, 통관료 등)의 실제 지불사례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물류업체간의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물류거래 과정에서 대형물류업체와 중소물류업체간 하도급거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사항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의무화하고, 하도급 계약서에 물류비 구성요소, 선사와 화주간 운송계약 시 운송관리비 포함 여부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소관부처 및 물류단체들로 하여금 공정경쟁 규약과 표준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토록 유도하여 화주와 복합운송사업자 간 표준물류비가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물류단계별로 물류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규정 등을 포함하고, 공정위가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점적·시장지배적 거래상 지위 남용 개선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타사 또는 화주 직접 운송 차량(자가운송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법·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역운영회사의 등록 또는 갱신요건에 조항으로 포함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였다.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입고·하차작업은 보세창고(파견된 항운노조원)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하차입고작업 비용은 하역요금(인가요금)에서 제외하여 보세창고 부대서비스 비용으로 자율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였다.

물류주체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행위 및 단계별 각종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복합운송주선업체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 경력자 등록제한을 추진하고,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수수시 계약해지, 물류업체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강령을 물류관련 기업들과 단체들이 제정·운영토록 하였다.

외국 운송업체에 대한 각종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법 외환유출행위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운송·보관·하역 등)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를 유도하고,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를 도모하도록 하고, 통관업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세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화주를 위하여 단순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관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5년 3월 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에 권고하였다.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개정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배경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제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안전성과 공익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의약품판매량을 높여 약가마진을 얻기 위해 약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일부 의사들에게 과다 처방을 부추겨 약품 오·남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의약품의 질적 경쟁을 막고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물류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류 과정이 불투명하고 각종 리베이트가 만연하여 높은 물류비용과 외국 상공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이로 인해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투명화 함으로써 변칙거래 및 무질서한 의약품 수급을 차단하고, 리베이트비용 등 과다한 판촉비용을 약가에 전가시키기보다 신약개발유도 등을 통한 의학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

의약품 유통의 근간은 약가에 있으며, 실제 약가가 생산원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신고 약가와 제약사의 실제 공급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공급가격은 다른 제약회사와의 경쟁 및 구매량, 특정시기의 영업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한가제도 및 『실거래가상환제』는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비용도 직접 지불하지 않는 현행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는 의약품거래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암묵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고 있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구조상의 구조적 비리

도매업소 허가기준에 대한 규제완화조치(창고면적 요건 삭제)로 물류 저장기능이 없는 “품목도매상”등이 난립(600 → 1,400개소)하여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영세한 약품도매상의 난립으로 가짜약, 저질약품 판매 등 후진국형 약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500여개에 이르는 제약회사가 생산이 용이한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과당경쟁하고 있고, 차별성이 거의 없는 같은 성분의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의약품의 관측수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 및 리베이트 등 영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각종 리베이트 수수

의약분업 및 약가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에도 제네릭(Generic)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저가매출과 제약회사간의 과당경쟁의 결과로 의약품거래과정에서 처방사례비, 기부금, 할인·할증 등의 형태로 각종 불투명한 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선정을 위해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 기부금,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차원에서 거래결재 후 금품제공, 의사·약사들의 학회, 세미나 등 각종행사 관련 비용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독점계약 대가 및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7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 K병원장을 구속(04.4.3 언론보도)
-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1.1~2003.6 기간중 자기가 거래하는 각 병원·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개 선 방 안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하여 의약품 공급, 청구현황 및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제거하고,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 제고하도록 하였다.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 중인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여 허가 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여 유용성을 판단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된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를 통한 유통현대화 및 경쟁력을 도모하였고, 현행 물류조합구성 기준을 완화(50인 이상 → 5인 이상)하여 지역별 물류조합설립이 용이하도록 추진하여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약가 사후관리 강화

실거래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가거품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가거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도매상에 대한 거래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평가원에 도매상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고, 조사 기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사후제재 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복지부에서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하여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 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을 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약품후원금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사약사 등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관련 직능협회의 윤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하며, 제약회사 CEO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5년3월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하였다. 청렴위의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등을 2005년까지 개정하였고,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하여 특정의약품의 집중 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을 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T) 분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배경

최근 급성장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IT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계약법의 일반 계약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등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 SI(System Integration)와 7천여개의 영세한 벤처기업이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시장이 형성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은 IT의 전문적인 기술성으로 인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주기관이 SI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부터 유착형성, 입찰계약, 납품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각 단계별로 부조리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회사들은 국내 IT시장에서 발주하는 수억원대의 저가입찰, 심지어는 백지 입찰이 발생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자칫 한국시장 자체의 신인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IT 시장 환경에 맞게 새로운 계약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써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사업수주를 위한 경쟁 과열

IT업체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응하면서 자사 및 협력회사 제품 등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되도록 조언하고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주하거나, 특정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및 제품의 사용 등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연고 관계에 따른 봐주기식 계약이 관행화되었다.

정보화사업은 전문성·기술성 등으로 인해 사전에 발주처의 정보획득 여부가 사업수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은 사업개요, 예산규모 등의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정보를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하여 각종 업체는 각자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품제공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관련 사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었다.

- ○○전산관리소에서는 '01~'03년 기간 동안 사업비 2,86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장비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 요청서 작성시 기 납품된 장비의 구축경험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제품의 명기 및 특정계약 방식을 지칭하여 계약 집행

로비에 의한 발주기관의 계약자 선정

발주기관이 IT업체의 기술성, 사업수행 실적을 근거로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자격을 이중으로 제한하여 일부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의 발주기관의 가감점(10점) 조정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 ○○청 등 9개 공공기관에서는 '01~'03년도 사이 ○○전자 등 15개 컴퓨터 관련 업체로부터 660억원 규모의 컴퓨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사전에 담합, 낙찰 받는 대가로 관련 공무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구속 13, 불구속 2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시중의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예정가격의 기초자료에 반영하지 않고 낮게 형성된 거래 실례가격을 예정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저가입찰을 유도하거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시 가격위주의 낙찰자선정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덩핑입찰 및 시장질서 왜곡 등으로 정보화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였고, 심지어 나눠먹기식 계약관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업수행실적 검증시스템 미비

납품검사 시 관행적으로 청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납품규격과 중고품·중국산 등 저가조립제품 또는 성능미달제품의 납품 등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납품을 검수하거나, 납기 소급적용으로 지체상금 부과 등을 미이행하고,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업체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관행적인 부패가 상존하고 있었다.

- '01~'03년 ○○조합의 IT 관련 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외 ○○건 ○○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장 등 ○○명이 미국 등을 최단 10일 내지 15일간씩 업체의 부담으로 해외 출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조사한 5개 기관 공통 사항임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은 권고사항으로서 실태조사결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리(검사)가 20억원 규모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50% 이상이 비전문적인 자체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실적과 기술자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없는 관계로 업체에서 사업수행 실적과 기술자 경력을 과다허위작성 하여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유지관리상의 지속적인 부패발생

SI(시스템 통합)분야는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분야로 사업의 연속성을 빌미로 청탁과 함께 지속적인 향응 및 금품 제공이 발생하고, 업체에서는 무상 하자보수기간(통상 1년)이 끝난 후 유상유지관리 부문을 계약하거나 장비 고도화 사업시 직전 사업수행자로서 기득권 등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을 통해 현재의 입찰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정가의 50~90% 이하로 저가 투찰하여 우선 계약을 낙찰 받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

SI업체나 컨설팅 업체의 용역이 끝났을 때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되지 않아 시스템 운용에 대한 최초 수행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아 결국에는 유지관리업무에서도 유착관계로 발전되는 등 부패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

개 선 방 안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각 기관별로 당해 년도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내용,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매년 주기적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의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IT 내외부전문가들로 가칭 「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시스템 및 납품장비 선정의 적정성, 기타 사업계획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신설·운영토록 하였다.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시 내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 및 구성원 수 등을 표준화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표준화하고, IT업체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건실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경쟁 등의 입찰” 방법을 발주기관에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발주기관은 기구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유지관리 유상계약시 타 업체에게도 유지관리 계약참여 기회를 주는 등 수의계약 특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보화사업 관리제도의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감리수행 기관을 선정하며, 정보화사업 분야의 기술자관리를 총괄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마련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화사업 분야의 기술자 관리를 총괄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세부 운영지침』을 통해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토록 하였다.

윤리의식 강화

정보화 장비 및 시스템 용역 계약시 계약조건에 해외벤치마킹, 장비 및 시스템 사용 교육목적의 리베이트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토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5년3월19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권고하였다.

우리위원회의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재정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2단계 경쟁입찰 폐지 및 정보공개 의무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하였다.

이어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사업계획 사전 심의제, 개발프로그램 공개 제도, 정보화 사업 의무 감리제도 및 사업실적·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여 IT분야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IT분야 계약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배경

공기업의 청렴도는 '02년 6.08점, '03년 6.92점, '04년 8.44점(10점만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앙(8.49) 및 지자체(8.45) 수준보다 낮고,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조사('04.6)결과 46.4%가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사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특히 계약·공사감독·회계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제점

임원 선임과정 공정성 논란 소지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부처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즉,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대로 추천할 소지가 있었다.

- ※ 13개 투자기관 사장 중 관련부처 4, 자체 3, 정계 2, 기타2, 공석 2명
- ※ 정부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
(13개 도시개발공사 중 12개 기관에서 지자체 출신 사장 임명)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 제청(재경 부장관 협의) → 대통령이 임명하나, 공모절차 및 청렴성 검증절차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상임이사는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함으로서 투자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자율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산하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해당부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여 인사 청탁, 부당한 편의제공 등 업무상 유착할 소지가 높았다.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미흡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형식을 통해 사전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등 사실상 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공기업별 사규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적용 빈발 및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부패행위(3년간 총 4,419건)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93%)로 가볍게 처벌, 수십만원 금품수수도 기관별로 해임~경고까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시행까지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여 로비가 집중되어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출지원금 대출 업무를 수출금융팀 담당자가 접수, 대출, 사후관리까지 단독 처리(○○공사)하고 있었다.

계약,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 협력업체 선정, 관급자재 납품관련 편법지원 등 계약관련 부패가 여전하며,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규를 제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협력비 등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외로 변칙·허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임원 선임과정을 개편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 기준을 명확하게 실시하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장 선임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감사 선임시 공모제를 도입하되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렴성 검증을 위해 청렴위 협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임이사 선임과정을 개편하여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하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 제외, 전보 시 2단계까지 보직관리 등 전보관리를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승진 심사위원회에 감사실장이 참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13개 투자기관의 ‘징계양정기준’과 청렴위에서 권고한 (‘04.9.3)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을 통합하여 ‘표준안’을 마련, 재경부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2원화된 처벌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뇌물금액 등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기준을 마련(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삭제)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마련(공기업 전체), 민관협력사업(Project Financing) 업무처리지침 개정(○○공사),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기준 개정(○○공사) 등에 대한 사규 및 지침을 일제정비(총 16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위를 방지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공사), 송전협력업체 운영(○○)등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바.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5년 2월 28일 13개 정부투자기관 및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에 권고하였다. 해당부처에서는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하였고,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으며, 특히 환경분야는 비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하여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단속관련 부패실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풍속영업분야 단속관련 비리 빈발

풍속영업은 영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회 미풍양속의 건전한 성도덕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단란주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무도장·무도학원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업소는 관계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하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처분사항의 이행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행정처분 불이행 또는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시 가중처분)

그러나, 지역연고,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 등의 단속업무 기피로 위반행위가 증대하고 형식적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묵인 또는 단속편의 제공을 빌미로 업주와 공무원간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비리가 빈발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업소를 적발하고도 허가관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지도·단속 처리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이 문제되고 있고 적발·처벌된 업소에 대하여 조치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식품위생분야 단속의 비리 빈발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지도감독을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기피 또는 단속결과 무마 성격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수입신고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이 함유된 성분 신고누락과 정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자격신고 대행업자와 담당공무원간 유착, 수입식품의 정밀검사시 적합을 기대하는 수입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하여 수입대행사 등이 급행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었다.

환경분야단속 관련 비리 빈발

지도점검 담당자와 대상업소 간의 유착으로, 위반사항 묵인 등 부패사태가 빈발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처분 감경 및 과징금 대체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 부패 발생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 선 방 안

풍속영업분야 단속의 청렴성 제고

우선 온정적, 형식적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토록 하였고, 단속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풍속지도원」을 위촉하여 관계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단속업무의 체계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단속기준, 단속대상 선정, 단속방법, 단속결과처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풍속영업단속지침을 제정·시행하며, 지도·단속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관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식품접객 업종의 분류는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체 변퇴폐영업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담당공무원과의 유착 등 비리소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일반주점’으로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식품위생분야 단속의 청렴성 제고

식품위생 관련 전산시스템을 식약청과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연계, 공유하며, 지도·점검 실시전에 대상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을 공개하여 단속정보 누출 및 이로 인한 금품수수를 예방하며, 지도·단속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확인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민원처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업종을 신설 법제화함으로써 수입신고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식품의 품명 등 허위기재 신고, 식품에 사용불가한 성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시 허위·신고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환경분야단속의 청렴성 제고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전산망(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호한 감경조항, 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등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 하며, 민·관 합동단속을 전면확대 실시토록 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의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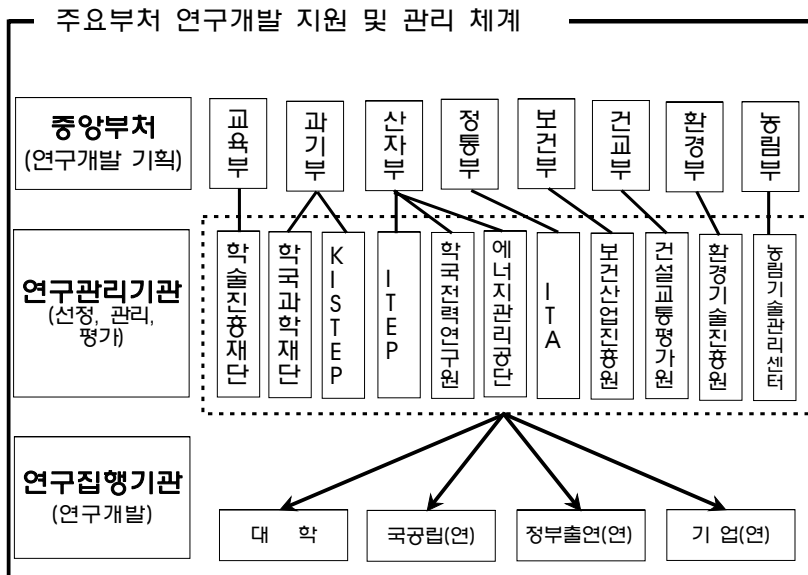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5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에 권고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단속·점검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대학이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대학은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이 미진하여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부정·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연구비 집행 전 과정의 관리시스템과 운용실태의 분석을 통해서 근원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연구비 통합과리를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각각 수주·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교 학칙 및 산학협력단 정관상으로는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적인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 관리기관을 산학협력단, 대학장, 지원연구부속실장으로 규정하는 등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관리의 체계성 부족으로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데 과제수행 교수가 연구비 집행시 형식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보고하거나, 단과대학 및 연구소 개별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각 대학은 규정에도 없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단과대학 및 대학 연구소에서도 장려금을 책임연구원에게 중복적으로 제고하는 사례 등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연구비 관리기관이 분리 되어 있어 대학본부나 산학협력단이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각 부처는 책임연구원에게 연구과제를 1~3건만 수주하게 하는 등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를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의 산발적인 연구관리 및 부처별 연구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연간 1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말함

연구비 부당집행 심화

2002.12월부터 사업별 연구비 카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관별, 과제별로 일부의 경우만 적용(45%)하고 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의 연구비는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 첨부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착수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책임연구원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 연구비 수령 후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취합·유용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과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을 취합하거나, 학과 총무가 참여연구원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여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미흡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및 부패방지 시스템이 미비하고, 대학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반사항 적발 사례 및 징계 건수가 미미하고, 연구비 사용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02년~'04년간 전국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관련 적발 사례는 단 11건 뿐이며, 이중 8명이 건책이하의 경징계에 그침

개 선 방 안

중앙 연구관리 체계 구축

대학별 연구비 관리규정상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산학협력단이나 연구지원과 등)하여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를 실시하고,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의 분리운영을 통한 연구비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연구과제 수주활동,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중앙관리기관에서는 각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체결, 기자재 구입 등 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전반적인 행정 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책임연구원은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관리규정에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참여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토록 조치하였다.

민간위원 공개모집 및 이행충돌 방지

각 대학에서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카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도 대학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대학별 연구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先 협약 및 연구비 지급, 後 계획서 수정, 첨부서류를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비 지급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문구를 대학 연구비 관리규정에 명시토록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다.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를 위해 대학내 감사부서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연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의 위 주요 감사 사항을 포함한 대학의 정기감사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내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32조의2(불이익추정), 33조(신변보호 등)의 내용을 반드시 게시, 홍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 발견 시 감사부서 및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발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3일 제도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에 권고를 하였고, 해당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대학연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송출과정에서 빈발하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출과정,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 분야 전반에 걸쳐 비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력 도입 및 출입국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표46>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14,835	3,790	3,284	2,642	2,115	1,561	1,443

※ '05. 7월말 기준, <자료 : 노동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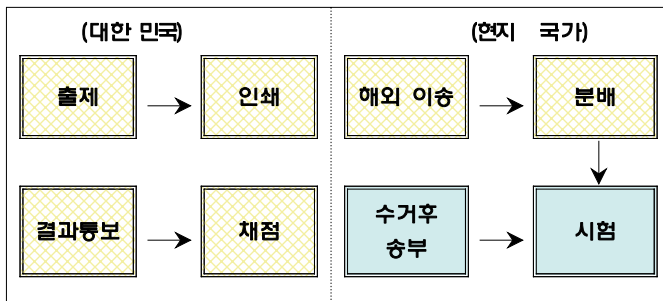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송출 단계의 비리방지 대책 미비

외국인 근로자 송출과 관련하여 비리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비리

통제가 어려웠으며 비리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송출기관의 제재기준도 미흡하였다.

또한, 한국어능력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출제부터 결과통보까지의 각 단계별 비리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시험문제 유출, 점수조작, 대리시험, 부정행위 등 시험시행 과정에서의 비리방지 대책도 미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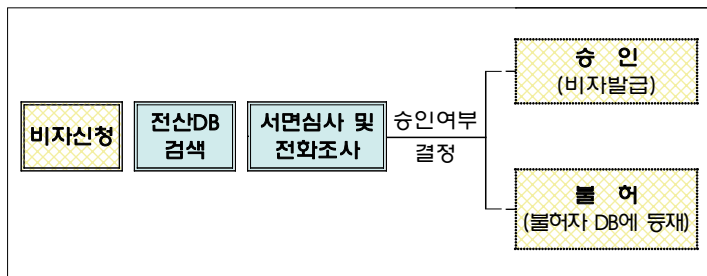
그림9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절차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의 비리통제 장치 미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과정에서 상급자의 불법 지시행위 및 뇌물 수수 후 발급사례가 빈발하고 사증발급 과정에서도 불법 사증 알선조직과 사증발급 담당자(영사, 고용원)간의 유착으로 불법 발급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심사 공무원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관리·통제장치가 미흡하였다.

그림10 사증심사 및 발급절차



출입국심사 단계의 부패통제 장치 미비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 금지자, 위조여권 소지자 및 사증 미소지자 등에 대한 상급자의 불법 출입국 지시행위, 심사관들의 뇌물수수 후 묵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또한, 허술한 보호일시해제 결정으로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관련 첨부서류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보호일시해제 조치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표47>

 외국인 입국거부 및 密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입국거부자	25,493	27,689	17,917	12,759
密출입국자	1,091	281	301	80

※ 입국거부자 수 '01년 대비 50% 감소, 密출입국자 적발인원 '01년 대비 93% 감소 <자료 : 법무부>

채류관리 단계의 부패통제 시스템 미흡

각종 채류관리 업무의 통제시스템이 미흡하고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의 투명성·형평성이 부족하여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과다 및 의례적인 법률 적용 관행으로 고발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 금액을 통고처분 하였으며 범칙금 양정기준도 불합리하였다.

부패예방 시스템 부재

법무부,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의 인력부족으로 자체적인 감찰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 적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무부 출입국업무 지침의 빈번한 개정 및 개별공문 형식의 하달로 인해 실무자들이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입·전입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아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선 방 안

외국인 근로자 송출 단계의 비리방지 대책 마련

첫째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로 MOU에 송출관련 비리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송출비리 발생시 제재하도록 하였다.

둘째 송출 관련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송출 일반사항, 근로자 모집, 선발 및 송출과정, 송출비용, 이탈율, 사업주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송출인력 쿼터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탈율 산정공식 제정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MOU에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제재기준인 ‘이탈률’ 산정공식을 제정하고 제재의 종류를 명시토록 하였다. 또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의 이탈률 20%는 제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험출제 및 인쇄과정, 시험지의 해당국 이송, 시험감독, 시험지 수거 후 송부, 채점 등 각 단계별 대책 및 제재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시행기관과 해당 송출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양성기관 및 어학원에 대한 유착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출비리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 및 면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국 후 적응기간(약 3개월) 경과 후 실시토록 하였으며 관련기관에서 송출국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및 현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였다.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의 비리통제 장치 도입

첫째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를 강화하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징계조치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 확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초청자·피초청자의 과거 범죄사실 등을 전산조회하여 출력물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사증 발급 적정 여부 자체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용하도록 하였다.

출입국심사 단계의 부패통제 장치 도입

우선 「심사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 출입국 심사관에 대하여는 입국규제대상자 적발률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징계조치에 반영토록 하고, 법무부의 자체 소속기관 업무평가 시 출입국심사업무 평가실적을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보호일시해제 관련기준을 정비하여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산정 기준을 법제화 하고 내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일시해제 여부에 관한 세부요건’과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법령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결정시 현행 계선 결정체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등 보호일시해제 관련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체류관리 단계의 부패통제 시스템 마련

첫째 체류관리업무 확인장치를 강화하여 체류관련 허가 신청자 중 승인 처리된 명단을 전산상의 불허사유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승인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둘째 출입국사범 고발기준을 법제화하여 불법입국 알선 등 중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세부 고발기준’을 하위 법령에 규정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칙금 양정기준을 정비·구체화하여 「범칙금의 양정규정」에 불법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알선자 수, 위반기간, 위반횟수 등의 양정기준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범칙금의 경감 및 가중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토록 하였다.

부패예방 시스템 강화

효과적인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공무원 신고 안내절차’를 상시 게시하고 부패방지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에 모든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을 게시하여 업무 관계자가 지침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5년 10월 25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에 권고하였고, 해당부처에서는 법령 등을 개정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2006.2.28, 산업자원부·노동부·중소기업청 권고)

추진 배경

중소기업은 신용도 및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의 속성상 금리 및 지원조건이 시중자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발생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정책자금의 부실율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문 제 점

부적격업체 지원 등 부당 자금지원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금액·지원조건을 위반한 부당 자금 지원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금지원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에 따른 투명성 미흡, 지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및 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에 기인한다.

또한 지원신청업체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배제 등 심사·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장치 및 지원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지원자금 용도의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지원자금의 용도와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수수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으나, 지원자금 사용내역 미확인,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실적관리시스템 미비, 위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등 부패통제기능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정책자금 부실화

부실채권의 증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조치 미실시 등으로 정책자금의 부실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미온적 처벌,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48>

 약정해지 및 부실채권 현황(단위 : 개, 억원, %)					
연도	약정해지 업체수	약정해지 금액	누적지원액 (a)	누적손실 예상액(b)	손실예상율 (b/a*100)
2002	178	633	20,601	893	4.3
2003	282	598	26,614	1,249	4.7
2004	410	794	31,576	1,784	5.6
2005	481	909	41,593	2,394	5.8

* 약정해지 :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당초 대출약정한 대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계약 해지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 배분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기관 간에 정보공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지원 여부 등 자금 지원현황 파악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지원조건을 차등화 할 경우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표49>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98~'04)				
구분	신규	2회	3~7회	8회이상
금액 기준	40.6%	20.2%	33.3%	6.0%
업체수 기준	71.3%	16.0%	11.9%	0.8%

자료) 중소기업청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괄조정 기능수행 미비 및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낭비요인이 존재하였다.

개 선 방 안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원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부당지원결정에 개입·관여한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였다.

지원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여 상호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기능 강화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위탁기관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부실채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대출사고에 대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고의·중과실이 밝혀질 경우 신분상 제재 외에 민사상 책임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정책자금 운용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정책자금 지원관련 유사·중복 사업 협의·조정, 정책자금 지원 통합 D/B 구축 등의 사업을 중소기업청과 중기특위가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6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 권고하였다. 해당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0

계약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방안

(2006.4.12,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공정위 권고)

추진배경

전반적인 행정분야의 부패는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납품·건설·의료분야에서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등 음성적인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기준 불명확, 단속체계 미비 등 부패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계약납

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영업정지 실효성 및 건설부패 관리시스템 미흡

감정기준은 재량권(내용회수 등에 따라 1/2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이 커서 위반업체는 영업정지기간 최소화를 위한 로비의 개연성이 높고 제재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영업정지 사유 발생시에도 제재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시기를 비수기로 조정하기 위한 로비 소지가 있었다.

건설산업 데이터베이스(KISCON)를 통해 건설업체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부적격업체 정보수집 및 적발과 행정제재 등의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통보의무가 없어 자체감사로 종결되고 있으며, 감독기관(건교부)의 처분관청에 대한 감정기준 적용여부, 처리기한,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금지규정 부재 및 행정제재 대상의 한계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리베이트 행위만 처벌하고,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약국의료기관등과 이루어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며,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 규정도 없었다.

리베이트 금지규정 미흡 및 불명확한 고발기준

동일사안의 불공정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각각의 구성요건을 적용하여, 양쪽 당사자를 처벌하여야 하나(공정거래법 제23조), 일방 당사자만 처벌하는 쪽으로 법규를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금품·향응·협찬금 제공 등 부패행위 성격의 사안에 대해 고발 없이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고, ‘부당 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는 시정명령 등으로 종료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고발기준 자체도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확성이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투명성 미흡

대·중소기업간 협력지수 산정의 주요항목이 기술지원과 현금결제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거래관계의 투명성 관련 항목은 미흡하였다.

※ 자동차전자부문 평가항목 50개중 투명성 관련은 ‘입찰결과 공개’ 1개)

개 선 방 안

뇌물수수 업체 영업정지 등 처벌의 실효성 제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정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영업정지의 제재시기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발생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건설부패 DB 및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구축

건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건교부 및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등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처분관청의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리베이트 관련 규정 정비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영업정지 및 제공자 모두 처벌하되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벌칙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제재 대상의 확대 및 처벌 강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리베이트 수수행위 관련자 모두 처벌

불공정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적용, 양쪽 당사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운용하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리베이트 수수규모나 상습성, 위반기간 등에 따라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구체화 하고, 부당고객유인 및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하여 고발 금액기준 설정, ‘중대한 위반’ ‘경쟁질서 현저히 저해’ 등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문구를 보다 명확화 하도록 하였다.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투명성 확보

협력지수에 ‘거래관계의 투명성’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기업청렴도 및 공개입찰, 청렴계약제 등 제도도입 여부 등을 추가보완토록 하였다.

추진 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12일 제도개선안을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고, 해당부처에서는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법령 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1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2006.11.30,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권고)

추진 배경

위원회 제도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 등을 거쳐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위원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참여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 제 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위원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외부위원을 관련단체 등에 일임 또는 할당하여 위촉함으로써 위원구성에 대한 신뢰성과 대표성이 미흡하고, 특정위원이 장기간 연임되거나 다수의 관련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됨으로써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위원의 부패행위 전력, 이해관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로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고 윤리성 확보와 부패 통제장치 미흡으로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화가 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 등이 위촉되어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위원회 운영시스템 문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미비로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등 유착사례가 발생하고, 위원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료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거나 서면심사로 대체함으로써 의결방식의 공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결과만 요약정리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권한남용 및 감독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부패사례가 발생하고, 감독기관의

영향력 행사 및 평가기관의 직원이 특정 사업자 선정을 유도하는 등 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 선 방 안

위촉 및 해촉기준 마련 및 윤리성·책임성 제고

부패행위 전력자나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는 위촉기준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위원 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하도록 하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및 인·허가, 중요한 정책결정, 정부 예산지원 등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 관련 규정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을 개설하여 위원회 운영 및 위원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민간위원 공개모집 및 이해충돌 방지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대외보안,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단(Pool)을 상당한 규모로 구성·위촉하도록 하였다.

장기간 연임 및 과도한 중복위촉을 제한하고, 지방의원은 이해충돌이나 영향력 행사 소지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 위원으로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하며, 단순한 정책 방향 결정이 아닌 인·허가, 중요정책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경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을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리참석이 불가피할 때에는 법령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 방식에 따라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명단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설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평가 또는 심의·의결하고 해산하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사전공개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권한남용 및 영향력 행사 제한

위원회의 불공정성 및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조건부과 또는 권한 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사건의 경우 심의기한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심의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시 대민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하게 관련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소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의 위원회에 감독부처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업무의 성격상 감독부처 공무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제시의견 등 참석결과를 기관장에게 서면보고하도록 하였다.

추진상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안을 2006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 등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말까지 「정부위원회 운영 통칙」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게 된다.

향후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노력을 강화하였으나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불법 현금화(카드깡) 등 불법사용이 빈발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되고 있어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제점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골프공 등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공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직원 회식용 고급양주를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법인카드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통제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현금화(카드깡) 및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현금 마련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제 거래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제하여 그 차액을 현금화하거나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소 등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클린카드」 지침을 위반한 편법사용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 제한업종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법인카드의 약 17% 정도가 클린카드로 전환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또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유흥업종을 사용제한 업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클린카드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법인카드 이용금액 분할결제 등 편법 회계처리

접대 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카드 이용금액을 분할결제하는 행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등 편법회계처리가 만연되어 있다

개 선 방 안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클린카드 적용 대상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는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하였다.

또한,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해 사용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였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내부감시 활성화를 위해 감사부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디자인을 특화함으로써 국민감시를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공공부문 법인카드와 민간 법인카드가 구별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대상 (FDS)에 공공부문 법인카드를 포함하여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 구축운영 토록 하였다.

법인카드 사용기관의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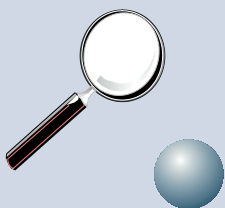
공공부문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과 신용카드사간 정보 공유시스템을 확립하고, 법인카드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확인·점검을 1차 자체점검, 2차 외부점검 등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물론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법사용자 소속 기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항목 및 시책평가항목에 클린카드 적용실태, 제한가맹점 이용현황, 전표관리 실태 등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선하였다.

추진 상황

청렴위의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재정경제부 등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2008년 4월 말까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제3장 추진중인 제도개선 과제

- 제1절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분야
- 제2절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 제3절 정부기업 민간위탁분야
- 제4절 기타분야

1

공공택지개발 분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 부풀리기, 개발정보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 보상과정에서 선심성 감정평가로 국고낭비 초래, 개발된 택지의 편법분양 등 각종 위법·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행위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및 국고낭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부정책의 안정성에 크나큰 해를 끼치게 된다.

면밀한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에 의한 공공택지개발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택지개발분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저렴한 택지공급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주택 분야 제도개선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 사회 저소득층 복지증진, 중장기적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중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고분양가 책정

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분양과정의 불투명으로 인한 특혜분양 및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고 임대주택의 형식적 관리로 인한 불법 양도·전매 등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각종 위·탈법 행위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훼손하고, 주택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대주택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반감 시켰다.

따라서 주택공급과정의 각종 규정정비 및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관리자로서의 책임성 재정립을 통한 공동주택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공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제도개선

최근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으로 퇴직공직자의 무분별한 재취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경유착청탁 등 부패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불법청탁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정부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저해, 특정업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특혜 및 편의 제공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높아진 국민의 윤리적 기대 수준과 선진국 사례 등 국제사회 추세를 반영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활동제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로비활동 법제화 관련 제도개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제3자를 통한 로비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비를 통한 이익추구 유혹이

상존하고, 불법·음성적 청탁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불법로비 및 게이트성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로비활동으로 인해 정부의사결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실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활동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를 통해 로비활동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음성적 청탁근절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및 부정부패 문제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는 국가의 재정 손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의 청렴도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인적 유착구조 개선,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며 국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분야 제도개선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수수료 과다 징수 및 금품 수수, 수탁기관의 검사결과 조작 및 부실 검사 등 편법적인 업무처리, 자격 미달기관 또는 특정기관의 수탁기관 선정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부패문제는 위탁기관의 관리부실 및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의 예산낭비 및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업무 전 과정의 관리시스템과 운용실태상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예산절감 및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개선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공공은 경매·보상·과세분야, 민간은 금융권 담보대출, 기업 자산평가 등의 근거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감정평가 업무가 평가업체와 발주자와의 유착, 평가에 대한 사전 협의, 허위과장 감정평가, 가격담합 및 감정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과다보상, 부실대출 등 각종 부패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각종 개발행위의 원가상승을 초래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정부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의 기준을 정립하고 절차를 개선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성 강화 등 감정평가 분야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국가예산 낭비,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투명성 제고 방안

국내자동차 등록대수가 '07. 2월 현재 1,600만대를 돌파하면서 가구당 1대씩의 자동차보유시대가 다가와 1가구당 약 6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금 부당 청구액이 급증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보험금 부당청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와 사회전반에 불신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유·공개 시스템 구축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사시스템 확립, 부당청구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등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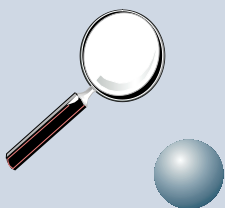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대행업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당청구, 대행료 과다계상, 금품 수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간대행업체의 각종 비리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주민 생활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행정에 대한 규정 정비 및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호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청소행정의 신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 1. 청렴위 권고과제 추진현황
- 2. 기관별 자율과제 추진현황
- 3. 제도개선 통보과제 추진현황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02.7.10, 행자) ▷ 일부이행 -지자체 반대	○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 등으로 평정자의 주관 및 정실 작용 ○ 심사의 주관성 개입으로 출서기 빈발, 발탁인사 명분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 객관적 인사기준 결여로 인사청탁 관련 부패 소지 ○ 차기 인사에 대한 예측하는 제도가 없어 청탁 등 비리 발생	○ 승진임용시 동료평가 등 다면평가 실시 의무화 ○ 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 (30%이상) ○ 6급이하 전보선정기준위원회 설치 ○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사에 고제 의무화 <조치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2. 교원인사 제도개선 ('02.7.10, 교육) ▷ 이행완료	○ 인사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교육감 영향력 하에 있으며, 외부인사도 전직교장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 저해 ○ 논문심사가 객관적인 평가체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 ○ 교장·교감 위주의 근무성적 평가로 정실인사 소지	○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광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 1인을 포함 -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공개 ○ 연구논문심사의 투명성 확보 - 교원논문자료를 중앙에서 일괄 DB화 하고 인터넷 공개 ○ 근무성적 평정시 「동료평가제」 도입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3. 공무원행동 강령 ('02.7.22, 행자) ▷ 이행완료	○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 미흡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제시 -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 선물·경조금 등 향응수수 금지 - 이권개입·청탁금지 등
4. 청소대행계약 관련 제도개선 ('02.10.7, 구로구) ▷ 이행완료	○ 오수 분노 및 정화조 청소 등의 계약관련 조례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패 소지	○ 사실상 독점을 초래하는 조례 단서 조항 삭제 <조치법령> ○ 구로구 오수분노및정화조청소대행계약에관한조례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5. 정치 및 권력 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02.10.8, 국회, 민 주당, 한나라당 등) ▷ 이행완료	○ 정치자금 수요측면에서 과다한 선거·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 ○ 정치자금 공급측면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체계를 제도적으로 방지 ○ 정치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정치자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미흡 ○ 권력형 부패와 관련된 인사검증 장치가 미비하여 부패공직자가 임명되는 문제 ○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권력이 국가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치부패 악화	○ 정치자금 수요 최소화를 통한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 ○ 정치자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 정치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 및 적발·처벌 강화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 권력형 부패 근절 대책의 병행추진 ○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조치법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6. 국민성금제도 개선 ('02.10.15, 복지· 행자) ▷ 이행완료	○ 기부금의 목적의 사용 및 사용내역의 공개실적 미비 ○ 기부금관리에 대한 사후 감독체제의 미흡 ○ 후원금의 목적의 사용 및 투명한 회계관리 미흡 ○ 후원금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 국민성금 모금과 사용에 대해 일반국민의 열람이 가능토록 상시 정보공개제체 구축 ○ 국민성금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주관기관에 보고 의무화 ○ 사용기부금 모금사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확인검증절차를 위한 외부회계 감사제도 도입 ○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등 <조치법령>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등
7. 탄기공사입찰 제도개선 ('02.12.6, 재정· 건교) ▷ 일부이행 -관련기관 협의중	○ 업체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심의과정에서 로비 및 위원의 전문성 결여 ○ 심사기준과 다른 개인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심사될 소지 ○ 입찰자 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변별력 상실 ○ 하도급자는 공사실행내역금액을 알 수 없어서 저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상설설계심의 기구설치 ○ 설계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 낙찰자 선정방식을 「先설계·後입찰 가격 공사 수행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 ○ 공사비 실행 내역서 공개 <조치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등 개정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8.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02.12.12, 재경) ▷ 이행완료	○ 현행제도가 조세범의 적발차원에 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탈세제보에 의한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이루어져도 고발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 불가 ○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 범죄조사와 일반세무조사를 불문하고 포탈 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 포상금 지급가능한 중요자료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 ○ 조세포탈금액 1억원 이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등 보상제한 제도 도입 <조치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 국제청훈령
9. 요양급여부정 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 신고 활성화방안 ('02.12.12, 노동복지) ▷ 이행완료	○ 기존 조사심사제도의 한계로 적발 확률 저조 ○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유인 미흡 ○ 요양기관들의 부정청구수법 다양화 치밀화	○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및 보상금제도를 통한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 수진자의 부정청구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 ○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서 발급의무 강화 <조치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 등
10.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03.4.16, 해수) ▷ 이행완료	○ 감척어선 선주의 타인 지배로 인한 이중 혜택 ○ 적발처벌의 실효성 미약 ○ 타인지배의 경우 실소유주와 매입자 관계의 실질적 확인 곤란 ○ 수산업법 위반자 처벌제도 관련 고발자 포상규정 불비	○ 감척사업 기수혜자에 대한 정보활용체계 구축 ○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입찰조건 강화(청렴 계약이행서 제출의무화) ○ 타인지배의 경우 어선매입자는 어업허가취소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강구 <조치법령> ○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집행지침 ○ 수산업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 과절차에관한규정 등
11. 병역특례제도 개선 ('03.7.14, 병무) ▷ 이행완료	○ 형식적인 추천제도, 지정업체에 대한 제량권 부여 ○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브로커 양산 ○ 특례자 선발요건 불합리 ○ 허술한 복무규정 악용사례 빈발, 부실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지정업체 선정과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심의기구 설치운영 ○ 병역특례 관련 정보공개 확대 ○ 4촌이내 친인척 및 지분보유자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특례선발제한 ○ 복무규정 위반업체와 특례자에 대한 적발 처벌강화 <조치법령> ○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등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12.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제도개선 ("03.7.29, 교육) ▷ 이행완료	○ 기존 박사학위 신고사항에 학위 과정수학내용·채류기간 등이 누락되어 진위여부 검증 불가 ○ 박사학위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구축 미비 ○ 비정상적인 학위취득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특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전무	○ 외국박사학위 신고요건 강화 ○ 외국대학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처에 제공 ○ 가짜 외국박사학위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토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조치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훈령)
13.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03.8.20, 중기) ▷ 이행완료	○ 물품 추천, 지정시 '제외대상'에 면피위한 사전 로비, 업체생산능력 현장조사 미흡 ○ 차등배정에 따른 구매기관과 조합의 유착 비리 상존 ○ 물량배정심의회 통제기능 미흡 ○ 처벌규정의 제량적 운영	○ 물품 추천, 지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물품 추천, 지정요건의 법리적 개선 및 현장조사 의무화 ○ 차등 배정제 개선 등 구매기관과 조합 조합원 유착방지대책 마련 ○ 물량배정심의회 등 물량의 불공정 배정에 대한 통제장치 현실화 ○ 비리조합에 대한 처벌 의무화 및 위반업체 조합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법령>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등
14. 정치자금제도 개선 ("03.9.3, 국회) ▷ 이행완료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적 규제장치 미비 ○ 불합리한 선거풍토 및 지구당 유지비 등을 위해 비합법적인 자금 모집 ○ 국고보조금 배정받은 이후 사용 내역 허위보고, 용도제한 규정 등 위반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 수입의 선관위 지정 예금계좌사용 - 10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정치자금 모금의 현실화 - 후원회 결성 허용범위 확대, 법인세1% 의무기탁 방안 검토 ○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및 지출통제 강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조치법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15.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03.10.14, 교육) ▷ 법령개정중	○ 학부모에게 정액할당 및 강제할당, 사용액 기재 누락 등 관리 소홀 ○ 발전기금을 정해진 기부 목적의 사용 ○ 학교발전기금 운영위반 발견시 신고장치 부재 ○ 불법찬조금 강제 모금이 성행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 미흡	○ 강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학부모로부터 각출하거나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 조정 ○ 사례 및 불법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 (홈페이지) 운영 ○ 위반학교에 대한 행정정책 제재 강화 <조치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
16.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03.10.22, 재경) ▷ 이행완료	○ 공급관리대상 관리 소홀 ○ 허술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관리 ○ 면세유 구입권의 장기간 유통으로 부정환급 발생 ○ 지도단속 실효성 및 행정기관간 연계 미흡 ○ 면세유 부정사용 처벌규정 및 포상금제도 미흡	○ 기관간 책임 명확화 등 공급대상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강화 ○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등 공급과정의 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간 연계 및 지도단속 강화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조치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등
17. 공사수의계약 제도개선 (03.10.30, 재경) ▷ 이행완료	○ 한 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끼워 넣어 2개이상 경쟁 입찰 위장 ○ 부당한 긴급복구공사 명목으로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일관성 및 투명성 결여 ○ 소액 수의계약 조항 악용	○ 수의계약시 견적제출을 원하는 전업체의 참여허용 ○ 긴급공사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 특정공사 등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소액수의계약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조치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18.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04.1.28, 건교) ▷ 이행완료	○ 사행시행과정 비리 빈발 ○ 골재채취 우선 허가조항 악용 ○ 골재채취 관리 감시장치 결여 ○ 행정정보 공개 폐쇄적, 특정업체에만 상세정보 제공	○ 청렴서약제 실시의무화 등 직영사업방식상 담합행위 방지 ○ 골재채취허가대상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민영허가방식 운영개선 ○ 골재물량 불법무단반출 방지위해 계중기 설치 의무화 ○ 표준반출증 제도 확립 <조치법령> ○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19. 교육분야제도 개선 (‘04.2.23, 교육) ▷ 일부이행 - 공공감사법률 개정추이 결과에 따라 진행	○ 불합리한 임용 및 임용절차 위반, 기간제 교원채용 급증으로 교육 질적 저하 ○ 국고보조금의 편중배정 및 예산산 공개제도 미흡 ○ 자체감사 부실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미흡 등 부패통제체제의 미비 ○ 사학법인 이사회의 밀실경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폐쇄성	○ 합리적 심사기준 제정 및 심사결과 공개 ○ 국고보조금 등 회계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실시(불법행위 적발 처벌 강화) ○ 사립학교법인 의사결정구조 강화 - 이사회 비리 견제장치 마련,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대학평가기준 등
20. 건축분야제도 개선 (‘04.2.23, 소방·건교) ▷ 이행완료	○ 건축위원회 운영의 불공정성 및 부실 현장조사에 의한 건축허가 로 공신력 상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를 시공과 관련없는 제3의 건축사를 지정 운영 ○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준이 법령에 불명확	○ 건축위원회 구성시 공무원 참여비율을 20%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 ○ 현장조사확인을 이해관계 없는 건축사가 대행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 ○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특급기술자 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 허위 현장확인조서 작성시 처벌조항 엄격 적용 <조치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법, 조례 등
21. 위생분야제도 개선 (‘04.2.23, 소방·식약경찰) ▷ 이행완료	○ 사업자등록시 명의위장(바지사장) 여부 확인과정에서 금품수수 ○ 허가업무를 공무원 1인이 처리하고 있어 업주와 유착 ○ 적발시 처벌을 감경하는 등 권한 남용 및 선거의식 단체장의 처벌 소홀	○ 현장확인시 2인1조 출장 공동확인, 현장점검 리스트 인터넷 공개 ○ 관계기관 합동교차 단속 실시하여 유착 차단 ○ 주간 예고점검 및 야간 불시비도출 단속 실시 ○ 위생업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단속실명제) <조치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법, 조례 등
22.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04.2.23, 건교) - 법개정추진중	○ 불필요한 시설허가로 불법행위 조장, 불법행위 통제를 위한 공 조체제 부재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의지 미흡, 불법행위 단속결과 부당 처리 ○ 담당공무원 부조리행위에 대한 처벌 미온적, 공직자의 불법용도 변경	○ 농업용시설 설치요건을 토지소유자로 제한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시설허가요건 강화 ○ 현행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만 부과되는 불법 행위에 이행장제금제도 도입 <조치법령> ○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에관한법률 등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23. 건설공사설계 변경 제도개선 ('04.2.26, 재경·건교) ▷ 일부이행 -07하반기 시행 예정	○ 설계의 사전 검토절차가 미비하여 설계변경이 일반화되는 부작용 ○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의단계 결정시 공무원의 재량소지가 많아 비리 발생 ○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개 규정이 없어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부패 소지	○ 설계감리 적용대상 공사를 종류·규모·특성별로 확대 ○ 설계변경 평가기준 법제화 ○ 설계변경시 신규공종에 대한 단기협의기준 마련 ○ 설계변경자료의 공개 의무화 <조치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4. 산지전용제도 개선 ('04.2.27, 산림) ▷ 일부이행 -추가검토중	○ '농림어업인' 판단기준의 불확실성 및 불명확한 규정 등에 따른 재량권 행사 ○ 불필요한 시설 인허가로 불법전용 행위 유발 ○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및 적발시 처벌규정에 불명확하여 재량 소지	○ 제출서류에 농지원부 첨부 의무화 ○ 전문가가 작성한 경사도 측정 제출서류 의무화 ○ 농림어업용시설 전용시 합리적인 전용규모 기준 마련 ○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변경시 변경승인 등 관련시설 사후관리 철저 ○ 신고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조치법령>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25. 농지전용제도 개선 ('04.2.27, 농림) ▷ 이행완료	○ 불합리한 입법운용을 악용한 부조리 빈발 ○ 형식적인 지도단속 등 부실한 사후관리 ○ 농지관리위원 구성운영의 객관성 저하 ○ 신고포상금제 운영제도 유명 무실	○ 용도변경운영 개선, 신고로 전용된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마련, 전용신고기준 개선 ○ 지도단속실명제 확행,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인터넷 등 공개추진) ○ 신청인과 위원 접촉배제를 위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개선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확대, 홍보강화 등 <조치법령> ○ 농지법시행령
26. 관광(단)지 지장개발 제도 개선 ('04.3.17, 문광) ▷ 법령개정중	○ 관광(단)지 지정과정의 통제장치 미흡, 불필요한 연구용역 비리 빈발 ○ 관광(단)지 사행시행자 선정과정 불투명 ○ 국고지원 기준 불명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허술	○ 관광심의위 설치운영, 관광지지정 검토기준 강화, 관광개발관련 연구용역 관리강화 ○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승인의제화 및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공개 등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조치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지개발및국고보조요령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27. 수출입통관 제도운영개선 ('04.6.7, 관세) ▷ 이행완료	○ 통관화물의 전산선별검사과정 관련 부조리 통제장치 미흡 ○ 화주관세사와 세관공무원 유착 비리 ○ 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 발생 ○ 보세화물 관리소홀 및 관리자 처벌 경미 ○ 불성실한 관세사가 업체와 유착하여 세액심사 부실화	○ 통관화물 전산선별과정의 부조리 차단책 마련 ○ 통관 관련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개선 및 홍보강화 ○ 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행위 방지를 위한 검사강화 ○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불시감사 및 부실보세사에 대한 누적처벌 규정 마련 ○ 불성실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제한 규정 신설 <조치법령> ○ 본부세관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 등 운영 규정
28. 부당수익계약 개선 ('04.7.2, 건교·토공) ▷ 이행완료	○ 수익계약 기준을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제정하여 수익계약 체결 ○ 공사직원의 부동산 수익계약 및 투기지역 토지분양 참여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익계약관련 사규 개정 ○ 상위법규 엄격 적용을 위해 '용역수익계약 집행기준' 폐지 ○ 소액공사 수익계약시 참여의사 있는 업체 모두 건적서 제출, 심사 <조치법령> ○ 한국토지공사 사규 개정
29. 농지조성비 부당환급제도개선 ('04.7.2, 농림) ▷ 이행완료	○ 환급신청 처리에 대한 현장확인 규정 미비, 환급절차를 위반한 부당 환급 결정 ○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부재	○ 전용농지의 허가 취소시 원상회복 명령 이행 ○ 환급결정시 현장확인 규정 보완 ○ 농지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에 한정 사용 ○ 농지조성비부과 및 환급관련업무 일제점검 <조치법령> ○ 환급업무처리규정 개정
30. 근로자직업 훈련 사업 제도 개선 ('04.7.2, 노동) ▷ 이행완료	○ 출결관리 시스템 부실, 취업률 산정기준 불명확, 부패적발을 위한 장치 미흡 ○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체제 미흡, 훈련법인 관리체제 미흡	○ 출결조작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시스템 개선 ○ 취업률 산정기준 등 훈련기관 평가체제 개선 ○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부정행위 조치기준 강화 ○ 훈련기관 평가시 경쟁요소 도입 등 부실 훈련기관 퇴출시스템 강화 <조치법령>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04.7.2, 과기) ▷ 이행완료	○ 연구개발사업이 소관부처별(20개)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과제중복 ○ 담당공무원 및 연구관리기관 직원이 과제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회에 영향력 행사하는 사례 발생	○ 연구기획과정의 통합조정체제 강화 ○ 신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합리적 평가운영시스템 확립, 평가결과의 투명한 공개 ○ 연구기관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조치 강화 <조치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 건설공사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개선 (‘04.9.10, 건교·재경) ▷ 이행완료	○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유착, 입찰 참가조건 및 감리수행능력평가 기준을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조정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에 대한 PQ평가기준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특정기술을 발주기준으로 선정 ○ 감리원 자격기준에 비리에 연루되어 파면된 공직자의 제재기준 부재	○ 감리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발주청의 임의조정 금지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시스템 개선 ○ 감리자 경력인정에 있어서 발주청 위주의 경력차별인정 금지 ○ 부정비리에 연루된 퇴직공직자 공공감리 참여 제한 <조치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33. 지방선거정치자금 제도개선 (‘05.2.25, 국회) ▷ 이행완료	○ 당선 후 선거비용 회수, 재산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청탁 등 비리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아 자부담률 높음	○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 ○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상시공개(관할 선관위 계시판에 3개월간 공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확대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등 선거공영 대상 확대 <조치법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35. 대외신인도 분야 개선 ('05.3.9, 재경·산자·복지·정통, 공정, 건교, 해수, 관세, 식약) ▷ 일부이행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에 대한 업계 반대	○ 물류 단계별 물류서비스 주체간 리베이트 수수 관행화 ○ 사업예산 등 사전정보 획득을 위한 각종 로비 치열 ○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처방사례비, 기부금, 할인할증 등 불투명한 거래 행위 지속	<수출입물류분야> ○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수출입물류 구성요소의 투명한 공개 ○ 하도급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등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타사 또는 화주 직접운송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 하는 등 독점적 지위 남용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 무 등록 불법행위 제재 강화 <의약품유통분야>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제도 도입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 강화 등 공정·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 강화 등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부조리 제재 강화 및 윤리프로그램 구축 <정보통신분야> ○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등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 2단계 경쟁입찰제도 폐지 등 저가입찰방지를 위한 법규 정비 ○ 정보화사업 의무감리제도 도입 ○ 사업실적 및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조치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국가계약법 등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36. 공기업분야 개선 ('05.3.18, 기예·재경·14개정투) ▷ 일부이행 -회계규칙 제정추진중	○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대로 추천할 소지 ○ 징계양정기준 불명확하여 자의적 적용, 형식적 뇌물제공업체 제재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위촉절차기준 명확화 ○ 관리감독부처 공직자의 산하기관 임원 재취업 금지 ○ 클린카드제 도입, 부패소지 사규지침의 일제정비 등 <조치법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
37. 대학연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05.3.23, 교육·과기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건교) ▷ 일부이행	○ 부처별 연구관리 시스템 연계미흡으로 100%를 초과하여 과제 수주 ○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 제출 ○ 연구비 지급 지연으로 개인자금 선집행 후 정산	○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 수주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근거 마련 <조치법령> ○ 대학(원)생인건비유용방지를위한규정 등
38. 단속·점검 분야 개선 ('05.3.23, 복지환경·식약경찰) ▷ 일부이행 -신규업종 검토중	○ 식품접객업종의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만성적 불법유발 ○ 객관적 기준 없이 대상업소 선정 등 자의적 단속	<풍속영업분야> ○ 주점영업형태의 업종 신설 및 시설기준지 억제한 강화 ○ 풍속영업관리위원회 및 명예풍속지도원제도 마련 <식품위생분야> ○ 수입식품검사업무의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제도도입 ○ 지도·점검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확인서' 사용 ○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환경분야> ○ 행정처분 감경과징금 대체요건 및 범위 구체화 ○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지도·점검결과 정보공개기준 마련 <조치법령> ○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39. 중소기업신용 보증 제도개선 ('05.8.2, 재경증가 신보기술신보) ▷ 일부이행	○ 동일직원에 의한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 보증심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 소지 ○ 보증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미공개 ○ 자동보증연장으로 인한 보증사고 빈발, 형식적 보증심사	○ 신용조사 심사자의 배정 ○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강화, 보증심사기준 공개 ○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 보증시한 연장시 보증 재심사
40. 세무분야제도 개선 ('05.9.4, 재경국세) ▷ 일부이행 -법개정검토중	○ 세무조사가 훈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영 ○ 조세법칙행위에 대한 엄벌주의가 소극적 법칙조사 유도 ○ 범죄조사 회부기준 및 고발기준이 비법규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영	○ 세무조사 관련사항 법제화 ○ 형벌규정 및 범죄유형의 합리적 조정 ○ 범죄조사 관련 기준, 절차의 법제화 <조치법령> ○ 국제기본법, 세무사법 등
41. 출입국관리 분야 제도개선 ('05.10.25, 노동- 법무·외교) ▷ 일부이행 -고발기준지침 보완중	○ 송출비리 빈발, 한국어능력 인증 시험 관련 비리 및 부정행위 ○ 사증발급 과정에서 브로커와 유착, 뇌물수수, 허위서류 확인 미흡 ○ 보호일시해제 남발, 보증금의 자의적 결정	○ 송출국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마련 ○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 통제 강화 ○ 보호일시해제 관련 기준 정비 등 <조치법령> ○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등에대한사증발급 인정사발급및관리에관한지침 등
42. 보험계약과정 리베이트근절방안 ('05.11.24, 금감위, 금 감원) ▷ 일부이행 -보험업법 개정 검토중	○ 대리점 경유처리 등의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한 구성요건 불비 ○ 과징금 부과기준에 재량 소지가 있어 부과실적 미미 등 처벌 실효성 저하 ○ 법률에 조사권한 위임없이 관련 협회에 조사행위 부여 문제 ○ 산출된 보험요율의 공시의무가 형식적, 보험상품 심사 적발사항 보완조치 부재	○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관련협회에 실시하고 있는 중요자료 조사 행위 감독기관 이양 ○ 보험요율 공개범위 확대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조치법령> ○ 보험업법, 과징금부과기준, 고발기준 등
43.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 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05.12.20, 교육) ▷ 이행완료	○ 물품구매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예산인력 낭비 초래 ○ 학교회계 관련 담당자 재정관련 직무회계교육 미흡 ○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미흡, 학교관계자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로비대상 ○ 사업채선정시 수익계약 등 불투명한 절차로 비리발생 소지 상존	○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물품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강화, 인솔지도 교사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 수익자 부담사업의 내역 공개 ○ 학교급식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44. 교육분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06.13, 교육·시도교육청) ▷ 일부이행 -교장중임 제한규정 검토중	○ 학교발전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학부모 등의 통제 곤란 ○ IMF 이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금 관행 여전 ○ 학교운영위와 학교가 운동부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여 선수 학부모로부터의 불법찬조금 모금 일반화 ○ 불법행위에 관련된 교원의 인사 관리상 한계, 온정적 처벌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 운동부 관련 대회출전경비, 용구구입비 등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학교운동부 관련 기부금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운영 ○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각급 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조치법령> ○ 초·중등교육법령, 발전기금회계규칙 등
45. 중소기업정책 자금지원관련 부패방지 제도개선 ('06.2.28, 산자·노동·정통·해수, 농림·문광·환경, 건교·과기·복지, 여성·중기·특허) ▷ 일부이행 -선정기준 검토중	○ 지원심사평가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결여,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 업체 미공개, 지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 사용내역 미확인으로 방만한 집행 초래, 위탁기관의 부패통제기능 미확보 ○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 지원기관간 정보공유체제 부재, 정책자금 총괄조정기능 미확보,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 자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세부 심사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 ○ 위법·부당사항 유형별로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불성실 실패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원업체 제재기준 마련 ○ 중기청 주관으로 정책자금 지원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조치법령> ○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등
46.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06.3.6, 교육부) ▷ 일부이행 -개선방안 검토중	○ 박사학위과정 허위출석 기재 및 과제대행 ○ 논문작성시 교수를 통한 논문대필 알선 또는 인터넷 논문 대필업체 이용 ○ 논문심사 등 학위수여의 대가로 금품제공(의대) 또는 거마비 제공	○ 학업여건을 감안하여 이수과정을 부분제 전일제로 구분 운영하는 등 학위 이수과정 합리적 조정 ○ 논문표절대필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명확화·구체화, 학위학술지 논문 종합 DB 구축 ○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조사기구(연구진 실성위원회) 설치 등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조치법령> ○ 고등교육법 등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47.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06.4.11, 행자) ▷ 일부이행 -지자체 반대	○ 승진전보시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 인사 빈발 ○ 금품수수 선거줄서기 등 위법한 승진사례 발생 ○ 정실에 의한 근무평정, 근무평정결과 비공개 ○ 특별임용대상자 내정 후 타 응시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채용비리 발생	○ 지방의회공무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 위원 확대 ○ 위법한 인사 확인시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근거 마련 ○ 근평결과 본인에게 공개, 그에 관한 이의 제기절차 도입 ○ 인사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이행상황 정기 점검평가 <조치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48.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06.4.13, 건교·산자복지공정위) ▷ 일부이행 -의료법 등 개정 검토중	○ 부패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 미흡 ○ 약국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규정 부재 ○ 기업납품과정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미흡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 배제 ○ 건설부패 DB 및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구축 ○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 리베이트 수수시 취득자 및 제공자 처벌 ○ 리베이트 수수규모, 상습성, 위반기간 등에 따라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구체화 <조치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의료법 및 시행령, 약사법 및 시행령, 공정거래법 등
49. 초·중·고교원 인사관련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06.5.2, 교육) ▷ 일부이행 -시도의견 수렴중	○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재임용되는 등 교장임용심사 부실 ○ 인사위원회 구성이 교육청간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부위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실질적 심의기능 미흡 ○ 교원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미흡으로 불안감 유발 및 인사청탁 사례 빈발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 구체적 명시, 초·중·고교장의 경우 2년주기 평가결과를 재임용시 반영 ○ 인사위 외부위원 확대, 일정수는 교원확보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위촉 ○ 지역학교 만기자, 전보예상인원 등 관련 정보 공개, 전보업무 등 처리를 위한 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등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50.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6.5.4, 문광, 영등위) ▷ 일부이행 -소관업무 이관예정	○ 영상물 등급심의 과정에서 소위 원에 대한 로비, 개발업자가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불공정비리 발생 ○ 경연대회 관련 무분별한 포상지원, 비리발생대회 지속 지원, 비리발생 대회 수상실적도 입시전형자료 사용 ○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건축주 브로커작가 유착으로 작가작품 설치 후 리베이트 수수	○ 부패연루자 위원선임 제한, 영등위 업무 청렴도측정 ○ 비리발생대회 일정기간 지원 제한, 심사위원 공개모집 ○ 작품공모제 실시한 건축주에 가점 부여, 미술장식품 설치관련업무 청렴도측정, 심의 위원의 당해지역 출품금지, 심의기준절차 결과 공개 등 가이드라인 마련
51. 법원경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6.5.4, 법원) ▷ 일부이행	○ 경매물건 정보의 제한적 공개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 ○ 경매물건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법원신뢰도 저하 ○ 기간입찰 운영의 제도적 기반 미비 ○ 수작업 경매로 인한 불투명성 및 부패요인 상존 ○ 집행관 충원운영의 불투명성	○ 경매물건 정보공개 확대로 금품수수 소지 차단 ○ 경매물건 정보제공 방식의 효율성 제고 ○ 기간입찰제도 활성화 ○ 전자경매제 도입 ○ 집행관 충원구조 개방 및 자격기준 강화
52.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06.11.17, 건교) ▷ 기한미도래	○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공개되어 원활한 심사통과를 위한 로비반발 ○ 심사위원에 대한 검증체계 미비로 부적격자 퇴출 제한 ○ 신기술 인증시 수의계약 및 제한 경쟁사유에 해당되어 적절한 검증없이 공사 수주 ○ 신기술 보유자가 공사진행에 필수 적인 기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공 ○ 부실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신기술 인증 로비예방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개 금지 ○ 심사위원에 대해 부패전력조회 등 윤리성 검증 ○ 건설신기술 사용 공사계약과정의 특혜 소지 제거 ○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시 연장 불허 등 제재 강화 ○ 부실 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장퇴출 유도
53.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06.11.30, 행자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 기한미도래	○ 위원회 윤리성 부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미흡 ○ 위원회 심의과정의 이익 충돌 및 투명성 부족 ○ 위원회 심의과정상의 자의적 권한 남용 ○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감독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	○ 위원선정과정에서 윤리성 검증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54. 사회복지 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06.12.11, 복자 여성) ▷ 기한미도래	○ 허위과다 신고 등 보조금의 불법 수령 및 횡령 ○ 기능보강사업 불법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이사 선임 방법 개선 ○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 금융재산 및 부동산 상시관리시스템 마련 ○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55. 주택 재개발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 방안 ('06.12.29, 건교· 광역) ▷ 기한미도래	○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자금소요를 가중시킴으로써 업체들 사전개입 ○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들의 선정 기준 등 미비로 부패행위 빈발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비전문성 및 부패고리 역할 ○ 추진위조합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 참여업체들의 선정사가 기준절차 등 명확화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 ○ 대의원화감사위원회 의무화 등을 통한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화
56.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제도개선 ('07.2.20, 방재청,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 기한미도래	○ 피해규모의 부풀리기 조작 등 허위 신고 ○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계약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규정을 악용한 예산낭비 ○ 재해복구비를 다른 용도로 부당 사용 ○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국고낭비 등 부작용 초래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57.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7.6.21, 광업진 흥공사) ▷ 기한미도래	○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용자 ○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부실용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 미약 ○ 위반업체 지원금지 등 사후관리 제도 미비 등	○ 시설자금 용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용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제 목 (권고기관, 일시)	문제점	권고내용
58.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07.8.7,보건복지부) ▷ 기한미도래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불명확 ○ 현지조사 대상 선정조사과정의 공정성 미흡 ○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제재 실효성 미흡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명료화 ○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 투명성 제고 ○ 전 국민에게 진료내역 통보 및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위법행위 제재실효성 제고
59.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제도개선 권고 (‘07.8.29,산자부) ▷ 기한미도래	○ 사업비 조달능력 등 사전심사체계 미흡 ○ 유사중복사업 조정통합장치 불비 ○ 복잡 다기한 사업규정 및 법적 구속력 미흡 ○ 사업비 집행 및 계약업무 관리체계 미비 ○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형식적 점검 및 관리소홀 ○ 제재조치에 대한 법작근거 및 형평성 결여	○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심사강화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마련 ○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60. 공공기관 법인 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권고 (‘08.10.전 공공 기관) ▷ 기한미도래	○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 ○ 카드깡 및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 사용 ○ 클린카드 지침을 위반한 편법 사용 ○ 법인카드 이용금액 분할 결제 등 편법 회계처리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불법사용 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2

기관별 자율과제 추진현황

'02~'06.12월말 총 1,531개 과제, 이행완료 1,112건, 일부이행 및 이행중 419건

■ 기관별 과제내역 총괄표

중앙행정기관						사도 및 사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재경부	4	국세청	45	공정위	5	서울시	45	서울교	11	조폐공사	5
교육부	8	관세청	31	금감위	2	부산시	29	부산교	20	석탄공사	2
통일부	4	조달청	22	고충위	4	대구시	25	대구교	27	한국전력	45
외교부	3	통계청	1	비기위	3	인천시	2	인천교	9	KOTRA	9
법무부	11	대검찰청	24	청취년	1	광주시	18	광주교	6	광업공사	7
국방부	14	병무청	40	인사위	3	대전시	27	대전교	8	농수산물 유통공사	12
행자부	6	방사청	2	국조실	2	울산시	6	울산교	8	농촌공사	18
과기부	17	경찰청	15	기예처	4	경기도	19	경기교	14	주택공사	56
문광부	7	소방청	3	법제처	1	강원도	26	강원교	3	수자원공	13
농림부	65	기상청	8	홍보처	3	충북도	12	충북교	9	도로공사	63
산자부	7	문화재청	6	보훈처	7	충남도	12	충남교	16	관광공사	58
정통부	77	농진청	2			전북도	7	전북교	13	토지공사	11
복지부	14	산림청	13			전남도	50	전남교	9	석유공사	11
환경부	17	중기청	11			경북도	38	경북교	21	철도공사	15
노동부	31	특허청	7			경남도	18	경남교	16		
여성부	6	식약청	22			제주도	22	제주교	3		
건교부	45	행복청	10								
해수부	20	해경청	4								
계	356	계	266	계	36	계	356	계	193	계	325
중앙행정기관 계 : 657건						지자체 계 : 549건				공기업 계 : 325건	

■ 중앙행정기관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	재정경제부	1	서화·공동품의 업무관련기준 명확화	04	완료
2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	완료
3		3	수계약과정의 투명성 증대	“	완료
4		4	국가계약제도에 상설계변경과정의 투명성 증대	“	완료
5	교육부	1	사학비리 제도개선	04	완료
6		2	대입전형비리 제도개선	“	완료
7		3	대학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공개	“	완료
8		4	학부모 감사청구권제 도입	“	추진중
9		5	사립중등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	“	완료
10		6	예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	완료
11		7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	추진중
12		8	학업성적관리 제도개선	“	완료
13	통일부	1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운영개선	04	완료
14		2	국민참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확보	06	·
15		3	남북사회문화협력기금지원제도 개선	“	·
16		4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	“	·
17	외교통상부	1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관련 비리방지대책	04	완료
18		2	재외공관의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	“	완료
19		3	재외공관 외교활동비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06	추진중
20	법무부	1	민간분야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04	추진중
21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	완료
22		3	부패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강화	“	완료
23		4	형(구속) 집행정지 건의제도 개선	“	완료
24		5	영치금 관리방법 개선	“	완료
25		6	수용자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06	완료
26		7	벌과금 수납제도 개선	“	완료
27		8	수용자 신문구독표 인출·납부방법 개선	“	완료
28		9	수용자 우송금 접수증명방안 개선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9		10	변호인 접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접견실 구조개선	“	완료
30		11	수용자 장소변경접견 개선	“	완료
31	국방부	1	군인복지기금 운용개선	04	완료
32		2	예비군지휘관 임용 결격사유 법률상 명문화	“	완료
33		3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자 벌칙조항 보완	“	완료
34		4	정보체계 획득절차 개선대책	“	완료
35		5	자동화 정보체계 획득(감리시스템)개선	“	완료
36		6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장비도입관련 세부규정 발전	“	추진중
37		7	소액 수의계약 제도개선	“	완료
38		8	군 시설공사 등의 부실 별점 규정제정	“	완료
39		9	임기제 진급제도 운영개선	“	완료
40		10	설계/감리용역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개선	“	완료
41		11	전세자금 심의 보완	06	.
42		12	투명한 장비유지비 집행	“	.
43		13	병 봉급 중앙지급	“	완료
44		14	계약업무 전산화	“	완료
45	행정자치부	1	지방계약제도 개선	04	추진중
46		2	자치단체 자치조직권 신장	“	완료
47		3	주민등록전산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개선	“	완료
48		4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완료
49		5	비리공무원 퇴직연금제한 확대 추진	04	완료
50		6	전자공청회제도 도입	06	추진중
51	과학기술부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마련	04	완료
52		2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	완료
53		3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시범평가 실시	05	완료
54		4	신기술인증제도 통합	“	완료
55		5	시험분석료 예치금제도 개선	06	완료
56		6	박사후 연구원 급여체계 정비	“	완료
57		7	구매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	완료
58		8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 구축	“	완료
59		9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시범실시	“	완료
60		10	인터넷 구매제도 도입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61		11	구매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DB 구축	06	완료
62		12	객관적 원가계산을 통한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보	“	완료
63		13	외자장비 구매제도 개선	“	완료
64		14	투명하고 간소한 인건비 관리제도 개선	“	완료
65		15	물품대금 결재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	완료
66		16	고정자산의 책임관리를 위한 바코드 도입과 연구장비 전주기 전산시스템 구축	“	완료
67		17	투명한 구매단가 계약업무 개선	“	추진중
68	문화관광부	1	문예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04	완료
69		2	영화업신고 관련업무 제도개선	“	추진중
70		3	국고보조금 관리 개선	“	완료
71		4	스크린경마게임의 사행성 개선	“	추진중
72		5	공연장비 및 물품대여 업무 제도개선	05	완료
73		6	보조금 사업관리 개선시스템 구축	05	완료
74		7	국립국악원 예술단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06	완료
75	농림부	1	쓰레기 유발부담금 이의처리 과정 개선·정비	04	완료
76		2	축산식품 단속제도 개선	“	완료
77		3	농협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	완료
78		4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등 제고	“	완료
79		5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사항 개선	“	완료
80		6	불합격 검역물의 세부처리요령 및 절차개선	“	완료
81		7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 민원 처리기간 세분화	“	완료
82		8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선	“	완료
83		9	부실관리 조치에 대한 시정지시사항 개선	“	완료
84		10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품목 민원사무처리 투명화	05	완료
85		11	검사처리절차를 시스템화하여 투명한 검역질서 확립	“	완료
86		12	농림사업자 부담금 집행업무 처리개선	“	완료
87		13	물품구매시 수의계약제도 개선	“	완료
88		14	농축산물 수출입신고를 세관신고로 일원화	“	완료
89		15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그룹분류기준 개선	“	완료
90		16	PDA를 이용한 원산지 단속상황 현장보고 시스템 구축	“	완료
91		17	판매업체용 원산지표시 매뉴얼 홈페이지 게시	“	완료
92		18	재래시장전담제 실시로 원산지 표시율 및 청렴도 제고	06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93	농림부	19	원산지 시료수거비용 지급처리방법 개선	“	완료
94		20	일련번호 및 사건번호를 기재토록 원산지 표시조사 확인서 서식 개선	“	완료
95		21	채종포장 부적정 선정방지 대책	“	.
96		22	과태료 처분시 이의신청방법 개선	“	완료
97		23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자 의견진술 안내제도 개선	06	완료
98		24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완료
99		25	중자시료 수거시 수거시료에 대한 가격보상	“	추진중
100		26	축산물 가공업 자가검사자의 자격요건 완화	“	완료
101		27	가축축산물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대상 확대	“	완료
102		28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	완료
103		29	자체 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 보관기간 단축	“	완료
104		30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 지정 신청시 요건 완화	“	완료
105		3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영업자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	“	완료
106		32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기준 완화	“	완료
107		33	가축계열화사업 대상자의 신청기준 개선	“	완료
108		3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방법 개선	“	완료
109		3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방법 개선	“	추진중
110		36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개선	“	완료
111		37	표준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구입 세무계산서 발급확인제도 구축	“	완료
112		38	친환경 농산물 전문인증기관 지정확대 및 사후관리체계개선	“	완료
113		39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선	“	추진중
114		40	동물용의약품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활성화 및 사전심의회 제도 도입	“	완료
115		41	수입축산물 신고 이의제기 용이성 제고체계 구축	“	완료
116		42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 관리방법 개선	“	완료
117		43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사료는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	“	완료
118		44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개정	“	.
119		45	연구과제 선정심사 및 연차평가시 유사 중복성 검증 강화	“	.
120		46	다수과제 연구수행자에 대한 관리 강화	“	.
121		47	농림기술개발사업 감사지적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강화	06	.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22	농림부	48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매수도매의 범위규정 명확화	“	.
123		49	지역발전특구의 종자업 등록 규정완화 개선	“	완료
124		50	종자위원회 위원자격의 구체화	“	완료
125		51	종자위원회 분쟁조정 공정성 강화	“	완료
126		52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	추진중
127		53	농기계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완료
128		54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완료
129		55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등의 지정제도 개선	“	완료
130		56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사례집 제작, 배포로 원산지 표시 효율성 제고	“	완료
131		57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으로 민간신고 활성화	“	완료
132		58	검사 제외 가공품 확인방법 개선	“	.
133		59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류 검사방법 개선	“	.
134		60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개선	“	.
135		61	공사감독 및 검사 공무원의 복수지정 운영	“	완료
136		62	PDA를 활용한 종자유통 조사방법 개선	“	추진중
137		63	출원품종 재배시험 종자시료 인수방법 개선	“	완료
138		64	축산물 수입신고 및 동물의약품 제조허가업무 청렴 HACCP 제도 도입	“	완료
139		65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독성, 효력)시험계획서 검토기간 설정	“	완료
140	산업자원부	1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체제 개선	04	이행
141		2	전가가스승강기 등 검사업무 투명성 제고	“	이행
142		3	유공자 선정·포상업무 투명성 제고	“	이행
143		4	인증업무(NT/EM)의 공정성 제고	“	이행
144		5	인증업무(KS)의 공정성 제고	05	추진중
145		6	신제품 인증업무의 투명성 제고	06	추진중
146		7	기관인정제도의 처리과정 투명성 제고	“	완료
147	정보통신부	1	세출예산 집행절차 개선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04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48	정보통신부	2	우체국공금 횡유용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	완료
149		3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패 유발요인 해소	“	완료
150		4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완료
151		5	공직자의 직무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	완료
152		6	정부구매카드 집행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완료
153		7	금융사고예방 위험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05	완료
154		8	국제우편물 관세 및 통관회부료 누수방지	“	완료
155		9	정부구매카드 상시감사시스템의 운용 활성화	“	완료
156		10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관리 개선	“	완료
157		11	정보통신기기 시험 및 인증제도 개선	“	완료
158		12	MP3운동 강력 추진	06	완료
159		13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 구축	“	추진중
160		14	보험사기 및 범죄예방	“	완료
161		15	정보화 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	완료
162		16	민원 A/S Call 전담요원 지정 운영	“	완료
163		17	전파환경측정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완료
164		18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관리개선	“	완료
165		19	인터넷 뱅킹을 통한 환급금 대출 제도개선	“	완료
166		20	지도실장 활동 극대화 방안 강구	“	완료
167		21	취약분야 대민업무 해피콜 시행	“	완료
168		22	우편요금 누수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	완료
169		23	계약 택배 소통단계별 확인행위 강화를 통한 절취사고 근절	06	완료
170		24	2인이하 관서(우체국) 사고예방 대책	“	완료
171		25	상시감사팀을 활용한 사고예방 강화	“	완료
172		26	전산상시연계감사시스템 구축 운영	“	완료
173		27	현업관서 소액공사 예산 청구 및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방안	“	완료
174		28	무선국 감사업무 정보제공으로 대민업무 투명성 강화	“	완료
175		29	유선방송사업자 편의 위주의 허가, 검사 및 투명성 제고	“	완료
176		30	G2B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활성화로 회계업무 투명성	“	완료
177		31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행정 강화	“	완료
178		32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완료
179		33	무선국 허가, 검사등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고객편의 증진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80	정보통신부	34	시설공사 집행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거	“	완료
181		35	불법 소프트웨어 상시 단속에 따른 부정부패 일소	“	완료
182		36	정보통신 현장처리 업무의 취약요인 제거	“	완료
183		37	무선국 허가민원의 적정처리방안	“	완료
184		38	취약자 관리 프로세스 개선	“	완료
185		39	전자금융사고 예방 상시체크 지침 마련	“	완료
186		40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 대상장비 실사 강화	“	완료
187		41	우체국 금융 고객정보 보호 강화	“	완료
188		42	민원인을 위한 Clean 식권제도 도입	“	완료
189		43	전자계약 도입·운영	“	완료
190		44	지적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관급자제 계약 및 검수업무 개선	“	완료
191		45	기성·준공검사시 하도급업체 입회로 공사관련 분쟁 최소화	“	완료
192		46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시행	“	완료
193		47	비공식 만남 제한방침 홍보	06	완료
194		48	연구비 집행위 투명성 강화	“	완료
195		49	과제선정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	“	완료
196		50	과제탈락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완료
197		51	IT복플렉스 조성 관련 부패방지 노력 강화	“	완료
198		5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위원회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	완료
199		53	개인정보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도입	“	완료
200		54	스팸신고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시스템 구축	“	완료
201		55	정보화교육 지원기관 선정 온라인 시스템 개발	“	완료
202		56	과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완료
203		57	고객에 대한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화	“	완료
204		58	전략적 성과평가시 청렴도평가 도입	“	완료
205		59	내부실사시스템의 체계화	“	완료
206		60	전자구매 시스템 도입	“	완료
207		61	업무안내 및 대출거래내역 전송서비스(SMC)도입	“	완료
208		62	외부전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	완료
209		63	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	완료
210		64	비상근 사외이사 선임	“	완료
211		65	통합민원 알림서비스를 통한 고객불편 해소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12	정보통신부	66	SW출장감정에 따른 부조리 방지대책	“	완료
213		67	불량업체의 삼진아웃제 도입	“	완료
214		68	조사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	완료
215		69	우편취급소 등기우편물 1일 접수물량 제한	“	미이행종료
216		70	우편집중국 다량접수 우편물 접수검사 강화	“	미이행종료
217		71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방안	06	완료
218		72	징계업무 형평성 제고방안	“	완료
219		73	우편물 분실사고 예방활동 강화	“	완료
220		74	전자민원 활성화를 통한 고객 편의 및 접수수 수료 투명성 제고	“	완료
221		75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 합리성 제고	“	완료
222		76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	완료
223		77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적 경쟁력 강화방안	“	완료
224	보건복지부	1	식품위생감시업무의 교차 및 합동단속제도 도입	04	완료
225		2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대표권에 대한 제한	“	.
226		3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	완료
227		4	사회복지시설회계 통합시스템 구축	“	.
228		5	농어촌 숙박시설(펜션) 개선 대책	“	.
229		6	R&D 정부출연금 지원 투명화	05	.
230		7	고위공직자 3급3범 실천강령 제정 및 청렴약정 체결	06	완료
231		8	e-감사시스템 구축	“	.
232		9	민원처리 청렴도만족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	“	.
233		10	민원처리 1-3-3-0 시스템 도입	“	완료
234		11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	.
235		12	민·관 합동기강점검반 운영	“	.
236		13	의약품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 율규약	“	.
237		14	주요 정책사업 10대과제 모니터링 도입	“	.
238	환경부	1	배출업소 행정처분기준 감경범위 명확화	04	완료
239		2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 개선	“	추진중
240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	추진중
241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경제제도 도입	04	완료
242		5	포장폐기물 관련 포장기준 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등	“	완료
243		6	사전환경성검토서 구비서류 간소화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44	환경부	7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실적인정기준 개선	“	완료
245		8	환경영향 평가협의제도 개선	“	완료
246		9	사전환경성 검토업무의 투명성 제고	05	추진중
247		10	환경인증 수수료 고지를 통한 투명성 제고	06	완료
248		11	폐유 보관시설 설치기준 및 방법개선	“	완료
249		1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교부기간 일원화	“	추진중
250		13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서 작성방법 및 규격개선	“	완료
251		14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 절차 개선	“	완료
252		15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교부절차 개선	“	완료
253		16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처리기간 단축	“	완료
254		17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민원 현지 출장확인제도 실시	“	완료
255	노동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 명확화	04	완료
256		2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지정시 재량권 축소	“	완료
257		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개선	“	완료
258		4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업무 개선	“	완료
259		5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업무 개선	“	완료
260		6	C.B.T(Computer Based Test) 검정 도입	“	완료
261		7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	완료
262		8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체계 개선	“	완료
263		9	성능검증업무 투명성 제고	“	완료
264		10	진료비·약제비 심사업무 개선	“	완료
265		11	창업지원결정 업무의 간소화	04	완료
266		12	훈련과정 승인기준 및 절차 개선	05	완료
267		13	공탁금 세입처리 전산화	“	완료
268		14	능력개발사업회계 제도 개선	“	완료
269		15	가지급금 제도 개선	“	완료
270		16	직원 해외연수제도 개선	“	완료
271		1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절차 개선	“	완료
272		18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와의 유착관계	“	완료
273		19	직무관련자 청렴행동을 위한 제도개선	“	완료
274		20	KOSHA 자율안전클럽 업무수행절차 개선	06	완료
275		21	공단사업수입금 관리제도 개선	“	완료
276		22	간병인 금품수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77	노동부	23	진폐환자 취미활동반 운영 관련 금품수수행위 방지	“	완료
278		24	산업안전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	완료
279		25	산업안전 옴부즈만 구성·운영	“	완료
280		26	관련분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완료
281		27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을 통한 재량행위 투명화	“	완료
282		28	출석요구시 서면자료 우선 제출요구	“	완료
283		29	참고인 조사시 2인이상 공개조사	“	완료
284		30	재해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	완료
285		31	재해조사결과 처리에 대한 DB화	“	완료
286	여성가족부	1	관외출장 이행확인 증빙서 구비지침 마련	06	완료
287		2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완료
288		3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마련	“	완료
289		4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완료
290		5	부모모니터링단 전국 확대 설치	“	완료
291		6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 관련 시스템 구축	“	완료
292	건설교통부	1	감리원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04	완료
293		2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	완료
294		3	기성대가 신청시 전차 하도급대금수령확인서 첨부	“	완료
295		4	건설신기술지정 심사 진행사항 공개	“	완료
296		5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완료
297		6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추진중
298		7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	“	완료
299		8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개선	“	완료
300		9	하천점용료 징수체계 개편	“	추진중
301		10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제도 개선	“	완료
302		11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대책기준 정비	“	추진중
303		12	택지개발예정지구 투기방지(협의양도택지관련) 대책	“	·
304		13	주택합의 설립인가기준 명확화	“	추진중
305		14	국민주택기금 대출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제고	“	·
306		1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감리지정기준 관련) 개선	“	완료
307		16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완료
308		17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09	건설교통부	18	불법행위 처벌의 엄정성 확보	“	완료
310		19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	추진중
311		20	토지이용규제개혁	“	추진중
312		21	부동산 중개거래 투명화	“	완료
313		22	토지거래허가의 사후 실효성 확보	04	완료
314		23	산업단지 공공녹지 확보기준 완화	“	완료
315		24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완료
316		25	한국토지공사 수익계약 제도개선	“	완료
317		26	토지거래허가업무 복합민원 처리	“	완료
318		27	자동차공제 보상 관련 부조리 개선	“	완료
319		28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안 개선	“	완료
320		29	지입제 폐단 해소를 위한 개별허가제 시행	“	완료
321		30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추진중
322		31	국도유지보수공사 발주방법 개선	05	완료
323		32	뇌물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신설	“	완료
324		33	과적을 지사요구하는 실질적 과적행위자 처벌근거 마련	“	완료
325		34	수익계약 금지대상 범위 확대	06	완료
326		35	하도급공사 정보망 구축	“	추진중
327		36	건설공사 PQ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완료
328		37	설계변경 심의의 객관성 확보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	완료
329		38	건설공사 감리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	.
330		39	화물자동차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추진	“	추진중
331		40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	“	추진중
332		41	도로점용 가능여부 사전 정보공개	“	완료
333		42	도로점용 관련 표준설계도면 사전고시	“	.
334		43	도로전용 불허처분 이의신청 제도 도입	“	완료
335		44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중합정보망 구축	“	추진중
336		45	안전진단용역 e-보고서 작성 및 진단실명제 도입	“	완료
337	해양수산부	1	수산업협동조합 부조리 근절 대책	04	완료
338		2	항만·어항공사 부조리 방지 대책	“	완료
339		3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완료
340		4	민자협상을 위한 모형개발 및 DB구축	“	완료
341		5	낙도보조항로 운영개선	“	.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42	해양수산부	6	수산물검사관련 제도개선	“	완료
343		7	선박주기관 개방검사 관련 제도개선	“	완료
344		8	해양수산분야 연구용역사업 사전 심의기구 운영	“	완료
345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	완료
346		10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제도개선	“	완료
347		11	항만-어항 공사 및 장비 계약관리	06	완료
348		12	항만시설 사용허가	“	완료
349		13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	완료
350		14	불법어업 지도점검 업무	“	.
351		15	수협중앙회 예산낭비 및 부패발생 차단	“	.
352		16	해양사고 조사 불요처분	“	.
353		17	일반수로조사 업무	“	.
354		18	항만시설 사용승인	“	.
355		19	선박폐유 수거업무	“	.
356		20	선박검사업무 제도개선	“	완료
357	국세청	1	조사인력 Pool 제 도입	04	완료
358		2	청렴유지 서약제 도입	“	완료
359		3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도의 철저한 시행	“	완료
360		4	세금포인트제를 통한 건전납세풍토 확산	“	완료
361		5	물납주식 공매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명확화	04	추진중
362		6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요건 명확화	“	추진중
363		7	완전한 전자신고의 실현을 통한 수동제출서류 폐지	05	완료
364		8	부정주류 단속시스템 개선	“	완료
365		9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강화	“	추진중
366		10	납세서비스 제고를 통한 부조리 발생차단	“	완료
367		11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절차 간소화	“	완료
368		12	납세증명서의 비정상적 발급사례 방지	“	완료
369		13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집행가능의 분리를 통한 조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	완료
370		14	세무협력단체 비리관련 직원의 공개를 통한 부패척결	“	추진중
371		15	주식변동조사, 양도세 무신고자 등 조사관리체계 개선	“	추진중
372		16	예비 지도조사제도 도입으로 부조리 유발요인 제고	“	추진중
373		17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	“	추진중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74	국세청	1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실태조사 제도개선	06	완료
375		19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시스템 개선으로 부조리요인 차단	“	완료
376		20	조세특례 자가점검표를 통한 법인세 감면오류 사전차단	“	완료
377		21	조사반 수시 교체·편성 제조회	“	완료
378		22	세무서 조사조직을 팀제로 전환하여 부조리 유발 요인 제거	“	완료
379		23	조사분야 심사분석 평가시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	“	완료
380		24	월별 조기환급신고가 수동신고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업무개선	“	완료
381		25	신용정보제공업무의 절차상 문제점 보완으로 투명성 제고	“	완료
382		26	홈택스서비스(HTS) 민원증명 발급방식 개선	“	완료
383		27	은닉재산 추적 관련 세부기준 마련, 고액체납정리전담반 신설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결손처분 강화	“	완료
384		28	중부세 합산배제주택 사후관리 강화	“	완료
385		29	세무조사 유형별단계별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마련	06	완료
386		30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서식 간소화 및 인터넷 신청·인인	“	완료
387		31	의제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	완료
388		32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정업무 전산분석 기능 강화	“	완료
389		33	국세통합시스템(TIS)관련 통합 유지보수사업 추진	“	추진중
390		34	현대전화를 이용한 홈택스 가입 서비스 제공	“	완료
391		35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결정자료 등의 관리방법 개선	“	완료
392		36	고충민원처리 A/S 관리기록부 폐지	“	완료
393		37	사업자등록 배너 신설을 통한 투명성 확보	“	완료
394		38	수입금액 변동내역 전산 자동통보로 부조리요인 차단	“	추진중
395		39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부조리 요인 차단	“	완료
396		40	원천세 반기납부 포기자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	“	완료
397		41	제도변경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 안내	“	완료
398		42	면허관계서류 제출 축소로 부조리 발생소지 사전 차단	“	완료
399		4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전신청제도 운영	“	완료
400		44	분양권 등 명의변경자료 수집업무 개선	“	완료
401		45	“관리자 조사현장 방문제도” 실시로 부조리 통제시스템 구축	“	완료
402	관세청	1	국제우편물 통관관리 체계개선	04	완료
403		2	원산지 표시관련 운용시스템 개선	“	완료
404		3	의약품 등 소액물품의 통관기준 현실화	“	추진중
405		4	선용품 적재등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	추진중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406	관세청	5	세율적용 착오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	완료
407		6	적한목록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완료
408		7	수출물품 요건확인인 전산화	“	완료
409		8	적재물품의 서류제출 폐지	“	완료
410		9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	완료
411		10	환급가산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	완료
412		11	수입물품 분석업무의 실시간 공개	“	완료
413		12	건본인취물품 처리절차 투명성 확보	05	완료
414		13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에 대한 P/L제도 시행	“	완료
415		14	ATA까르네물품에 대한 재수출기간 운영 개선	“	완료
416		15	기획심사 결과 장기 미통보건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	“	완료
417		16	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양도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	완료
418		17	P/L환급 신청건의 서류제출 변경성 변경사유	“	완료
419		18	밀수신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의 명확화	“	완료
420		19	허위신고죄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의 폐지 및 완화	“	추진중
421	조달청	20	보세화물 처리절차 개선을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	06	완료
422		21	국제우편물 전산통관체제 구축	“	추진중
423		22	수입농산물 투명과세시스템 구축	“	완료
424		23	금품제공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등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	완료
425		24	관리대상화물 검사완료건 해제규정 신설 및 절차 간소화	“	완료
426		25	보세운송물품 도착확인시 기명날인 규정 보완	“	완료
427		26	범칙조사결과 처리방법 개선	“	완료
428		27	환급대상 수출물품 검사기준 개선	“	추진중
429		28	신용담보한도액 조정신청 One-Stop처리	“	추진중
430		29	감면 용도세율 적용물품 사후관리업무의 적정화	“	완료
431		30	수출인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의” 명문화	“	완료
432		31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통보건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	완료
433		1	물품구매 수의계약 제도개선	04	·
434		2	시설공사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	“	완료
435		3	검사업무 절차 개선	“	완료
436		4	기술용역 계약제도 개선	“	완료
437		5	전자입찰 부정행위 방지체계 구축	05	·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438	조달청	6	조달업체등록업무를 개선하여 입찰관련 부조리 척결	“	.
439		7	공사현장 부조리방지 종합대책	“	.
440		8	수요물자 허위 납품 및 대금지출사고 예방방안	“	.
441		9	복수 예비가격제도 운영 개선으로 입찰관련 부패 제고	“	.
442		10	총액계약 대금지급절차 개선	06	완료
443		11	MAS 이행능력평가 관련 절차의 전자화	“	완료
444		12	가격산출기준표 작성으로 가격의 공정성·일관성 확보	“	완료
445		13	가격정보 다양화로 가격의 투명성 제고	“	완료
446		14	공사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완료
447		15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전자화	“	완료
448		16	터키대안입찰의 전자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중
449		17	PO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인도 점검기준 조정	“	완료
450		18	나라장터를 통한 물가변동 관련 서류 접수방법 간소	“	추진중
451		19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	“	완료
452		20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면제출 개선	“	완료
453		21	물품 목록화 요청시 자료입력방법 간소화	“	완료
454		22	보훈·복지단체 지원제도 개선	“	완료
455	통계청	1	매니페스토제 도입을 통한 현장의 부실통계조사 사전예방	06	추진중
456	대검찰청	1	사건관계인 대기관련 정보제공시스템 확대 구축	06	완료
457		2	검찰 고객에 대한 과학화된 홍보체계 구축	06	완료
458		3	검찰 온라인 영상방송 활성화	“	완료
459		4	첨단분야 전문수사관 인증제	“	완료
460		5	첨단분야 수사인재 Bank 구축	“	완료
461		6	공안자문위원회를 통한 국민참여 확대	“	완료
462		7	선거사범 양형기준 마련	“	완료
463		8	불법집회·시위관련 업무편람 제작	“	완료
464		9	자체 청렴도측정방법 개발 및 점검방안 마련	“	.
465		10	특정지역 장기근무 폐해 방지방안	“	.
466		11	검찰복지제도 확충	“	.
467		12	효율적인 사무환경 개선	“	완료
468		13	검찰민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완료
469		14	법적 의무 권장사항 이행도 제고	“	.
470		15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활용	“	.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471	대검찰청	16	재산형 집행률 평가방법 개선	“	·
472		17	징수금 원표 전산화 방안	“	·
473		18	조직범죄에 대한 검찰의 효율적 수사체제 구축	“	·
474		19	인권보장 및 검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
475		20	구속수사기준 정립	“	완료
476		21	의견개진·수렴업무 프로세스 개선	“	·
477		22	국제협력자료 DB구축	“	·
478		23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관련 지침 제정	“	·
479		24	디지털 포렌직 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	완료
480	병무청	1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04	완료
481		2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 및 확대	04	완료
482		3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방지	“	완료
483		4	카투사 선발 방법의 개선	“	완료
484		5	특기별 모집을 통한 복무분야 선택권 강화	“	완료
485		6	국외체류 병역자원관리 강화	“	완료
486		7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개선	“	완료
487		8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제도 개선	“	완료
488		9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리의 투명화	“	완료
489		10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강화 및 평가체계 확립	“	추진중
490		11	지정업체 평가제도 도입으로 자율 복무관리체계 확립	“	완료
491		12	시민감사청구 제도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	완료
492		13	청렴계약제 확대	“	완료
493		14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 확립	05	완료
494		15	병역의무자중 장애인 등로깃의 병역감면제도 개선	“	완료
495		16	병역의무를 대체복무할 지정업체장에게 청렴 서약서 징구	“	추진중
496		17	고위공직자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확대	“	추진중
497		18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의 투명화	“	추진중
498		19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명확화	“	추진중
499		2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06	완료
500		21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사업 추진	“	완료
501		22	질병치유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시스템 개선	“	완료
502		23	휴대전화를 이용한 병역정보서비스 제공	“	완료
503		24	의무자여비 미환수액 상계처리시스템 구축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504	병무청	25	신체등위 합산 판정 폐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	완료
505		26	신체검사시 신분확인 철저	06	완료
506		27	군장학생 취소사유 발생자 처리	“	추진중
507		28	거주여권반납자 조기 의무부과	“	완료
508		29	국외여행기간 자동변환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완료
509		30	국외불법체재자 자원관리방안 강구	“	완료
510		31	인터넷 신청자 등 병역설계희망자 위주 설계실시	“	완료
511		32	BS/AS등 민원처리결과통보시스템 통합방안	“	완료
512		33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채용정보시스템 구축	“	완료
513		34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 규정 검토	“	완료
514		35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규정 검토	“	완료
515		36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결과서 관리 개선	“	완료
516		37	군복무필자 병적정비 및 예비군편성 누락자 방지방안	“	완료
517		38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미교부자 보통우편 송달 제도 폐지	“	완료
518		39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미교부자 전산관리시스템 마련	“	완료
519		40	동 미참훈련 일부이수자 통지취소감소방안 강구	“	완료
520	방위사업청	1	자발적 클리닉 감사 실시	06	완료
521		2	비리제로화 운동 추진	“	완료
522	경찰청	1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개선	04	완료
523		2	풍속업소 위법행위 단속전담기구 설치	“	완료
524		3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E-mail신고 활성화	“	완료
525		4	압수된 민유총포 매각시 입찰참여범위 확대	“	완료
526		5	형사피의자의 장시간 조사대기 관행 개선	“	완료
527		6	자동화운전학원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의무화 추진	“	완료
528		7	행정처분 누락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통보 개선	“	완료
529		8	불법오락실 단속관련 압수물 관리 개선방안	05	완료
530		9	영등위 자체 단속후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지방안	06	완료
531		10	교통단속방식 획기적 개선	“	완료
532		11	경찰관서 방문 수사민원 즉일조사제 활성화	“	완료
533		12	수사경과 부적격자 전과규정 제정	“	추진중
534		13	수사 이의사건 처리기준·절차의 명확화	“	완료
535		14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	완료
536		15	음주측정기 교정방법 개선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537	소방방재청	1	소방점검관련 부조리 근절책 마련	04	완료
538		2	민원업무 처리시 금품수수 거부고지 및 공정한 업무처리 약속제도 운영	“	완료
539		3	안전점검 실명예고제 및 청렴서약제	06	“
540	기상청	1	인사운영의 투명성 강화	04	추진중
541		2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	추진중
542		3	학술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	06	완료
543		4	법인카드의 클린카드제 적용 시행	“	추진중
544		5	비리공직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	완료
545		6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완료
546		7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	추진중
547		8	청렴서약제 운영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	완료
548	문화재청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 및 권한 위임	04	완료
549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업무 이양 및 자격증 교부제 도입	“	완료
550		3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완료
551		4	궁능관련권 전산시스템 구축	06	완료
552		5	직장상조회 기금운영방안 개선	“	완료
553		6	연구용역비 운영관리 제도개선	06	완료
554	농촌진흥청	1	농약품목 및 원제등록 신청서류 검토기준 개선	04	완료
555		2	농약 등록·신고·승인업무 제도개선	06	추진중
556	산림청	1	산지전용허가등을 위한 입목축적조사 규정 명확화	04	완료
557		2	산지의 경사도 판단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완료
558		3	산지의 연접개발 규정	“	완료
559		4	농로개설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기준 명확화	“	완료
560		5	국유림대부신청서 첨부서류 기재내용 명확화	“	완료
561		6	녹색자금운영의 공정성 확보방안	06	완료
562		7	국유재산 매각과정의 부패발생요인 제거방안	“	완료
563		8	국유림 대부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의무화	“	완료
564		9	산림부산물 양어 투명성 제고방안	“	완료
565		10	숲가꾸기 사업시행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완료
566		11	사방사업의 경제체제 도입	“	완료
567		12	사방사업 설계·시공 세부기준 마련	“	완료
568		13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제 도입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569	중소기업청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투명성 제고	04	완료
570		2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방식 개선	“	완료
571		3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	완료
572		4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업무개선	05	완료
573		5	R&D사업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06	완료
574		6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제도 보완	“	완료
575		7	윤리경영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의 투명성 강화	“	완료
576		8	정책자금의 용도와 사용방지시스템 도입	“	완료
577		9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선	”	완료
578		10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완료
579	특허청	11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사업 성공조건부 제도개선	“	완료
580		1	심판관 면담제도 개선	04	완료
581		2	산어재산권 진단사업 개선	“	완료
582		3	공무원 직무발명 신고제도 개선	“	완료
583		4	상품분류 법령체계를 출원인 편의 위주로 개편	06	·
584		5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업무 분장	“	완료
585		6	디자인 도면 제출요건 완화	“	·
586	식약청	7	복잡하고 중복된 민원서식 간소화	“	·
587		1	생명공학(BT)등 첨단 의약품분야 허가업무 심사 제도 개선	04	완료
588		2	연구사업(R&D) 관리시스템 개선	“	완료
589		3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강화	“	완료
590		4	의약품 등 허가관리규정 정비	“	완료
591		5	약사감시제도 개선	“	완료
592		6	의약품심사결과 공개제도 추진	“	완료
593		7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식·의약품 인허가의 국 제조화 추진	“	완료
594		8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05	완료
595		9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완료
596		10	식품제조업소등 지도·단속시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서 사용으로 투명성 제고	“	완료
597		11	식품제조업소등 지도·단속시 기관장 협조 서한문 교부	“	완료
598		12	대조생약의 관리업무 개선	“	완료
599		13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규정의 명확화	“	완료
600		14	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601	식약청	15	의약품 우수심사기준(GRP) 도입	06	완료
602		16	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 교부(조건부 신고수리) 제도개선	“	완료
603		17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선진화	“	완료
604		18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침서 가이드라인 마련	“	완료
605		19	바이러스 백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과 심사 자료 표준화	“	완료
606		20	의료기기 신고업무의 개선방안	“	완료
607		21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사전예고	“	완료
608		2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련 제도개선	“	완료
609	행복청	1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06	완료
610		2	클린카드제 시행	“	완료
611		3	행정감사규정 제정	“	완료
612		4	일상감사 운영규정 제정	“	완료
613		5	행복청 상벌규정 제정	“	완료
614		6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	“	완료
615		7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	완료
616		8	청렴계약제 시행	“	완료
617		9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수립	“	완료
618		10	용역설계서 작성 표준안 마련 시행	“	완료
619	해양경찰청	1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업무 개선	04	완료
620		2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제도 개선	“	추진중
621		3	실시간 평가감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기관청렴도 제고	05	완료
622		4	현장단속자인서, 시인서 징구시 투명성 확보	06	완료
623	중앙인사위원회	1	계약에 관한 업무(수의계약관련 불필요한 접촉 차단)	06	.
624		2	국외훈련업무	“	.
625		3	역량평가 운영	06	.
626	국무조정실	1	반부패 교육홍보사업	06	.
627		2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
628	기획예산처	1	민간투자기관제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04	완료
629		2	예산총액배분·자원편성(Top-Down)제도	“	완료
630		3	공공기관 반부패·투명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06	완료
631		4	예산 및 기금 협의시스템 개선	“	추진중
632	법제처	1	서비스 스탠다드 제정·시행	06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633	국정홍보처	1	클린식권제 운영	06	완료
634		2	청렴서약서 징구	“	완료
635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시행	“	완료
636	공정거래위	1	분사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예외규정 명확화	04	완료
637		2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완화	“	완료
638		3	가맹사업거래관련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완화	“	·
639		4	통신판매업자의 서면외의 전자문서 계약서의 교부 인정	“	완료
640		5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 송부의무 삭제	“	완료
641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기준 개선	04	완료
642		2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업무의 투명화	“	·
643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우선순위 개선	“	완료
644		4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비 심사위탁	05	완료
645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 확대	“	·
646		6	신속하고 정확한 신체검사체계 구축	06	완료
647		7	민원처리 과정별 SMS 안내	“	완료
648	금감위	1	보험장애등급분류표 개선	04	완료
649		2	증권회사 부수업무신고서의 서식화 및 기재사항 명확화	04	완료
650	고충처리위	1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및 투명화 심사제도 도입	05	·
651		2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청렴성 실시간 조사	06	·
652		3	민원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실천 확산	“	완료
653		4	주책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의 명확화	“	완료
654	비상기획위	1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선발제도의 고정성·투명성 강화	06	완료
655		2	비기위 파견장교 선발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완료
656		3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지원방안 마련 및 확대	“	완료
657	국가청소년위	1	국고보조금 교부개선	04	완료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	서울특별시	1	수납체계개선에 따른 전자영수증 서비스 시행	04	완료
2		2	현수막 게첨신청 인터넷 On-line 처리개선	“	완료
3		3	위생영업허가 인터넷신청 및 허가증 발급	“	완료
4		4	위생업소 영업신고(일반, 휴게음식점) 처리절차 개선	“	추진중
5		5	무허가 건물확인원 발급 확대(온라인화)	“	완료
6		6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개선	“	추진중
7		7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주출입구 방화문 설치 규정 개선	“	추진중
8		8	위생업소 신고 수리절차 개선방안	“	완료
9		9	세무조사 리콜제 실시	05	완료
10		10	건설업등록 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편람제작	“	완료
11		11	설계(변경)심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	.
12		12	Clean-1Service 제도 실시	“	.
13		13	수의계약 인터넷 전면공개 시스템 구축	“	.
14		14	건설업등록 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편람 제작	“	.
15		15	관급공사 명예감독관 선정	06	완료
16		16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	완료
17		17	상수도 자재 수급방안 개선	“	완료
18		18	수의계약 공개방 운영 및 전자계약 실시	“	완료
19		19	일상경비 e-Banking 시스템 구축·시행	“	완료
20		20	법원감저옥량결과에 의한 토지분할방법 개선 건의	“	완료
21		21	프로그램개발 및 전산기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	완료
22		22	폐수배출시설(섬유세척시설) 기준 완화	“	추진중
23		23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추진	“	추진중
24		24	건설공사 하도급내역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	완료
25		25	계약심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06	완료
26		26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시행	“	완료
27		27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완료
28		28	계약사무의 완전전자화 추진	“	완료
29		29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완료
30		30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인터넷 전자입찰 시행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1	서울특별시	31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	완료
32		32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완료
33		33	Clean 광진 청렴 서비스	“	완료
34		34	각종 공사비 등 증액시 관리체계 개선	“	완료
35		35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	완료
36		36	과오납금 환부기간 단축	“	완료
37		37	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결과 휴대폰 SMS자동 전송 시스템 구축	“	완료
38		38	공사용역 대가청구 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	완료
39		39	일반소모품 구매방법 개선	“	완료
40		40	신발생 무허가건물 억제를 위한 대책 강구	“	완료
41		41	건설공사 과정별 지도감사 실시	“	완료
42		42	발코니 확장 전화신청 처리	“	완료
43		43	주민과 함께하는 공사설계	“	완료
44		44	불허가민원 사전안내제	“	완료
45		45	비조달물품의 연간단가 구매	“	완료
46	부산광역시	1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도개선	04	추진중
47		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사 선정	“	완료
48		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도의 개선	“	완료
49		4	공영주차장 입찰제도 개선	04	완료
50		5	운행차량 배출가스 행정처분중 사용정지 삭제	“	미이행종료
51		6	유형주점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개선	“	완료
52		7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도 개선	“	추진중
53		8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 산정근거 마련	“	완료
54		9	지방세법 용어 명확한 근거마련	“	완료
55		10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및 오수량 산정기준 개선	“	미이행종료
56		11	가설건축물 처리 일괄 관련	“	추진중
57		12	건축물 착공신고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제 처리	“	미이행종료
58		13	전자공개 수의계약 확대 시행	“	완료
59		14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제처리	“	추진중
60		1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경감처분 기준 마련	“	완료
61		16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	“	완료
62		17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제도개선	“	미이행종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63	부산광역시	18	민원사무처리편람 제정·공개(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청구등)	“	완료
64		19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	완료
65		20	시내버스 요금조정 절차 투명화	“	완료
66		21	공사(용역)의 비대면 전자계약 추진	“	완료
67		22	수의계약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운영	05	완료
68		23	반부패서약서 위약금 징수	“	완료
69		24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	“	완료
70		25	식품위생법 개정	06	·
71		26	공유수면·소하천사용료 체납가산금 부과	“	·
72		27	대형폐기물 수집·반처리업무 민간위탁	“	·
73		28	사업장 전공정 종합진단제 시행	06	·
74		29	공직자 청렴·혁신마인드 자기진단프로그램 운영	“	·
75	대구광역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동 일한 감경기준 마련	04	미이행종료
76		2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분) 부과시 연료사용량 적용방법 개선	“	미이행종료
77		3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 명확화	“	추진중
78		4	식품위생업 및 유흥종사자 전기교육 규정 개정 요구	“	완료
79		5	공유수면(지방2급이하 하천, 구거등)의 점·사용 기간 명시	“	추진중
80		6	공사·용역등 전자계약(G2B) 실시	“	완료
81		7	음비계법 “광고·선전의 제한 등” 규정 개정	“	완료
82		8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규정 보완	“	미이행종료
83		9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관련	“	미이행종료
84		10	이천만원 이상의 건에 대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징구	“	완료
85		11	의료 및 약무 관련 지도방법 개선	“	완료
86		12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검사대행자 등록	“	완료
87		13	클린 서비스콜 설문조사 실시	06	완료
88		14	건설자재 품질시험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	완료
89		15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제도 개선	“	완료
90		16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업무처리중 소방 처리지침 마련	“	추진중
91		17	수도계량기 이중봉인 자재 변경 및 봉인방법 개선	“	완료
92		18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서류 감축	“	미이행종료
93		19	사권제한토지의 지방세 감면 확대	“	추진중
94		20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표시변경 절차 삭제	“	추진중
95		21	도로점용료 부과시 토지지가 과다 계상	“	추진중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96	대구광역시	22	면허신규접수시 “면허 및 면허세 안내장” 교부	“	완료
97		23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06	추진중
98		24	민관합동단속 실시 등 위생업소 지도단속 방법 개선	“	완료
99		25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전달하는 “단문에 시지 전송시스템” 구축	“	완료
100	인천광역시	1	산증축 건축물의 취득시기 개선	04	완료
101		2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	완료
102	광주광역시	1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복수복명제 실시	04	완료
103		2	환경시설 지도점검시 민간참여 확대	“	완료
104		3	주민등록, 호적신고 해태시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 산정 개선	“	추진중
105		4	준조세(기부금·성금) 모집개선에 관한 사항	“	추진중
106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기준 개선	“	추진중
107		6	버스업체 수입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조례)	05	추진중
108		7	각종 대가지출시 청탁요인 제거를 위한 “당일지 출제도” 시행	06	완료
109		8	투명·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자계약제 시행	“	완료
110		9	의료기관 지도단속 투명성 제고	“	완료
111		10	영업신고 시설조사 복수복명제 추진	“	완료
112		11	환경시설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참여확대	“	.
113		12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무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	완료
114		13	일반건설업 등록신청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운영	“	완료
115		14	건설분야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방안(설계변경 및 검사업무)	“	완료
116		15	손실보상방법 절차개선으로 민원인 편의제공	“	완료
117		16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 개선	“	완료
118		17	지역사업소 소규모 수선공사 계약서류 간소화	“	완료
119		18	찾아가는 방문검사 서비스	“	완료
120	대전광역시	1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업무추진	04	완료
121		2	자체감사 시행방법 개선	05	완료
122		3	자체감사 처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완료
123		4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제 운영	“	완료
124		5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한 지원	“	완료
125		6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	완료
126		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지도 감독	“	완료
127		8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28	대전광역시	9	『여권우편 특별배송제』 시행	“	완료
129		10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단속,관리	“	완료
130		11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시민참여 확대	“	완료
131		12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업무	“	완료
132		13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조사 및 보상업무 투명성 강화	“	완료
133		14	소방 기한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완료
134		15	상수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	완료
135		16	행정처분의 명확한 기준설정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완료
136		17	건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	06	완료
137		18	불법 주차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	.
138		19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구축	“	.
139		20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 운영	“	완료
140		21	지능형 자동검침시스템 시범운영	“	완료
141		22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	완료
142		23	민원사무 BS/AS운영	“	완료
143		24	부패영향평가 시행	“	완료
144		25	업무용 법인카드 클린기능 보완	“	완료
145		26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06	.
146		27	기 Inno Learning (혁신학습동아리)	“	완료
147	울산광역시	1	건축허가동의	04	미이행종료
148		2	특정옥외 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제도개선	“	미이행종료
149		3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	완료
150		4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처리절차 간소화	06	완료
151		5	소방검사시 청구서류의 간소화	“	완료
152		6	자동차 정비업소 행정처분 이행확인제도 개선	“	완료
153	경기도	1	공무원 Clean 신고센터 운영강화	04	완료
154		2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적용개선	“	완료
155		3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 개선	“	완료
156		4	자동차 등록세 수납 영수증서의 처리방법 개선	“	완료
157		5	인·구비서류 제출부수 축소	“	완료
158		6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방법 개선	“	완료
159		7	석유사업법관련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개선	“	완료
160		8	자동차 압류해지 일원화 추진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61	경기도	9	신종 자유업종인 고시원 법령정비완화	“	추진중
162		10	외국인토지법 과태료 세부과기준 마련	“	완료
163		11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선	“	완료
164		12	식품위생법 벌칙규정 구체화	“	추진중
165		13	농업인 주택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요건 구체화기준 마련	“	완료
166		14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 구현	“	완료
167		15	산림의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	“	추진중
168		16	도로점용허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추진	“	완료
169		17	공사계약 등 연간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05	완료
170		18	버스업계 재정지원 대상 확인방법 개선	“	완료
171		19	소방관련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개선	“	완료
172	강원도	1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05	·
173		2	민원 만족부패방지를 위한 처리민원 현장방문 실시	“	·
174		3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서 전달체계 개선	06	완료
175		4	농가주택용 농지전용시 무주택자 확인방법 개선	“	완료
176		5	아동급식지원 개선방안	“	완료
177		6	클린강원 정착을 위한 주간 천절기상도 운영	“	완료
178		7	민원담당자 청렴서약서 징구 등 공직자 클린마인드 확립	“	완료
179		8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	“	완료
180		9	공무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	완료
181		10	민간부문을 통한 감사활동 전개	“	완료
182		11	부패유발 자치법규 정비	“	완료
183		12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완료
184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완료
185		14	인사운영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	완료
186		15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	“	완료
187		16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	완료
188		17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	“	완료
189		18	식품, 위생, 축산 민간감시원 운영	“	완료
190		19	중이없는 건축허가시스템 운영	“	완료
191		20	건축공사장 점검실명제 운영	“	완료
192		21	소방민원 전화모니터링제 운영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93	강원도	22	소방행정의 NGO 등 참여확대	06	완료
194		23	지방세 인터넷 등 납부시스템 등 확대운영	“	완료
195		24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	완료
196		25	부패방지협의회등 운영활성화	“	완료
197		26	클린카드 도입 및 부패방지계획서 첨부	“	완료
198	충청북도	1	법인모지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04	완료
199		2	옥외광고물 등 기간연장 업무개선	“	추진중
200		3	석유류사업관리법 행정처분 개선	“	추진중
201		4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투명성 강화	“	완료
202		5	식품위생업소 사후관리조사 폐지	“	추진중
203		6	농지전용시 농지위원회 확인서 제출	“	완료
204		7	산지전용 허가기준 정립	“	완료
205		8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운영	“	완료
206		9	농어촌도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개선	06	.
207		10	옥외광고물등 행정조치에 다른 옥외광고업자의 효율적 관리	“	.
208		11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심의기구 변경	“	.
209		12	국유재산(건교부소관) 사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	.
210	충청남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개정	04	추진중
211		2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서 부대공사의 범위	“	.
212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 일원화	“	.
213		4	대천해수욕장 여름철 시설사용료 위탁징수 관리	“	추진중
214		5	배출업소 지도방문업체 전수공개 추진	“	완료
215		6	보건소 의약품 구입 투명성 확보	“	완료
216		7	어업허가 신청시기 개선	“	.
217		8	공중 위생영업 신고절차 개선	04	.
218		10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폐지 및 정기검사 대행업소 관리강화	“	.
219		11	산지전용(허가)협의시 감리제도 도입	05	.
220		12	건설공사 주민참여 예비준공검사제 운영	“	.
221	전라북도	1	명예감찰관제도 운영	04	완료
222		2	인사운영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완료
223		3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완료
224		4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	완료
225		5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추진중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26	전라북도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제도개선	“	·
227		7	안전점검표 비치제 및 소방검사 민간인 참여제 추진	“	완료
228	전라남도	1	각종 불허 인허가민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후 인용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반영등 대책조치	04	완료
229		2	유림,사찰,노인회 등의 각종 시설사업 보조금을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처 말고 해당기관에서 직접집행	“	완료
230		3	기관단체장 각종 업무추진비 단일 과목에 일괄 편성	“	완료
231		4	건설공사의 터키입찰제도 개선	“	완료
232		5	여객자동차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과징금) 경감 개선	“	완료
233		6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추진중
234		7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절차 개선	“	추진중
235		8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개선	“	추진중
236		9	계약 대가지급의 사전예고제	“	완료
237		10	개인묘지(납골묘포함) 설치기준 완화	“	완료
238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기준 강화	”	완료
239		12	건축물대장 작성에 관한 건	”	완료
240		13	매장신고에 관한 건	”	완료
241		14	마을단위 납골묘 조성	”	추진중
242		15	건축물 철거열실 신고방법	“	완료
243		16	특정공사 사전신고 절차개선	“	추진중
244		17	수의계약 방법개선	“	완료
245		18	이방·반장 회의수당 정액화	“	완료
246		19	대형구조물 운반차량 등록기준 신설	“	완료
247		20	수의계약대상 전자견적입찰 시행	“	완료
248		21	행정처분 경감에 따른 방법 개선	“	완료
249		22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	완료
250		23	일정금액이상 대형공사 준공검사시 복수제 운영	“	완료
251		24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운영	“	완료
252		25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제 운영	“	완료
253		2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후 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	완료
254		27	연안어업허가중 어획강도가 낮은 어업에 대한 허가정수 폐지	“	추진중
255		28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제도 불합리	“	추진중
256		29	산지전용허가 신청조건 제도불합리	“	완료
257		30	묘지설치 제도 불합리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58	전라남도	31	소비자 약사 감시원제 도입	05	미이행중료
259		32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 심사제 운영	“	완료
260		33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민원사무 위임	“	·
261		34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개선	06	완료
262		3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표준품셈) 제정 건의	”	추진중
263		36	악업단체 자율감시원제 운영	”	·
264		37	위생업소 지도단속 부패방지 추진	”	완료
265		38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선	”	완료
266		39	축산물 작업장 허가업무처리 개선	“	완료
267		40	기선권현망어선 선박량 제한 완화	“	완료
268		41	TMS부착 사업장 배출시설 지도점검 면제를 위한 법률제정 건의	“	추진중
269		42	주민등록 일시 전출입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대상자 인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	완료
270		43	건설업 기술인력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차등화	“	완료
271		4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협의제도 개선 건의	“	완료
272		45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규칙개정 건의	“	완료
273		46	다중이용업소 설치·완공신고자 개선을 위한 건의	“	완료
274		47	소방시설공사 변경신고사항 개선을 위한 건의	“	완료
275		48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건의	“	완료
276		49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	“	완료
277		50	다중이용업 목욕장의 수용인원 산출근거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	“	완료
278	경상북도	1	산촌종합개발사업 제도개선	04	·
279		2	농림사업자금 집행방법 제도개선	05	·
280		3	양식장 자연재해 피해보상 보상제도 개선	“	·
281		4	일반건설업 등록업무 제도개선	“	완료
282		5	건축사업무신고 제도개선	“	추진중
283		6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제도 개선	“	·
284		7	원유검사 공영화 제도개선	“	·
285		8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	완료
286		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 개선	“	·
287		10	전자계약제 도입	06	완료
288		11	민원처리진단제 추진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89	경상북도	12	대형공사장 부설시공 예방감찰	06	완료
290		13	투·융자심사사업 주민의견 청취제 도입	“	완료
291		14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방법 개선	“	완료
292		15	회계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완료
293		16	보조금 집행 클린카드제 실시	“	완료
294		17	관광펜션업 지정에 관한 지침개선 건의	“	완료
295		18	어업허가 말소의 행정처분 개선 건의	“	완료
296		19	국공유재산 처분절차 개선	“	완료
297		20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
298		21	주택민원 Sped Call 제도 운영	“	완료
299		22	불량식품 감시를 위한 식품 수거방법 개선	“	완료
300		23	수질분야 면허증서 교부절차 개선	“	완료
301		24	승진인사 다면평가 제도개선	”	완료
302		25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문예고제 시행	“	완료
303		26	건강진단서 등 민원발급절차 개선	“	완료
304		27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액 산정기준 개선 건의	“	완료
305		28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조건 강화 건의	“	완료
306		29	방역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방법 개선 건의	“	완료
307		30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심사기준 개선 건의	“	완료
308		31	시군 공직자 만족도 설문조사	“	.
309		32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업무행태 개선	“	.
310		33	방염민원 처리기간 단축	“	.
311		34	소방검사 제도개선	“	.
312		35	정기소방검사 실시방법 개선	“	완료
313		36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06	완료
314		37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	.
315		38	납세자를 생각한 통합고지서 발송	“	.
316	경상남도	1	버스업계 재정지원 대상 확인방법 개선	04	완료
317		2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제도 개선	“	추진중
318		3	소방법위반사실보고서 일련번호 부여	“	추진중
319		4	도로일시 점용료 부과·징수 개선방안	“	추진중
320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의 경감대상 구체화	“	미이행중료
321		6	석유품질검사 방법 등 개선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22	경상남도	7	환경관리법 처벌 규정 보완	“	추진중
323		8	시설묘지설치허가(신고)제도 개선	“	완료
324		9	식품관련 영업 인허가 시설조사 방법개선	05	완료
325		10	수의계약시 다수업체 참가제도 시행	“	완료
326		11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업무 개선	06	완료
327		12	건설업등록시 청렴이행서약제 시행	“	완료
328		13	클린 법인카드제 시행	“	완료
329		14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제도 개선	“	완료
330		15	사방사업 시행제도 개선	“	완료
331		16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	완료
332		17	뇌물제공업체 실격제 도입관련 제도개선	“	완료
333		18	아파트 분양가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완료
334	제주도	1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시 감독 및 검사규정 개정	04	완료
335		2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개선	“	추진중
336		3	농지취득시 자경기간 명시	“	추진중
337		4	농지취득 자격증명 첨부규정 삭제	04	추진중
338		5	농업용시설 건축물사용 추인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방법 개선	“	미이행중 료
339		6	수의계약대상 간이입찰(상시투찰제) 확대·시행	“	완료
340		7	오염원 밀집마을대상 자율환경감시활동 적극지원	“	완료
341		8	입찰계약구매 인터넷 사전공개	“	완료
342		9	민간단체 및 점검공무원의 위생업소합동 점검실명제 운영	“	완료
343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예고제 시행	“	완료
344		11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	완료
345		12	이메일을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	완료
346		13	민원분야 제도개선	“	완료
347		14	투자업무 민원창구 단일화	“	완료
348		15	주민불편해소 T/F팀 운영	“	완료
349		16	고객만족비전·전략수립	“	완료
350		17	도민참여보장제도	“	완료
351		18	종이없는 민원실 운영	“	완료
352		19	민간모니터제 운영	“	완료
353		20	광역적 축제육성 위원회 구성·운영	“	완료
354		21	감귤유통명령제 추진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55	제주도	22	“중점정화대상” 丁등급 강화 운영	06	완료
356	서울교육청	1	운동부운영	04	완료
357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개선	05	완료
358		3	학교간설위원회 설치·운영	“	·
359		4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및 교육	06	·
360		5	클린식권제 운영	“	완료
361		6	부교재 채택 관련 비리예방	06	완료
362		7	실업내고교 실습기자재 확충업무 개선	“	·
363		8	지역교육청 평가방법 개선	“	·
364		9	실험실 현대화 대상기관 선정절차 개선	“	완료
365		10	공사 준공시 청렴계약이행 확인서 징구	“	완료
366		11	해외 수학여행 업무처리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	·
367	부산교육청	1	시설공사	04	완료
368		2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업무의 투명성 제고	“	완료
369		3	교육정보화기기 선정·구매	“	완료
370		4	과학교구 구입 업무의 책무성 강화	“	완료
371		5	교원전보시 선배정제도 및 유예제도의 합리적 운영 시스템 구축	“	완료
372		6	학교운동부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	완료
373		7	정화구역 해제심의	“	완료
374		8	학교급식품 구매	“	완료
375		9	세출금 지출업무 개선 추진	05	추진중
376		10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06	추진중
377		11	반부패 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중
378		12	체험학습 관련 계약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추진중
379		13	초등교원 인사행정의 합리성 제고	“	완료
380		14	고등학생 전입학 배정방법 개선	“	추진중
381		15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추진중
382		16	학원민원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운영	“	완료
383		17	학원 서면평가제 및 민관합동 자율점검반 운영	“	추진중
384		18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 정비	“	추진중
385		19	학교조경자문단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06	추진중
386		20	반부패청렴연수 강화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87	대구교육청	1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04	완료
388		2	하도급업체 변경에 대한 기준 불분명	“	완료
389		3	수익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내역공개	05	완료
390		4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	“	완료
391		5	법인카드 투명성 제고(포인트적립 및 사용내역조사)	“	완료
392		6	사립중등학교 교원임용제도 개선	06	완료
393		7	사립학교 학교회계 불법 및 부정운용방지 노력	“	추진중
394		8	수익계약체결시 부패방지대책	“	추진중
395		9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	“	추진중
396		10	학원수강료 신용카드,지로등 온라인 수납제 시행	“	추진중
397		11	수강료 신용카드,지로 등 온라인 수납제 적극 실시	“	추진중
398		12	학교 급식품 구매 및 납품업체 선정	“	추진중
399		13	우수운영학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완료
400		14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화	“	완료
401		15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투명성 제고	“	추진중
402		16	교원전보시 유예제도의 합리적 운영시스템 구축	“	완료
403		17	지방공무원 승진제도개선(다면평가실시)	“	완료
404		18	지역교육청 자원분배제도의 확대	“	완료
405		19	학원의 행정처분기준 개선	“	추진중
406		20	학원 및 과외교습 시설기준 개정	“	추진중
407		21	각급학교 교육정보화기기 선정·구매	“	추진중
408		22	학교장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투명성 제고	“	완료
409		23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	완료
410		24	계약실명제 및 업체용 계약업무 매뉴얼 제공을 통한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	추진중
411		25	현안사업비 지원기준 마련	“	완료
412		26	공사대금 지급예정일 공지를 통한 대가지급과정 투명성 제고	“	추진중
413		27	홈페이지를 통한 클린콜 실시	“	완료
414	인천교육청	1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화	04	완료
415		2	학교시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철거조치에 관한 규정신설	“	완료
416		3	학교위탁급식업체 필요경비 경감에 따른 급식의 질 향상	“	.
417		4	학교건축물 신축·증축 승인절차 매뉴얼 작성	06	완료
418		5	연구대회 표절작 및 대리작, 저작권 위반 예방대책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419	인천교육청	6	고비용 국고지원 장기연수 교원의 효율적 활용	“	완료
420		7	학원(교습소) 지도점검방법 개선	“	완료
421		8	민원인 교육청 방문횟수 감소방안	“	완료
422		9	정화구역 서비스 운영체제 공유를 통한 민원제도 개선	“	완료
423	광주교육청	1	운동부(축구,야구) 운영제도 개선	04	완료
424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및 정화위원회 운영 개선	“	완료
425		3	사립학교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확보	06	완료
426		4	사립학교 학교시설사업비 집행업무 개선	“	완료
427		5	건설하도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방안	“	완료
428		6	사전예고, 체크리스트 마련등 평생교육지도의 실효성 확보	“	완료
429	대전교육청	1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가감에 관한 사항 개선	04	완료
430		2	교육감 선거제도(결선투표) 개선	“	미이행종료
431		3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 사전검토 개선	“	미이행종료
432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개선	“	완료
433		5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설정 개선	04	미이행종료
434		6	사립유치원 인가업무 처리기준 개선	“	미이행종료
435		7	야간자율학습 지도 수당지급 방법개선	“	완료
436		8	고품질 계약업무 전자계약 실시	06	완료
437	울산교육청	1	자체감사기구 독립	04	.
438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처분	“	.
439		3	학교급식 식품사고 예방	“	완료
440		4	초·중등 관리직 인사개선안	06	완료
441		5	강북교육청 교육장 직위 공모	“	완료
442		6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개선	“	추진중
443		7	초·중·고 취약분야 업무 운용실태 부분감사 실시	“	완료
444		8	학생배정개선 추진계획	“	.
445	경기교육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04	완료
446		2	수의계약금액 하향조정	“	완료
447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단위시설의 기준 구체화	“	완료
448		4	시설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와 관련한 수의계약	“	완료
449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 단위 시설기준 점검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450	경기교육청	6	학원참관인제 운영 활성화	06	완료
451		7	지도방문 조정 심의운영의 강화	“	완료
452		8	정보공개 제도개선	“	완료
453		9	지역교육청 평가의 투명성 강화	“	완료
454		10	초등연구학교 운영 개선	“	완료
455		11	중등연구학교 운영 개선	“	완료
456		12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	“	완료
457		13	학교설립계획의 사전심의제 운영	06	완료
458		14	대가지급 예고제 및 우편청구제	“	완료
459	강원교육청	1	시설공사 집행 절차의 개선	04	완료
460		2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완료
461		3	지역교육청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금품수수 부조리	05	추진중
462	충북교육청	1	사립학교 교원임용 법제화	04	완료
463		2	수외계약 한도금액 하향 조정	“	완료
464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업무 개선	“	완료
465		4	불시 기동감사제(시설,급식관련) 상시운영	06	완료
466		5	학원 및 과외교습 건전운영 제도개선	“	완료
467		6	민원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도도입	“	완료
468		7	클린카드제 도입을 통한 법인카드 투명성 제고	“	완료
469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 행정제도 개선	“	완료
470		9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 제고	“	완료
471	충남교육청	1	사립학교(초,중등) 임용 관련 인사제도 개선	04	완료
472		2	학교 운동부의 합리적 운영	“	완료
473		3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제도개선	“	추진중
474		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개선	05	완료
475		5	민간인이 참여하는 “학교시설공사 3-Step제도” 운영	“	완료
476		6	실습기자재 확충의 투명성 제고방안	“	.
477		7	청정학교 서포터즈 시범운영	06	완료
478		8	학교급식품 구매방법의 개선	“	.
479		9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	.
480		10	인터넷 민원처리 강화방안	“	.
481		11	학교공사 명예감독제	06	.
482		12	수요자 중심의 학교시설공사 추진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483	충남교육청	13	학교 운동부 운영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	“	완료
484		14	학교 자체 시행 시설사업 도우미 지원을 통한 클린시설 조성	“	“
485		15	과학교구 선정·구입의 책무성 강화	“	완료
486		16	학교운동부의 합리적 운영	“	완료
487	전북교육청	1	학원 수강료 온라인 입금제 시행	04	완료
488		2	임시출납원에게 지급되는 인솔경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완료
489		3	학교회계 임시출납원 임명제도 개선	“	완료
490		4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유지	“	완료
491		5	사학의 공공육의 역할 강화	“	완료
492		6	비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확인을 통한 물품구매 적정화	“	완료
493		7	교원의 승진 및 전보 임용의 투명성 확보	“	완료
494		8	학교운동부 운영 및 체육특기자 관리	“	완료
495		9	감사담당 공무원의 학교회계 운영 NEIS 비밀번호 권한부여로 회계부정을 사전예방	“	완료
496		10	클린카드제 도입을 통한 법인카드 투명성 제고	06	완료
497	전남교육청	11	NEIS에 의한 초·중·고원전보관리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추진중
498		12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제 도입	“	완료
499		13	학교시설관리 지원반 운영 및 기술지원	“	완료
500		1	사립학교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04	완료
501		2	공정하고 투명한 운동부 육성에 따른 학부모 의식제고	“	완료
502		3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따른 가산점 산정규정」의 개선	“	완료
503		4	지방공무원 전보제도 개선	“	완료
504		5	신설학교 물품구매 제도개선	06	완료
505		6	저소득자녀의 중식지원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06	완료
506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한관리 개선	“	완료
507	경북교육청	8	소규모 학교 컨소시엄 방식의 납품업체 선정	“	완료
508		9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해소 관련 조치	“	완료
509		1	학원설립등록 및 교습소 설립신고에 따른 지도감독	04	완료
510		2	학교급식 관련 비리근절	“	완료
511		3	학교운동부 지도코치 정예화 및 처우개선	“	완료
512		4	학교시설공사 책임감리제도 시행	“	추진중
513		5	공동도급방식의 개선	“	추진중
514		6	학교회계 감사 강화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515	경북교육청	7	학원지도점검 업무개선	“	완료
516		8	학교 환경위생 정화 업무	“	완료
517		9	사립학교 시설비·환경개선사업비 집행에 따른 학교장 권한 및 책임 강화	05	완료
518		10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06	완료
519		11	인터넷을 이용한 정화구역내 심의신청 서비스 실시	“	완료
520		12	기업공용카드 바로알림서비스(SMS) 실시	“	완료
521		13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	완료
522		14	저가하도급 개선	“	완료
523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에 대한 확인방법 규정	“	.
524		16	학교시설공사(공사, 용역, 계약) 예고제	“	완료
525		17	관내 각급학교 교육정보화기기 및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공동계약	“	추진중
526		18	e-메시저를 통한 부패사태 신고망 설치	“	완료
527		19	학교별 시설담당 관리제 운영	“	추진중
528		20	학교회계 검사 강화	“	완료
529		21	시설공사 집행 및 준공검사시 학교관계자 참여	06	추진중
530	경남교육청	1	야간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부패척결	04	완료
531		2	각급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	“	완료
532		3	임시일상경비(학교회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05	추진중
533		4	학교급식 관련 비리근절 대책	“	추진중
534		5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철저한 관리	06	완료
535		6	성적부풀리기 예방과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완료
536		7	학원의 강의실 기준면적완화등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	“	추진중
537		8	정화제도 적극 홍보로 민원신청 One-Stop처리 및 투명한 정화위 운영	“	완료
538		9	급식품 공동구매를 통한 소규모 학교급식 납품 관련 비리 사전예방	“	완료
539		10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사전예고제 시행	“	완료
540		11	민원처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민원 창구 개편	“	완료
541		12	학교회계 예·결산 조화권한 부여 및 ‘ 학교회계 현황’ 배너설치	“	완료
542		13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방법 변경 및 재정공개 시스템 구축등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효율적 지원	“	완료
543		14	전자계약제 시행	“	완료
544		15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입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완료
545	제주교육청	16	학부모 도우미제 운영 등 학교시설공사 민간인 참여 활성화 방안	“	완료
546		1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보직관리규정) 개선	04	완료
547		2	법인카드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클린카드제 도입	06	완료
548		3	전자계약제 시행	“	완료

■ 주요 공기업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	한국조폐공사	1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04	완료
2		2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e-Display 운영)	06	완료
3		3	조달 및 구매기능 집중화 실시	“	완료
4		4	고객만족도 평가체제 구축	“	완료
5		5	자율감사제도 도입	“	완료
6	대한석탄공사	1	외주용역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	04	완료
7		2	통합자금관리	06	추진중
8	한국전력공사	1	전기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수립	04	완료
9		2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 관련 행정낭비 개선	“	완료
10		3	보상업무 등의 위탁제도 개선	“	완료
11		4	지장전주 이설업무 투명성 강화	“	완료
12		5	송전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선	“	완료
13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운영	06	추진중
14		7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확대 시행	“	완료
15		8	급여공제관리시스템 개선	“	완료
16		9	Safety-Zone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완료
17		10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업무투명성 제고	“	완료
18		11	협력업체지원시스템(PRM) 구축 시행	“	완료
19		12	플라스틱 리일 확대 사용	“	추진중
20		13	전자정부 연계를 통한 고객의 한전내방 최소화	“	완료
21		14	전기요금 정액제 고객의 계약정상화 추진	“	완료
22		15	배전기자재 자발적 리콜제도 시행	“	완료
23		16	협력업체 준공처리시스템 개발 적용	“	완료
24		17	지중 압입공사 장비사용기준 명확화로 불법하도급 의혹 근절	“	완료
25		18	배전전주 공사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06	완료
26		19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수의계약 해소방안 강구	“	완료
27		20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선	“	완료
28		21	철탑기초 등 지하 매설부분 설계변경 최소화	“	완료
29		22	170KV 이상 GIS 구매방법 개선	“	추진중
30		23	전자조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완료
31		24	전기요금,수금 중요데이터 변경사항 추적,검증시스템 개발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32	한국전력공사	25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06	완료
33		26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과제관리 시스템 개선	“	완료
34		27	사용전 점검.송전업무용 PDA 시스템 개발 활용	“	완료
35		28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운영	“	완료
36		29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으로 공사비 지불업무 개선	“	완료
37		30	사용전 점검 업무처리 효율화 방안	“	완료
38		31	민원창구 고객용 인터넷 카페 설치 확대	“	완료
39		32	송변전 민원관리시스템 개선	“	완료
40		33	공사업체 조달자재 업무처리기준 개선	“	완료
41		34	전력구·관료 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	“	완료
42		35	지중전문업체 제도도입을 위한 시공실적 관리	“	완료
43		36	공가통신설비 이설업무 시스템 구축	“	완료
44		37	변전전문업체 기기보유 확인절차 개선	“	완료
45		38	공사관리업무 개선을 통한 송변전 협력회사 편의제공	“	완료
46		39	계약업무 과정별 청렴 팝업창 운영	“	완료
47		40	협력회사 청렴포탈 사이트 개설 운영	“	완료
48		41	신규공사비 전자통합 접수	“	완료
49		42	신규(지장)공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	완료
50		43	이의제기 신청코너 설치	“	완료
51		44	은행자금 경쟁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	완료
52		45	전기요금 인터넷 실시간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	완료
53	KOTRA	1	해외박람회 한국관 장치계약 추진방법 개선	04	완료
54		2	수출기업화사업 자금지원 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	완료
55		3	무역관 정상업무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	완료
56		4	해외전시회 참가업무의 투명성 제고	05	완료
57		5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시스템 개선	06	추진중
58		6	계약업무 처리절차 개선	“	.
59		7	해외무역관 현금결제비중 축소노력도 평가	“	완료
60		8	해외전시 유관단체 참가지원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대	“	추진중
61		9	특별 검수제도 실시 확대	“	.
62	대한광업진흥공사	1	해외자원개발자금 지원제도 투명화	04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63		2	신용조사시 업체의 사회공헌활동 반영	06	완료
64		3	반부패대책 T/F를 청렴혁신 중추협의체로 쇄신	“	완료
65		4	일상감사 심사평가제(적법성, 성과성, 청렴성평가) 도입	“	완료
66		5	부패삼진아웃제 도입	“	완료
67		6	윤리강령위반자 승진제한기간 연장제 도입	“	완료
68		7	청렴혁신상 신설	“	완료
69	농수산물 유통공사	1	농수산 수입권구매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04	완료
70		2	자금융자업무 투명성 확보방안 확립	“	완료
71		3	계약업무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 제정	“	완료
72		4	승진자 결정사유 공개 추진	05	추진중
73		5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구매업체 정비기준 재정립	06	완료
74		6	특작류 도입, 수입권 구매, 판매 사전예고제 실시	“	완료
75		7	해외파견직원 해외근무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	완료
76		8	해외현지직원 채용조건 정립	“	완료
77		9	박람회 장치 공사업체 선정기준 개선	“	완료
78		10	식품가공용 콩 수입선 다변화	“	완료
79		11	식품가공용 콩 소포장품 도입	“	완료
80		12	고객 제도개선 청구제도 운영	“	완료
81	한국농촌공사	1	농업기반시설물 목적외 사용승인절차 간소화	04	추진중
82		2	농림사업 시행체제 개선	“	추진중
83		3	공사현장 부조리예방을 위한 Happy-Call제도 시행	“	완료
84		4	계약업무 전자화 추진	“	완료
85		5	선호직위 공모제 시행	“	완료
86		6	하도급 대가지급확인제등 하도급관련 투명성 확보 방안	“	완료
87		7	청렴-HACCP제도 도입	05	완료
88		8	공사감독 경력관리제도 도입	“	완료
89		9	목적외 사용 승인신청 전자시스템도입 및 확대시행	“	추진중
90		10	내부평가시 부조리 발생부서 감점범위 확대방안	“	완료
91		11	청렴온도계(청렴성 종합진단) 시스템 구축	06	완료
92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정	“	완료
93		13	물관리 자동화사업의 시스템 주요자재 검수기준 제정	“	완료
94		14	준설사업의 골재반출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95	한국농촌공사	15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자 고발지침 제정	“	완료
96		16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에 청렴혁신방 설치	“	완료
97		17	공사사무소 운영경비 집행방법 개선	06	완료
98		18	설계-감리책임제 도입	“	완료
99	대한주택공사	1	건설공사 현장점검 운영제도 개선	04	완료
100		2	수급업체 및 현장관계자 제재 강화	“	완료
101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집행방법 개선	“	완료
102		4	수의계약 공고대상 공사규모 확대	“	완료
103		5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제도 개선	“	완료
104		6	상임이사 및 1급직원 청렴성 평가제도	“	완료
105		7	감사가 받는 청렴업서제 시행	05	완료
106		8	보상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완료
107		9	건설공사 부패관련자 현장퇴출제 실시	“	완료
108		10	서류민원의 On-Line 처리제 실시	“	완료
109		11	집단에너지시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	완료
110		12	부정입주 및 불법 전매·전대 방지	“	완료
111		13	부패환류시스템 개발	“	완료
112		14	항공사진 수치화로 보상업무의 공정성 확보	06	.
113		15	품질시험 세부시험 내역공개	“	.
114		16	SMS 확대를 통한 고객면담 최소화	“	.
115		17	공사방문자에 대한 전산관리	“	.
116		18	임직원 참여를 유도하는 청렴홈페이지 운영	“	.
117		19	징계등 처분심사시 Blind 심사제 실시	“	.
118		20	청렴 내부통제 자체평가(CSA) 인증제	“	.
119		21	청렴도 개선 미흡부서 조직재설계 추진	“	.
120		22	특별양정기준 추진	“	.
121		23	선진유관기관과의 MOU체결등을 통한 청렴시책 벤치마킹	06	.
122		24	청렴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상 신설 추진	“	.
123		25	청렴거울 설치로 일상생활에서의 청렴생활 실천 유도	“	.
124		26	포상금 지급등 자의에 반한 금품 신고 활성화	“	완료
125		27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내부통제제도 구축	“	.
126		28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 사유등 정보공개	“	.
127		29	자금이체 SMS 통보로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	.
128		30	계약관련 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일체 정비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29	대한주택공사	31	복수예비가가격의 사전누출 가능성 차단을 위한 작성방법 변경	06	.
130		32	Anytime Happy Call 제도 운영	“	완료
131		33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우편엽서 발송	“	완료
132		34	분양용지 사전점검제 시행	“	완료
133		35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대책용지 등 공급기준 개선	“	완료
134		36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 제정	“	완료
135		37	예측가능한 입주자 모집정보 제공	“	완료
136		38	보상선례 공유로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	“	완료
137		39	맞춤형 보상안내 팸플렛 제작	“	완료
138		40	입주자 전산망 구축	“	.
139		41	택지개발 후보지조사 보안관리지침 개정	“	완료
140		42	고객과 함께하는 투명한 현장관리	“	.
141		43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	.
142		44	법인카드 투명성 강화	“	.
143		45	부패방지를 위한 설계협력업체 관리업무 개선	“	.
144		46	건설클린매거진 발행	“	.
145		47	웹 배너 활용 청렴홍보 시행	〃	.
146		48	청렴스티커 제작 및 발송	“	.
147		49	설계용역업체 선정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완료
148		50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평가	“	.
149		51	자체 청렴도 측정 차별화 및 활용성 강화	“	완료
150		52	국공유지 처분과정의 이의제기 해소	“	.
151		53	청렴, 윤리행동 실천주간 제정 운영	“	.
152		54	위탁관리업무 청렴이행계획서 시행	“	.
153		55	입찰절차 개선(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생략)	“	완료
154		56	PQ심사서류 간소화	“	.
155	수자원공사	1	건설현장 부조리 방지대책 강화	04	완료
156		2	공사·용역의 계약 투명성 제고	“	완료
157		3	관리자 연대책임제 운영기준 시행	“	완료
158		4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검측제도 개선	“	완료
159		5	설계변경과 관련한 비리 예방대책	“	완료
160		6	학술연구용역등 수의계약 최소화	06	완료
161		7	설계변경 최소화방안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62	수자원공사	8	신기술 포함공사 발주기준 정형화	06	완료
163		9	입찰/계약정보 및 복수예비가격 등 공개로 계약 투명성 제고	“	완료
164		10	준공검사업무의 중복개선	“	완료
165		11	공사 분양토지직원 분양거래 제한 강화	“	완료
166		12	청렴도 향상 실천노력도 평가	“	완료
167		13	부패관련 감사처분의 내부평가 반영비율 강화를 통한 부패예방	“	완료
168	한국도로공사	1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관리 투명화	04	완료
169		2	건설공사 계약변경 내역 하도급사 공개	04	완료
170		3	새로운 시공기술 및 공법의 현장적용 관련 절차 투명화	“	완료
171		4	소액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	06	.
172		5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	.
173		6	퇴직연금 주간사 선정의 투명성 강화	“	.
174		7	고속도로 통행료 면탈방지시스템 확대 구축	“	완료
175		8	고속도로 유지관리차량 구입절차 개선	“	.
176		9	특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도급화 추진	“	완료
177		10	고속도로 건설현장 점검 및 평가시스템 개선	“	.
178		11	벤처사업 사전심사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
179		12	건설하도급 음부즈만 제도 도입	“	완료
180		13	윤리경영 성과평가 연계방안 마련	“	완료
181		14	건설공사 시행과정 인터넷 공시	“	.
182		15	민원처리과정 Open 시스템 구축	“	완료
183		16	인사고과 평정시 청렴도 평가요소 반영	“	완료
184		17	시설업무 투명화 안내시스템 운영	“	완료
185		18	예산낭비 신고센터 개설	“	완료
186		19	구조물 유지관리평가 방법 개선	“	완료
187		20	하도급사에 대한 건설정보 공유 확대	“	.
188		21	설계심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
189		22	윤리경영·반부패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	완료
190		23	도로점용 허가업무 표준화(메뉴얼 작성)	“	.
191		24	용지보상업무 편람작성	“	완료
192		25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내역 공개	“	완료
193		26	권리관계 설정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개선	”	완료
194		27	청렴 Coloring 제도 도입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195	한국도로공사	28	청렴온도계 자기진단시스템 도입	06	·
196		29	정보화 사업자 선정시 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	·
197		30	시설개량사업 고객접점 투명성 강화	“	·
198		31	비대면 감사시행을 통한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	“	·
199		32	고속도로 건설현장 검측제도 개선	“	·
200		33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투명성 확보	“	·
201		34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한 소액구매제도 개선	“	완료
202		35	클린컴퍼니를 선도할 윤리리더 양성	“	완료
203		36	공사 청렴이미지 적극 홍보	“	완료
204		37	고속도로 참여자간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	·
205		38	Hi-Clean 2013 캠페인 전개로 부패친화적 문화 청산	“	·
206		39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정산의 투명성 제고	“	·
207		40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의 청렴이행 시스템 구축	“	·
208		41	고속도로 점용허가 인터넷 공시제도 도입	“	·
209		42	고속도로 건설현장업무 사전서비스제도 실시	“	·
210		43	임직원 경영평가에 “청렴도” 반영시스템 구축	“	완료
211		44	책임감리업체 부패방지계획 의무화제도 시행	“	완료
212		45	고속도로 건설참여자 ‘청백리 Partnering’ 제도 시행	“	·
213		46	부패위험성 경고 ‘자가진단 체크카드’ nsdud	“	완료
214		47	고속도로 건설현장 검측제도 개선	“	·
215		48	단체재해보장보험 등 보험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완료
216		49	건축기계설비 시설물 유지관리도급 개선	“	·
217		50	고속도로 소액수익계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강화	”	·
218		51	고속도로 설계과정의 On-line상 정보공개	“	완료
219		52	부정해위 근절을 위한 면탈방지시스템 개선	“	완료
220		53	민자고속도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	·
221		54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사내영상뉴스 제작방영	“	완료
222		55	청렴 IQ(Integrity Quotient)테스트 실시	“	·
223		56	첨단 통행료 징수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통행료 누수요인 최소화	“	·
224		57	4H(Hardworking,Helpful,Honest,Humorous)운동	“	·
225		58	청렴 파트너쉽 제도 시행	“	·
226		59	건설사업소 협력업체 멘토제도 실시	“	·
227		60	고속도로 용역업무 반부패시스템 구축	“	·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28		61	클린모니터링제도 실시	06	·
229		62	토지수용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
230		63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환경정리 제도 개선	“	·
231	한국관광공사	1	면세점 입점업체 청렴서약서 제출	04	완료
232		2	각종 계약관련 업무매뉴얼 제작 및 온라인 서비스	05	·
233		3	건설공사 청렴이행과제를 관광개발지원시스템과 연동관리	06	추진중
234		4	부정당업체 현황관리	“	·
235		5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기준 강화	“	·
236		6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출제, 면접위원 복수선정 추천	“	완료
237		7	경쟁입찰 계약율을 목표로 설정	“	·
238		8	신입사원 연수과정에 국가청렴위원회 현장학습 포함	“	·
239		9	면세점 입점업체 공사매출실적 조회 허용	“	·
240		10	면세점 입점희망업체 상담기록부 작성	“	·
241		11	보세판매장 운영매뉴얼 구축 및 활용	“	·
242		12	클린위원회 구성·운영	“	·
243		13	윤리경영 4대 실천행동 운영	“	·
244		14	고객대상 부서별 반부패지수 측정	“	·
245		15	공사 임직원 출신자와 수의계약시 일상감사 경유	“	·
246		16	기운영중인 예산 인센티브 제도의 기능 보완	“	완료
247		17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관행 및 규정 사전 신고제도 도입	“	·
248		18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작	“	·
249		19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시 사후보고 및 정산시스템 구축	“	·
250		20	공사 해외광고대행사 선정시 심사결과 점수 공개	“	완료
251		21	금품 및 선물증여 거부에 대한 포스터 및 경고판 제작 설치	“	완료
252		22	업무관련 외부업체용 Meal 카드 제작	“	·
253		23	부패취약부서 발령제외자 리스트 관리	“	·
254		24	청렴공직자 포상 실시	“	·
255		25	관광통역안내사 시험후 시험문제 공개	“	·
256		26	용역수행 프로세스 매뉴얼화	“	·
257		27	외부업체 대상 공사임직원 윤리경영 행동강령 안내서 제작	“	·
258		28	협력업체 거래만족도 조사	“	·
259		29	수익사업본부 외부인에게 식사접대 안받기	“	·
260		30	수익사업본부 청렴도 제고 365 무사고 운동	“	·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61		31	경비집행시 현금사용 억제	06	·
262		32	정보시스템 운영장비 도입과정 사전검토 제도화	〃	·
263		33	직원비리 관련 징계사례 사내공개	〃	·
264		34	경쟁입찰 계약내용 경영공시에 포함	〃	·
265		35	모회사 방문 자회사 직원 구내식당 이용하기	〃	·
266		36	승진자 결정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	“	·
267		37	용역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
268		38	부정부패방지 캠페인 전개	“	·
269		39	온오프라인 이벤트 당첨자 선정시 공사직원 및 직원직계가족 제외를 위한 세부실행방안 마련	“	·
270		40	국내출장시 유류대 기준 마련	“	·
271		41	전사회 상담스케줄 및 위치배분의 투명화 추진	“	·
272		42	해외지사 현금보유한도 축소	“	·
273		43	해외지사 현지직원 고용계약체계 개선	“	·
274		44	연간발주 예정현황 공개	“	·
275		45	계약시 하도급업체와의 비리 방지	“	·
276		46	고액구매자 전산프로그램 제도개선	“	완료
277		47	부패방지 제도개선 경진대회(가칭) 실시	“	·
278		48	윤리경영주간 선포	“	완료
279		49	자문위원 선정 투명성 제고	“	·
280		50	행사개최 및 지원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사후원 명칭 방법 개선	“	완료
281		51	민원인 대상 청렴도 모니터링	“	·
282		52	윤리경영 실천서 협약서 징구	“	완료
283		53	홍보물 제작 기획사 선정 프로세스 개선	“	완료
284		54	대외기관 접대에 의한 회의결과 보고자료 제출 의무화	“	·
285		55	업무용 전화의 사적용도 사용금지규정 마련	“	·
286		56	부패방지를 위한 대상고객 pool운영 및 랜덤 모니터링 실시	“	·
287		57	정보공개제도 정착 및 행정정보공표를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	“	·
288		5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활성화	“	완료
289	한국토지공사	1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	04	완료
290		2	자치단체장의 승인권한인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 제도개선	“	추진중
291		3	청렴계약제(부패방지서약서) 확대시행	05	완료
292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	완료

연번	기 관		과 제 명	선정	이행상황
293		5	청렴옴부즈만제도 도입	“	추진중
294		6	건설폐기물 계량 전산화시스템 도입	“	완료
295		7	직무비리에 대한 부서별 평가 및 환류방안 도입	“	완료
296		8	자금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06	완료
297		9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완료
298		10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방법 개선	“	추진중
299		11	GPS 및 PDA를 활용한 현장조사	“	완료
300	한국석유공사	1	석유개발사업 대출심의제도 개선	04	완료
301		2	청렴참관인 제도 시행	05	완료
302		3	업무처리 단계별 회신용 청렴메일 교부제 시행	06	완료
303		4	자회사 회계감사를 통한 재무정보서비스 제고 및 회계투명성 강화	“	완료
304		5	협력업체 부패방지 협조요청	“	추진중
305		6	건설공사 업무추진과정 청렴도 향상	“	추진중
306		7	건설현장 고객만족운동 실시	“	완료
307		8	건설공사 진행현황 대국민 정보공유	“	완료
308		9	비축지사 대규모 보수공사 시행시 발생가능 한 부패방지	“	추진중
309		10	청렴활동 강화를 통한 직원비리 사전 방지	“	완료
310		11	유류절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완료
311	한국철도공사	1	철도청 특별 승진제도 개선	04	완료
312		2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의 정보공개 강화	“	완료
313		3	제도개선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및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신설	04	완료
314		4	소모성 물품의 구매위탁으로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	“	완료
315		5	수계약약을 위한 가격시감시 전자시담 활성화	“	완료
316		6	철도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요령 폐지	“	완료
317		7	사업개발 용역업무 수행시 업체평가의 투명화	“	완료
318		8	청렴옴부즈만 제도 시행	06	완료
319		9	일상감사조치 이행실태 확인 및 사후감사 시행	“	완료
320		10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	.
321		11	06년도 상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감사 실시	“	.
322		12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향상	“	완료
323		13	조직 개편에 따른 규정 제개정 등 시스템 강화	“	완료
324		14	CSA설명회 개최	“	완료
325		15	명절 “선물안주고 안받기” 운동 시행	“	완료

■ 주요 사례

'관세청, 수입농수산물 투명과세시스템 'Camp Plan' 구축·운영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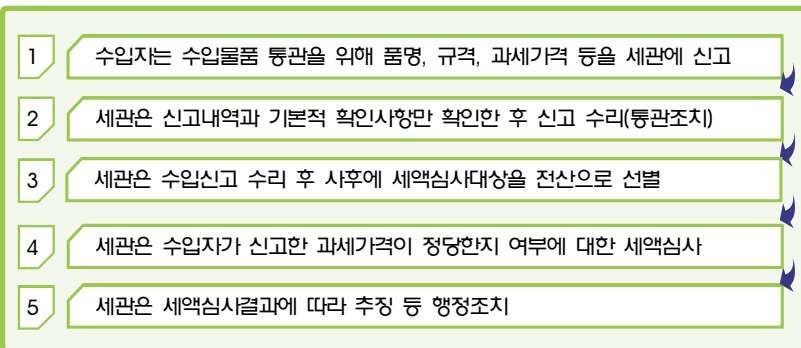
수입자가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동 신고가격이 외국 수출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격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거나 추정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그러나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탈루 혐의가 높은 고위험 수입신고물품 등으로 선별된 수입물품에 한해 과세가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수입 농·수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원산지·품질·계약방법·수확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고, 수입 신고 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최고 455%)된다.

※ 일반 공산품의 경우 8% 이하의 관세율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세액심사 업무 처리 프로세스



문 제 점

일부 수입업자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사 담당 관세공무원의 개입·묵인 또는 방조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 사례 : 중국산 농산물 저가 신고에 따른 관세 13억원 포탈
H무역 대표 이모는 '02. 11월 ~ '05. 5월까지 300~80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마른생강, 울무, 건 마늘 등 농산물 300톤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의 20%정도로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3억원을 포탈

☞ 사례 : 중국산 생강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3억 8천만원 상당 포탈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P씨는 '04. 4월 ~ '05. 1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생강 142톤(시가 5억2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838불인 중국산 생강을 세관에 수입신고 시 톤당 미화 220불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3억8천만원을 포탈, 한편 P씨는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관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정상 송금하고, 나머지 신고누락한 물품대금은 국내 입국한 중국측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이면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음

☞ 사례 : 중국산 건고추 저가 신고에 따른 관세 2억원 포탈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모는 '04. 6월부터 4개월간 총 7차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정상 거래가격의 65%만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고 결제대금 수액원도 휴대반출이나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지급

☞ 사례 : 일본산 수산물 저가 신고에 따른 관세 2억원 포탈
수입업자 이모는 '04년 1월 13톤의 새고막을 153만엔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76만엔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02년 2월 ~ '06년 1월까지 174회에 걸쳐 20억원 상당물품(2,379톤)을 12억원으로 가격 신고하여 2억 5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하면서, 차액은 직접 휴대해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국내 일본 수출입업자들의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해 불법 지급

개 선 내 용

농·수산물 품목별 표준 품명·규격 제정·시행

수입자는 농·수산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표준 품명·규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농·수산물품의 품명·규격을 종전과 같이 임의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표준화 제정(안)에 의거 정확한 품명·규격에 따른 수입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수입자가 표준 품명·규격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리인(관세사)을 처벌토록 하여 표준 품명·규격 신고 규범화를 유도하였다

수입 농·수산물의 투명과세시스템 구축·운용

전국세관에서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농·수산물의 수입가격을 D/B한 인정거래가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가격 심사 프로그램인 심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저가 신고사례 방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부조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투명과세시스템을 구축·운용함으로써 농·수산물품의 수입신고 방법 및 과세절차 등을 공정·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

기 대 효 과

농수산물 품목·규격 표준화에 따른 가격심사 강화 후 품목별 신고 단가 상승하였으며

※ 냉동마늘 등 23개 품목의 수입신고 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평균 45% 상승

농수산물 품목·규격 표준화 시행에 따라 '06년 관세 등 225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수입량 감소에 따른 233억원 수입대체 효과(국내 생산농가 보호)가 발생하였으며

※ 양파, 녹두 등 21개 품목의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최고 98% 감소

저가신고 농·수산물 사후 세액심사를 통한 관세 등 51억원 추가 징수되었다.

이에 따라 품명·규격 표준화를 통해 품질·물품별 적정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농·수산물 세액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마찰 및 음성적 부조리 발생 가능성 대폭 감소하였으며, 수입 농·수산물의 실제거래가격 신고 유도를 통한 성실 납세풍토가 확립되었다

동 제도는 민·관 합동으로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취약업무에 대한 체계적 원인 진단 및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 투명성 강화 모델을 제시한 사례가 될 것이다

현 황

수입식물 현장검사 결과 즉시 합격처리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현장에서 관세청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기가 어려워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검사결과 처리시기를 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외부청탁 등 부조리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리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수출입식물의 검역물량을 한정된 검역인력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 제 점

검사건수가 많고, 검사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최초 검사에서 최종검사 처리까지 3~4시간 소요되고, 검사결과도 귀청해서 결재 후 입력과 동시에 세관에 통보되므로 검역상 문제가 없음에도 검사결과 통보가 늦어져 고객이 통관을 대기하게 되므로

검사결과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대해 외부의 오해소지 및 청탁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제공되어 부패의 발생가능성 내재되어 있다

개선내용

식물검역 민원정보 시스템 도입

민원인이 국립식물검역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신청·접수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관세청 통보까지의 검역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검사현장 실시간 자료처리시스템 도입

검사현장에서 검사결과 입력 및 실시간 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PDA를 보급하여 수입자의 통관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검사 진행상황을 인터넷 공개 및 화주(수입자)에게 직접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하여 통관사(업무대행사)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기대효과

검사신청시 전산등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검사현장에서 전자결재 상신, 출장중 결재처리가 가능하여 대면결재를 위해 사무실로 복귀할 필요 없이 연속적으로 현장 검사 업무가 가능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검사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신청이 가능하여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검사진행 정보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검역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검사 결과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검사결과

관세청 통보가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던 민원인의 오해가 없어짐으로써
비리개입 개연성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다

3

제도개선 통보과제 추진 현황

순번	기관명	과 제 명	이행기한	추진상황
합 계		132 건		
1	교육부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 신규임용 관련 비리	'06. 1	완료(4/4)
2		대학 교수의 연구비 유용, 가짜 용역 계약 비리	'05.12	완료(2/4)
3		교육부 특별교부금 관련 비리	'05.11	완료(4/4)
4		의대 박사학위 돈거래 부조리	'06. 6	완료(2/4)
5		사이버대(원격대학) 운영 부실	'06.12	완료(3/4)
6		사립학교 교장 경력 조작	'06. 3	완료(1/4)
7	농림부	부교재 채택 비리 근절	'07. 3	완료(1/4)
8		마사회 임직원의 시설물 용역관련 뇌물수수	'05. 9	완료(3/4)
9		농협의 농업경영자금 불법대출 관련 부조리	'05.12	완료(4/4)
10		마사회 매장 운영권 특혜 시비	'06. 3	완료(4/4)
11		흙이 혼입된 식물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05.12	완료(4/4)
12		공무원이 정부 포상을 조건으로 뇌물수수	'07. 3	완료(1/4)
13	건교부	상호금융대체자금 불법대출 관련	'07. 3	완료(1/4)
14		공공택지 무더기 불법공급 의혹해소 제도개선	'06. 3	완료(1/4)
15		택시 유류보조금 허위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06. 9	완료(3/4)
16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07. 9	추진중
17		사후관리 소홀한 주택공급 제도	'07. 9	추진중
18	과기부	도로 및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07. 9	추진중
19		원자력안전기술원 허위보고서 작성	'06. 9	완료(3/4)
20		육영재단 천체투영기 과다금액 구입	'06. 3	완료(4/4)
21		출장여비의 부당집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07. 9	추진중
22		원규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등 규정보완	'07. 9	추진중
23		손해배상의무 발생시 징계요구기준 제정	'06. 12	완료(4/4)

순번	기관명	과 제 명	이행기한	추진상황
24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재보험기금 횡령	'05.12	완료(3/4)
25		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상담원 공금 10억 횡령	'07. 9	추진중
26		공장안전보고서 작성을 통한 영리행위 재발방지	'07. 3	완료(1/4)
27		실업급여 부당수령	'07. 12	추진중
28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 지급	'07. 12	추진중
29	문광부	아시아문화사업 교류재단 국고보조금 부적정 사용	'06. 9	완료(3/4)
30		문광부 산하기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07. 3	완료(1/4)
31	법무부	소송비용업무처리에 대한 개선	'06. 12	완료(4/4)
32	국방부	통신망 사업관련 뇌물수수	'07. 9	추진중
33		해군 헌병부대 지휘체계 쇄신	'07. 6	완료(2/4)
34		쇼핑타운 운영체계 쇄신	'07. 6	완료(2/4)
35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보장기구 허위청구	'07. 12	추진중
36	재경부	허위 거래에 기한 신용장 개설	'06. 12	완료(4/4)
37	기예처	예산 및 기금의 투명성 제고	'06. 3	완료(1/4)
38	보훈처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부당 수령	'06. 9	완료(3/4)
39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원 '밀수묵인' 뇌물수수 구속	'05.12	완료(4/4)
40		현장면세 우편물 재반입 신고제도 악용 근절	'06. 3	완료(1/4)
41		세관직원 밀수업자와 연루	'06. 9	완료(3/4)
42		직원 개입 밀수사건(부산 감천항) 재발방지 대책	'07.12	추진중
43	경찰청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관련 비리 실태 개선	'05.12	완료(4/4)
44		고속도로 순찰대 공금횡령 비리 관련 제도개선	'05. 9	완료(3/4)
45		전현직 검경직원 사행성 게임사업 연루	'07. 3	완료(1/4)
46	검찰청	전현직 검경직원 사행성 게임사업 연루	'07. 6	완료(2/4)
47	조달청	중앙보급창 조달업무 국고 손실	'06. 1	완료(4/4)
48		1500억원 대 전자입찰 부정 낙찰	'06. 9	완료(3/4)
49	국세청	민원접촉이 많은 일선 세무분야의 부패현상 재발방지 제도 개선 대책	'06. 3	완료(1/4)
50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개선	'06. 3	완료(1/4)

순번	기관명	과 제 명	이행기한	추진상황
51	중기청	창업투자회사, 조합 등록 업무절차 개선	‘06. 3	완료(4/4)
52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업무 절차 개선	‘06. 6	완료(4/4)
53		중소기업 해외개척요원 혈세 낭비	‘06. 9	완료(3/4)
54	식약청	수익자부담 해외출장 관련 투명성 제고	‘06. 9	완료(3/4)
55	산림청	임업후계자 임야구입자금 불법대출	‘06. 9	완료(3/4)
56		산림조합의 사업비 횡령사고 근절대책	‘06. 9	완료(3/4)
57	청소년위원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제도 개선	‘06. 6	완료(2/4)
58	공정위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06. 9	추진중
59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제도개선	‘06. 1	완료(1/4)
60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개채용 절차개선	‘05. 9	완료(3/4)
61		사학비리 뺏치는 어린이집 비리	‘06. 9	완료(3/4)
62		시간외 수당 부당지급(마포구)	‘06. 9	완료(3/4)
63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 비리(중구청)	‘07. 3	완료(2/4)
64		구청 세무종합프로그램 조작하여 세금 감면	‘07. 6	완료(2/4)
65	경기도	민간위탁시설 제도상 허점이용 맘대로 운영	‘06. 9	완료(3/4)
66		공무원이 공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안산시)	‘07. 12	추진중
67		공무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과천시)	‘07. 9	추진중
68		불법 초과근무수당 편법지급(수원시)	‘06. 6	완료(2/4)
69	인천시	공사감독일지 허위 작성	‘06. 9	완료(3/4)
70		여학연수로 전락한 해외연수	‘06. 6	완료(2/4)
71		가스충전허가 관련 공무원 뇌물수수	‘07. 3	추진중
72	강원도	보건지소 진료비 지연 납입 횡령	‘06. 3	완료(1/4)
73		군의회 직원 군의원 활동비 개인용도로 횡령	‘06. 3	완료(1/4)
74		이동통신요금 횡령	‘06. 9	완료(3/4)
75	대전시	대전시 건설공무원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05.12	완료(4/4)
76	대구시	교통관련 예산 편법으로 편성·집행	‘06. 3	완료(4/4)
77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남발 진상	‘05. 8	완료(3/4)

순번	기관명	과 제 명	이행기한	추진상황
78	울산시	자동차 정비업소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06. 9	완료(3/4)
79	충청 남도	직무관련 금품수수, 근무시간중 음주가무	'05.12	완료(3/4)
80		예산집행시 일반운영비,여비 허위 지출	'05.12	완료(3/4)
81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수수	'05.12	완료(3/4)
82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부풀려 허위 지출	'05.12	완료(3/4)
83		소방시설 허위 준공처리 후 금품 수수	'05.12	완료(3/4)
84		환경업체로부터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	'05.12	완료(3/4)
85	충청 북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혈세만 낭비	'6. 9	완료(3/4)
86		매각 담당 공무원 공유지 불법 매각	'06. 6	완료(2/4)
87	경상 남도	경남 창령군청 청원경찰 채용관련 비리	'05.12	완료(4/4)
88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관련 뇌물수수	'06. 3	완료(1/4)
89		복지관 에너지 요금 횡령	'05.12	완료(4/4)
90	경상 북도	청소업체, 지자체 청소 관련 예산 10억 부당청구	'07. 9	추진중
91		광산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업무 개선	'05.12	완료(4/4)
92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빈번 접촉으로 인한 비리 근절	'05.12	완료(4/4)
93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과정 비리 근절	'05.12	완료(4/4)
94		성주문화원 사무국장 보조금 횡령	'06. 6	완료(2/4)
95		수해 관련 복구비 횡령	'06. 6	완료(2/4)
96		경북단체장, 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사용	'06. 9	완료(3/4)
97	전라남도	상습공금횡령 6급 공무원 구속	'06. 9	완료(3/4)
98		관급 레미콘 대량 유출	'05. 12	완료(4/4)
99		여수시청 공무원 공금횡령	'06. 6	완료(2/4)
100	전라남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횡령(나주시)	'06. 9	완료(3/4)
101		태풍피해 불법보상 어민 10명 적발(여수시)	'06. 9	완료(3/4)
102		친환경농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06. 9	완료(3/4)
103		외유성 지방의원 해외연수	06. 12	완료(1/4)

순번	기관명	과 제 명	이행기한	추진상황
104	전라북도	군산시 동사무소직원 예산횡령 들뜸	‘06. 9	완료(3/4)
105	제주도	축산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 개선	‘06. 3	완료(1/4)
106		전현직 공무원 보조금 횡령	‘06. 9	완료(3/4)
107	서울시 교육청	학교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06. 3	완료(1/4)
108		교육청 산하 도서관, 매점 운영비 유용	‘07. 9	추진중
109		교육청 연구관의 경진대회 대리 출품 의혹	‘07. 9	추진중
110	경기 교육청	부교재 선정 검은 거래	‘06. 3	완료(1/4)
111	인천 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예산 일부 부적정 집행	‘06. 9	완료(3/4)
112	강원 교육청	시설모의고사 시행 리베이트 관행	‘07. 9	추진중
113	경남 교육청	보충수업용 참고서 공급관련 리베이트	‘07. 9	추진중
114	경북 교육청	교육기자재(악기) 납품 비리유착	‘06. 9	완료(3/4)
115	전남 교육청	전남교육청 직원 2명 공금 수천 만원 횡령	‘06. 9	완료(3/4)
116	전남 교육청	학교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7. 9	추진중
117	광주 교육청	중학교 학교 기자재 납품비리	‘07. 9	추진중
118		평생교육시설 이사장 국고보조금 횡령	‘07. 9	추진중
119	관광공사	해외지사 정산시스템 개선 및 사업증빙서류 강화	‘06. 9	완료(3/4)
120	철도공사	퇴직사원 모임인 철우회에 특혜 부여	‘06. 3	완료(1/4)
121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덩어리	‘06. 3	완료(1/4)
122	도로공사	퇴직임원들이 만든 단체에 이권부여	‘07. 6	완료(2/4)
123		부품 납품 대가로 뇌물 수수	‘07. 12	추진중
124	토지공사	토지공사 땅투기 부채질	‘06. 9	완료(3/4)
125		공급원가와 조성원가 변동폭 최소화 방안 마련	‘06. 9	완료(3/4)
126	농수산 유통공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뇌물장터’	‘06. 9	완료(3/4)
127	철도 시설공단	건교부 직원이 국고 29억원 횡령	‘06.12	완료(4/4)
128	석유공사	석유공사 직원이 비축유 절도 혐의	‘07. 6	완료(2/4)
129	수자원 공사	수자원공사 퇴직간부들이 사업 독식	‘07. 9	추진중
130		입찰관련 특혜의혹	‘07. 12	추진중
131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도로교통공단 직원 공금횡령 의혹	‘07. 9	추진중
132	주택공사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금 횡령	‘07. 9	추진중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집

- 발 행 일 : 2007년 10월
- 편집·발행 : 국가청렴위원회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2126-0137(제도개선기획팀)
FAX : (02)2126-0139
- 집 필 자 : 제도개선단장 정기창
제도기획팀장 권근상
제 도 1 팀 장 안준호
제 도 2 팀 장 박세기
제 도 3 팀 장 강희은
행 정 사 무 관 장신기
주 무 관 김필수
- 인 쇄 : 태영특수프린테크 (02)2266-5011

〈비매품〉

